

C2003-09 / 2003.03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

최 세 균 연구위원
어 명 근 연구위원
허 주 녕 연구원
임 정 빈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공업협회

머 리 말

WTO/DDA 농업협상은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더욱 낮아져 수입 식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료 농산물의 관세인하로 생산비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WTO/DDA 농업협상 가운데 시장접근 분야를 분석하고 식품산업의 이행계획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WTO/DDA 농업협상 동향 분석,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국제 비교 및 개선방향, 관세감축 효과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장접근분야 이행계획서(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10개국을 분석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현황을 이해하고 WTO/DDA 농업협상과 식품산업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국별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경쟁국들의 이행계획서 검토 과정에서도 정책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 한국식품공업협회와 조사에 성실히 응해 준 식품업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3.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농업협상 가운데 시장접근 분야를 분석하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경쟁국별 관세구조 비교분석, 관세감축 효과의 국제 비교, 수입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할당 및 관세 분야의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 작성방향 등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국제기구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 등이 이용되었으며, 분석 대상국가는 10개국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관리 제도의 골격은 지난 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지금까지 대체로 해당 품목의 피해 최소화와 수입차액의 환수를 통한 농업재원으로의 활용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몇몇 이해 당사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 수입관리 방식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 효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국내적으로도 일부 품목에 대한 경쟁제한 및 산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수입관리 제도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의 폐지,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으로의 전환, 경쟁제한 관행의 개선 등의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평균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으로 분류한 5개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1.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6.1%로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면 평균 관세 감축률은 55.8%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감축률은 이 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5개국 평균 감축률보다

8% 정도 높은 것이다.

관세율이 낮은 칠레의 관세 감축률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27%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멕시코, 태국 등 기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은 31~32% 수준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다. 의장 2차초안은 1차초안에 비해 개도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초안에 따른 개도국의 관세 감축률은 1차초안에 따른 경우에 비해 평균 2% 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차초안에 따른 관세 감축률이 1차초안보다 0.7% 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51.4%로 분석되었다.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일본과 캐나다의 관세 감축률이 56%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감축률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과 EU의 관세 감축률은 각각 50%, 52%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호주의 관세 감축률은 42.1%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의장의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관세의 누진성은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감축으로 인한 관세의 누진성 완화 효과는 누진성이 큰 품목일수록 크게 나타나며,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의장 2차초안의 내용이 높은 관세는 낮은 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더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한국이 4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본으로 337.8%이다.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가 감축될 경우 개도국은 평균 40%, 선진국은 평균 60%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평균 265.1%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차초안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100% 이내의 평균 관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격차는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별 평균 관세율격차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59.8% 포인트에

서 38.5% 포인트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 관세감축 이전에 31.7% 포인트에서 관세감축 이후에 23.5% 포인트로 축소될 전망이다. 의장 2차초안에 따른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31~34%, 선진국의 경우 40~56%로 농산물 관세 감축률보다 약간 낮았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관세 감축률은 32%로 농산물 평균 감축률에 비해 4% 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53.4%로 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에 비해 감축률이 21.4% 포인트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농산물에 비해 평균 2~4% 포인트 낮아 수입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원료 농산물 조달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공식품 수출시장인 중국, 태국 등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관세 감축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률이 53.4%에 달하여 수입식품에 의해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의장 2차초안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관세율 단계별로 나뉘어진 모듬(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의장 2차초안에 따른 관세율 단계별 품목 분류) 내에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을 선정하는 일이다.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은 관세 감축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 반면 해당 품목의 관세감축 부담을 동일 모듬 내의 다른 품목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의 선정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식품산업 분야의 이행계획서는 ① 의장초안에 따라 90% 이상의 관세는 평균 40%, 최소 30% 감축하는 방식에 따르되 최소감축 대상 품목은 UR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② 관세율 수준에 따라 평균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③ 모든 가공식품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축 방식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할당 증량과 관련된 이행계획서는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식품업체에서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필요에 의해 관세할당량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허용해 왔다. 따라서 관세할당량 양허 수준은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최소 수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차 례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3. 선행연구 검토	4
제 2 장 우리나라 식품산업 현황	6
1. 식품산업 개황	6
1.1. 식품산업의 정의	6
1.2. 식품산업의 경제적 위상	7
1.3. 식품산업의 구조	9
1.4. 식품산업 전망	13
2. 식품산업의 산업연관 효과	14
제 3 장 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18
1. UR 이후 뉴라운드 추진 경과	18
1.1. UR 농업협상	18
1.2. DDA 농업협상	19
제 4 장 TRQ 관리제도의 경제적 의미와 국제비교	28
1. 관세할당(TRQ)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28
2.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국제비교	34
2.1.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	34
2.2. 시장접근물량 수입 이행률 국제비교	39
2.3. 부가조건 요구 현황	43
2.4. 수입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	45

제 5 장 DDA 협상과 농산물 수입관리제도	50
1. UR 이후 우리나라 수입관리제도의 변화	50
2.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현황 및 실적	53
2.1.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체계	53
2.2. 시장접근물량 수입실적	56
2.3 수입차익의 징수와 기금조성 내역	58
3.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60
3.1. 관세할당(TRQ) 관련 협상동향	60
3.2. 현행 수입관리 제도의 문제점	64
4. 수입관리제도의 개선방향	67
4.1 기본 전제	67
4.2 수입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기준	68
4.3 수입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71
 제 6 장 주요국의 식품 관련 관세율 비교	 76
1. 주요국의 관세제도	76
1.1. 한국의 관세제도	77
1.2. 일본	79
1.3. 미국	82
1.4. 유럽연합(EU)	84
1.5. 중국	86
1.6. 멕시코	88
1.7. 호주	89
1.8. 캐나다	91
1.9. 태국	92
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93
2.1. 양허세율 구조	93
2.2.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도 비교	101
3. 관세구조의 특징	106
3.1. 관세격차	107

3.2. 고율관세	113
3.3. 누진관세	114
제 7 장 관세감축 효과 및 이행계획서(안)	118
1. 관세 감축 관련 제안서 및 의장초안	118
2. 관세감축 효과	124
2.1. 자료	124
2.2. 농산물 양허관세 구조	126
2.3. 평균 관세율의 변화	128
2.4. 누진관세의 변화	132
2.5. 고율관세의 변화	137
2.6. 관세격차의 변화	140
2.7. 관세감축과 식품산업	141
3. 이행계획서(안)	145
3.1. 관세양허	145
3.2. 관세할당 증량	146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50
1. 요약	150
1.1. 연구 목적과 범위	150
1.2. 식품산업 현황과 전망	151
1.3. WTO/DDA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152
1.4.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	153
1.5. 관세구조의 특징	154
1.6. 관세감축 효과 및 이행계획서(안)	155
2. 결 론	158
참 고 문 헌	161
부록: WTO 농업협상 관세할당(TRQ)관련 주요국 제안 내용	165
ABSTRACT	209

표 차 례

제 2 장

표 2.1	식품산업의 국민 경제적 위치(부가가치 생산액 기준)	8
표 2.2	식품산업 취업자 변화	9
표 2.3	식품산업의 규모	10
표 2.4	식품업체의 지역별 분포(2000년)	11
표 2.5	식품가공업체수의 변동추이	12
표 2.6	가공식품 생산액의 변동 추이	13
표 2.7	가구당 식품별 지출 비중	14
표 2.8	식품산업의 성장전망	14
표 2.9	농수산물의 가공비율	16

제 4 장

표 4.1	WTO에 통보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식(2000년)	34
표 4.2	주요국의 TRQ 관리방식별 품목수와 비중(2000년)	38
표 4.3	TRQ 관리방식별 시장접근 이행률 비교	40
표 4.4	주요국의 수입관리방식별 단순평균 시장접근 이행률 추이(1998년) ...	41
표 4.5	주요 품목군별 수입관리 운영 현황(2000년)	42
표 4.6	주요 품목군별 시장접근 이행률 비교(2000년)	43
표 4.7	시장접근물량 수입을 위한 부가조건 현황	44
표 4.8	국별 시장접근물량 수입을 위한 부가조건 요구현황(2000년)	45

제 5 장

표 5.1	우리나라의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	52
표 5.2	수입관리방식별 품목분류(2001년)	56

표 5.3	수입관리방식별 시장접근물량 수입 이행률(2000년)	57
표 5.4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수입실적(2000년)	58
표 5.5	수입관리방식별 수입이익금 징수내역(1995~1998년)	59
표 5.6	관세할당제(TRQ) 협상 관련 주요국 입장	62
표 5.7	시장접근물량 관련 의장 2차초안 내용	63
표 5.8	수입관리 방식별 효율성 비교	69
표 5.9	품목별 대체, 유사품목간의 관세(관세상당치) 비교	74

제 6 장

표 6.1	양허관세율 부과 방식별 현황	94
표 6.2	국별 양허관세 비교	96
표 6.3	양허관세율의 분포	97
표 6.4	유별 각 국의 평균 양허관세율	100
표 6.5	품목군별 각 국의 품목분류 현황	103
표 6.6	국별 HS 분류의 세분화 정도	104
표 6.7	국별 양허관세율 격차	108
표 6.8	국가별 · 유별 평균 양허관세율 격차	109
표 6.9	주요 품목별 관세격차 현황	112
표 6.10	국별 고율관세 분포	113
표 6.11	품목류별 누진관세 현황	115
표 6.12	국가별 주요 품목별 누진관세 현황	117

제 7 장

표 7.1	관세 감축 방법과 폭에 대한 제안서	119
표 7.2	누진관세 관련 제안서	121
표 7.3	관세 부과 방법 관련 제안서	122
표 7.4	의장 1차초안의 관세감축 방식	123
표 7.5	의장 2차초안의 관세감축 방식	123
표 7.6	관세율 단계별 품목분포 현황	127
표 7.7	의장 2차초안에 따른 농산물 품목군별 평균 관세율의 변화	130

표 7.8	육류(HS 2류)와 육류조제품(HS 16류)의 누진관세 비교	134
표 7.9	채소류(HS 7류)와 채소조제품(HS 20류)의 누진관세 비교	134
표 7.10	과실류(HS 8류)와 과실조제품(HS 20류)의 누진관세 비교	135
표 7.11	곡물류(10류)와 곡물조제품(19류)의 누진관세 비교	136
표 7.12	고율관세의 관세 감축률	138
표 7.13	관세율 단계별 관세 감축률	139
표 7.14	관세율 격차의 변화	141
표 7.15	식품산업의 평균관세율 국제 비교	142
표 7.16	의장 2차초안에 따른 식품산업 평균 관세율의 변화	144
표 7.17	TRQ 증량 이행계획(안): 현행시장접근 품목	148
표 7.18	TRQ 증량 이행계획(안): 최소시장접근 품목	149

부 표

부표 1	의장 1차초안에 따른 관세율 단계별 품목분포 현황	175
부표 2	의장 1차초안에 따른 농산물 관세 감축률	175
부표 3	의장 2차초안에 따른 한국의 선진국 수준 관세 감축률	176
부표 4	한국의 농산물 관세양허 분야 이행계획서(안)	177

그 립 차 례

제 2 장

그림 2.1 식품산업의 범위 7

그림 2.2 식품산업과 여타부문간의 상호연관 관계 15

제 4 장

그림 4.1 TRQ 제도의 개념 30

그림 4.2 TRQ 제도와 실제 교역상황 32

그림 4.3 TRQ 제도의 후생효과 3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식품산업은 고용 창출과 외화획득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농업의 후방산업으로써 농업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전체 제조업생산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기간에는 식품산업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1998~99년 기간에 식품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산업은 국내 자원 이용도가 높은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외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국민경제의 완충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산업육성 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료농산물 조달 측면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 측면에서는 낮은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더욱 낮아져 수입 식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는 원료 농산물의 관세인하로 생산비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식품산업 측면에서 WTO 농업협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유리한 협상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WTO 농업협상의 3대 지주인 시장접근 분야, 국내보조 분야, 수출보조 분야 가운데 우리나라 식품 산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분야는 시장접근 분야이다. 식품산업과 관련된 감축대상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는 거의 없으므로 수입쿼터 증량 및 관리, 관세감축이 중요한 관심 분야가 될 것이다.

WTO 농업협상은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출범 이후 DDA 농업협상 또는 WTO/DDA 농업협상으로 불린다. DDA 농업협상은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을 결정하고, 2003년 9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5차 각료회의에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시장접근 분야 협상은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증량과 관리방식, 관세감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접근 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WTO 협정내용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기관 배정방식(국영무역 혹은 생산자단체 배분),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추천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DDA 협상이 수입관리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거나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타결될 경우 수입관리 정책의 목적달성, 제도의 효율성, 수입차익의 배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형평성 등에 있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관세감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가운데 어느 분야의 관세 감축률이 더 높을 것인가에 따라 식품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식량안보, 농가소득, 농업의 경제외적 요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농업보호론과 국내 생산이 불리한 산업은 관세 인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제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는 농업개방론이 대립하였지만, 결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최소한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식품산업은 공산품 분야로 취급되어 낮은 관세율(8% 단일 관세율)이 적용된 경우가 많았다. DDA 농업협상의 타결은 이러한 관세율 구조에 변화를 초

래하게 될 것이며, 경쟁 상대국의 관세율에도 변화를 가져와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변화하는 국내 산업환경은 물론 WTO 농업협상 등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WTO 농업협상 동향 파악, 관세감축, 수입관리 제도 등이 먼저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WTO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및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 가운데 시장접근 분야를 분석하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다. 세부적인 연구목적 및 내용은 경쟁국별 관세구조 비교분석, 관세감축 효과의 국제 비교, 수입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할당 및 관세 분야의 이행계획서 (Country Schedule, C/S)를 식품산업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현황, WTO/DDA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관세할당 제도의 경제적 의미, 관세할당 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관세감축 효과,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국제기구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분석 대상국가는 10개국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국가의 선정은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WTO/DDA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한국, 중국, 칠레, 멕시코, 태국 등 5개국이 선정되었으며, 선진국 가운데서는 일본, 미국, 캐나다, EU, 호주가 선정되었다.

식품산업은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수행되지만 농업분야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었다. 분석대상 품목은 WTO/DDA 농업협상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53류 등이다. 비종가세(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최고 또는 최저 관세 등)는 종가세로 전환하여 관세감축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최낙균 외(1993)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122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부문별 누진관세 체계를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는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국한된 분석으로 국제적인 비교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UR 타결을 상정한 분석으로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감축 방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정호 외(1993)는 실효보호율의 측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최낙균(1993)의 연구와 유사하나 보다 다양한 측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세균 외(1998)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 및 관세율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일부 내용에 있어서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제도와 관세율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기본세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WTO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양허관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또한 농산물 관세구조의 누진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품목 중심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최세균 외(2002)는 WTO/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여섯 가지 관세감축 공식을 중심으로 주요 10개국의 관세감축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그 밖에 송유철 외(1999)는 WTO 농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감축방식을 소개하고 이러한 감축 방식이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목별 관세감축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관세협상의 쟁점인 고율관세, 관세격차, 누진관세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임정빈(2000)은 송유철 외(1999)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세감축 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미국 농무부의 ERS(1998/99)는 주요 WTO 회원국의 관세감축 및 시장접근 관리 방식을 검토하였고, 대다수 회원국이 주요 품목에 고율관세 및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호주의 ABARE(1999)는 수출국 입장에서 차기 협상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특히 UR 이후 주요국의 관세쿼터(TRQ)의 이행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제 2 장

우리나라 식품산업 현황

1. 식품산업 개황¹⁾

1.1. 식품산업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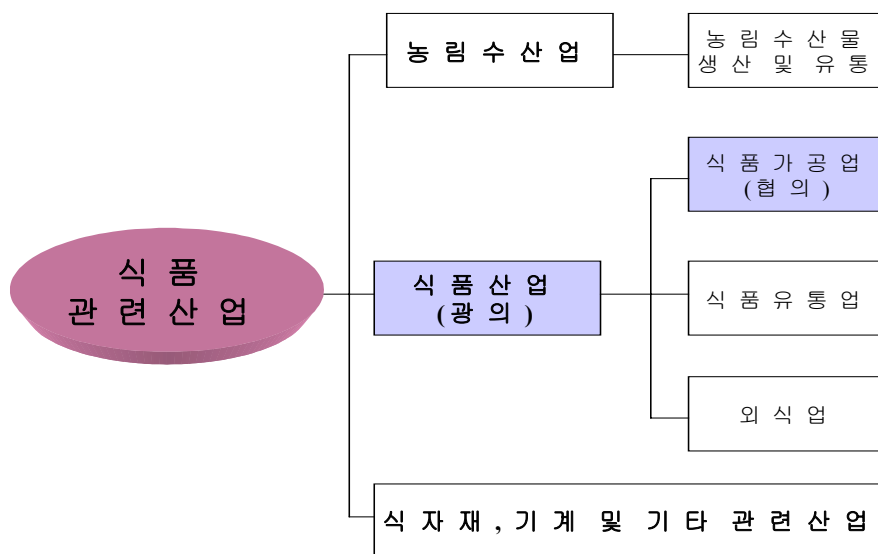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인간이 먹기 위하여 요리하거나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총칭하여 식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식품이나 식품산업에 대한 용어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의약품 제외 모든 음식품’이라고 정의한다.

식품산업의 정의도 식품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의한다면 식품산업은 식품의 생산과 유통, 식품 제조, 식자재 등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식품산업은 식품제조업, 식품제조기계, 용기·포장제조업, 외식산업은 물론 식품의 도·소매업을 포함한다. 그러나 협의의 식품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료품산업에 속하는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가공업과 냉동보관업만을 포함한

1) 이 부문은 농축산신문 『한국식품연감』을 주로 참고하였음.

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산업의 범위를 협의의 식품산업인 음식료품산업(또는 음식료품제조업)으로 제한하였다.

그림 2.1 식품산업의 범위



1.2. 식품산업의 경제적 위상

국민경제에서 식품산업의 비중은 식생활 문화의 변화, 소득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식품산업 부가가치 생산액은 1990~2000년 기간에 2.8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 농림어업 생산액 증가율 1.6배보다 높았다. 식품산업의 성장률은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 성장률은 식품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품산업의 2000년 부가가치 생산액은 15조 7천억 원이며, 식품산업 부가가치 생산액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3.8%에서 2000년 7.2%로 감소하였다. 식품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1980년대 중반에 4.6%까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부문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1990년대 이후에는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2.1 식품산업의 국민 경제적 위치(부가가치 생산액 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국내 총생산(A)	농림어업 (B)	제조업 (C)	음식료품 제조업(D)	D/A	D/B	D/C
1985	813,123	102,333	267,366	37,021	4.6	36.2	13.8
1990	1,787,968	152,122	709,245	55,972	3.1	36.8	7.9
1995	3,773,498	233,535	1,594,483	108,733	2.9	46.6	6.8
1996	4,184,780	244,381	1,742,150	123,822	3.0	50.7	7.1
1997	4,532,764	242,575	1,810,930	125,357	2.8	51.7	6.9
1998	4,443,665	219,778	1,767,305	130,198	2.9	59.2	7.4
1999	4,827,442	244,815	2,009,350	155,591	3.2	63.6	7.7
2000	5,219,592	245,176	2,194,246	157,455	3.0	64.2	7.2

주: 1995년 기준가격.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년도.

통계청, 『광공업통계주요보고서』, 각 년도.

식품산업이 농림어업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농림어업 부가가치 생산액 대비 식품산업 생산액은 1990년 37%에서 2000년 64%로 증가하였다. 농림어업 부가가치 생산액은 1990년 15조 2천억 원에서 2000년 2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식품산업은 1990~2000년 기간에 연평균 18.1%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기준 음식료품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전자, 화학,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제조업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산업 취업자 수는 2000년에 17만 8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3만 명 정도 감소하였다. 이 기간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30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식품산업 종사자의 감소율(1990~2000년 기간)은 14%로 제조업 종사자의 감소율 12%보다 높게 나타나 식품산업 취업자가 제조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6.7%로 낮아졌다. 식품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0.8%로 낮아졌다. 식품산업 취업자의 감소는 식품산업의 기계화로 이어지고 있다.

표 2.2 식품산업 취업자 변화

단위: 천 명, %

구분	총취업자(A)	농림어업	제조업(B)	음식료품 제조업(C)	C/A	C/B
1975	11,692	5,399	1,420	150	1.3	10.6
1980	13,683	4,654	2,014	181	1.3	9.0
1985	14,970	3,733	2,437	197	1.3	8.1
1990	18,085	3,237	3,020	207	1.1	6.9
1995	20,432	2,534	2,952	206	1.0	7.0
1996	20,817	2,429	2,898	197	0.9	6.8
1997	21,106	2,385	2,698	186	0.9	6.9
1998	19,994	2,480	2,324	170	0.9	7.3
1999	20,281	2,349	2,508	174	0.9	6.9
2000	21,016	2,288	2,653	178	0.8	6.7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년도.

통계청, 『광공업통계주요보고서』, 각 년도.

1.3. 식품산업의 구조

2000년 현재 음식료품 제조업체 수는 6,421개로 1990년에 비해 37%가 증가하였다. 전체 제조업체 수는 98만여 개로 식품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이다. 1990~2000년 기간에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2.8배, 고정자산은 2.6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종사자 수는 17만 8천 명으로 같은 기간에 16.8%가 감소하여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종사자 1인당 자본장비율²⁾은 279만원에서 890만원으로 3.2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990년 46명에서 2000년 28명으로 감소하였다. 업체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은 25억 원이다.

2) 자본장비율 = 고정자본액/종사자수

표 2.3 식품산업의 규모

단위: 개소, 천 명, 억 원

구분	업체수 (A)	종사자수 (B)	부가가치 생산액(C)	고정자산 (D)	B/A	C/A	D/A	D/B (만원)
1985	4,659	197	37,021	28,314	42.3	7.9	6.1	144
1990	4,674	214	55,972	59,806	45.8	12.0	12.8	279
1995	6,250	206	108,733	120,084	33.0	17.4	19.2	583
1996	6,238	197	123,822	143,402	31.6	19.8	23.0	728
1997	6,166	186	125,357	148,283	30.2	20.3	24.0	797
1998	5,825	170	130,198	151,914	29.2	22.4	26.1	894
1999	6,364	174	155,590	174,934	27.3	24.4	27.5	1,005
2000	6,421	178	157,455	158,480	27.7	24.5	24.7	890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주요보고서』, 각 년도.

식품업체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소비자가 밀집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식품업체 수는 1,660개로 전체의 1/4에 달한다. 다음으로 식품업체가 많은 지역은 전남과 경남지방이며, 충북, 전북, 경북, 강원 등에 분포된 식품업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업체당 종업원 수는 경기, 인천, 경남 지역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과 제주 지역 업체의 평균 종업원 수는 20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 식품업체의 규모가 업체당 종업원 수와 부가가치 생산액 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57억 원으로 2위인 충북보다 18억 원이나 많았다. 전남의 식품업체는 종업원 수와 부가가치 생산액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1991~2000년) 업체 수가 증가한 업종은 육가공, 수산가공, 과채가공, 빵·과자류 제조업 등이다. 반면 유가공, 설탕류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의 업체 수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와 규모의 경제가 주도하고 있다. 알코올성 음료 제조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477개에서 192개로 60% 감소하였다. 반면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업체 수는 같은 기간에

표 2.4 식품업체의 지역별 분포(2000년)

단위: 개, 천명, 백 만원

구분	업체수(A)	종업원수(B)	부가가치 생산액(C)	B/A	C/A
서울	251	7	799,438	30	3,185.0
부산	454	12	678,702	26	1,494.9
대구	131	4	262,793	30	2,006.1
인천	185(1)	7	1,051,082	35	5,681.5
광주	121(1)	3	311,574	24	2,575.0
대전	103(2)	3	304,871	27	2,959.9
울산	53	1	188,606	22	3,558.6
경기	1224(1)	43	4,530,723	35	3,701.6
강원	500(1)	11	561,490	21	1,123.0
충북	348(3)	12	1,382,748	33	3,973.4
충남	504	16	1,439,053	31	2,855.3
전북	339(2)	10	1,115,093	30	3,289.4
전남	1041	15	543,310	14	521.9
경북	425(2)	10	599,641	24	1,410.9
경남	651	23	1,838,880	35	2,824.7
제주	91	2	137,518	19	1,511.2
계	6421	178	15,745,522	28	2,452.2

*()안은 담배제조업임.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주요보고서』, 각 년도.

175개에서 238개로 증가하였다. 알코올성 음료 제조업의 규모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알코올성 음료 제조업체의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1991~2000 기간에 37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업체의 생산액은 86억 원에서 117억 원으로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식료품 업계에서 생산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곡물가공업과 육가공업으

로 각각 1991년 26.1%, 8.4%에서 2000년 27.2%, 12.5%로 증가하였다. 1991년의 경우 식료품 생산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한 유가공 산업이 2000년 11%로 감소하여 육가공업 비중보다 낮아졌다. 그밖에 식료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식품첨가물, 동·식물성 유지, 곡물가공 등이다. 식료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수산가공, 과채가공, 국수·라면 등이다.

표 2.5 식품가공업체수의 변동추이

단위: 개소, %

부문별	1991		1995		1998		1999		2000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식료품	4,097	100.0	5,735	100.0	5,395	100.0	5,926	100.0	5,991	100.0
육가공	267	6.5	393	6.9	419	7.8	485	8.2	530	8.8
수산가공	1375	33.6	2028	35.4	1763	32.7	1871	31.6	1838	30.7
과채가공	280	6.8	475	8.3	432	8.0	473	8.0	504	8.4
동식물유지	65	1.6	79	1.4	81	1.5	79	1.3	84	1.4
유가공	107	2.6	116	2.0	95	1.8	99	1.7	103	1.7
곡물가공	682	16.6	862	15.0	848	15.7	893	15.1	896	15.0
빵,과자류	255	6.2	437	7.6	417	7.7	493	8.3	489	8.2
설탕류	7	0.2	6	0.1	9	0.2	4	0.1	3	0.1
코코아	76	1.9	85	1.5	96	1.8	104	1.8	111	1.9
국수,라면	189	4.6	177	3.1	158	2.9	157	2.6	180	3.0
식품첨가물	177	4.3	288	5.0	295	5.5	328	5.5	320	5.3
기타식료품	617	15.1	789	13.8	782	14.5	940	15.9	933	15.6
음료	652	100.0	515	100.0	430	100.0	438	100.0	430	100.0
알코올성	477	73.2	271	52.6	203	47.2	202	46.1	192	44.7
비알코올성	175	26.8	244	47.4	227	52.8	236	53.9	238	55.3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주요보고서』, 각 년도.

표 2.6 가공식품 생산액의 변동 추이

단위: 십억 원, %

	1991		1995		1998		1999		2000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식품	13,882	100.0	22,067	100.0	28,778	100.0	29,812	100.0	31,343	100.0
육가공	1,165	8.4	2,244	10.2	3,145	10.9	3,743	12.6	3,909	12.5
수산물가공	1,593	11.5	2,247	10.2	2,352	8.2	2,305	7.7	2,396	7.6
과채가공	581	4.2	782	3.5	727	2.5	791	2.7	919	2.9
동식물유지	413	3.0	865	3.9	1,336	4.6	1,290	4.3	1,301	4.2
유가공	2,225	16.0	3,306	15.0	3,390	11.8	3,467	11.6	3,438	11.0
곡물가공	3,630	26.1	5,847	26.5	8,513	29.6	8,574	28.8	8,523	27.2
빵, 과자류	951	6.9	1,497	6.8	1,832	6.4	1,930	6.5	2,129	6.8
설탕제조업	342	2.5	420	1.9	890	3.1	749	2.5	719	2.3
코코아	527	3.8	723	3.3	1,119	3.9	1,182	4.0	1,191	3.8
국수, 라면	771	5.6	999	4.5	1,454	5.1	1,536	5.2	1,414	4.5
품첨가물	854	6.2	1,471	6.7	2,052	7.1	2,106	7.1	2,272	7.2
기타식료품	824	5.9	1,661	7.5	1,963	6.8	2,133	7.2	3,126	10.0
음료	3,265	100.0	4,348	100.0	5,019	100.0	6,410	100.0	6,090	100.0
알코올	1,758	53.9	2,316	53.3	2,780	55.4	4,114	64.2	3,284	53.9
비알코올	1,506	46.1	2,031	46.7	2,239	44.6	2,295	35.8	2,805	46.1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주요보고서』, 각 년도.

1.4. 식품산업 전망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소비지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1990년 30.1%에서 2000년 35.5%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공 기술의 발달, 소비자 기호의 변화, 외식산업의 발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한 편의 식품 수요 증가 등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식품산업 생산액은 2000~2005년 기간에 30% 정도 성장하여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 생산액은 연평균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21세기 신성장산업³ 13개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3) 농수축산신문, 『한국식품연감』, 2002.

표 2.7 가구당 식품별 지출 비중

단위: 천 원, %

연도	신선식품(A)	가공식품(B)	계(C)	A/C	B/C
1990	167	72	239	69.9	30.1
1995	170	81	251	67.6	32.2
1998	138	68	206	66.8	33.2
1999	142	74	216	65.9	34.1
2000	142	78	220	64.5	35.5

주: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식품류별 월평균 지출액을 소비자 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 연도

표 2.8 식품산업의 성장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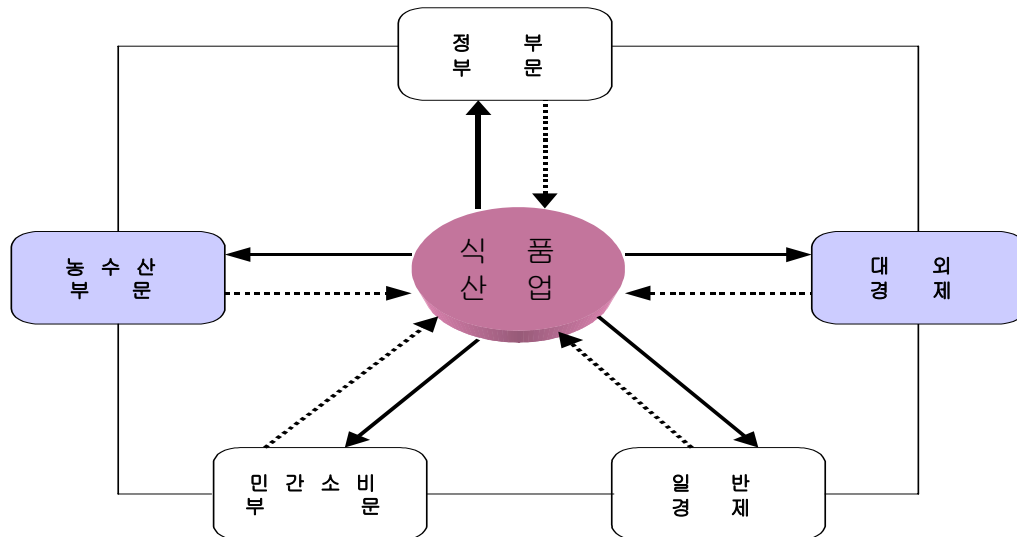
구분	1995	1996	1997	2000	2005
생산액	26.4	29.8	31.4	31.5	40.9
부가가치	10.8	12.4	12.4	12.5	16.3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LG경제연구소. 경제성장률 전망, 1999.

2. 식품산업의 산업연관 효과

식품산업은 농업을 비롯한 타부문과 상호연관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경제부문은 식품산업에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와 중간 투입물을 공급함은 물론 생산요소 가격변동을 통해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품산업은 농업부문을 비롯한 타부문에서 원료를 구입함으로써 유발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산업의 이러한 전후방 연관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식품산업과

그림 2.2 식품산업과 여타부문간의 상호연관 관계



전방으로 연관된 산업이라 함은 식품생산부문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재, 중간재 관련산업을 의미하며 투입재의 생산과 유통, 식품생산과 관련된 서비스분야를 포함한다. 후방으로 연관된 산업이라 함은 식품이 생산된 이후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효용을 창출하는 모든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식품산업의 농수산물부문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은 농수산물 수요 중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요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1995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식용으로 사용된 농수산물의 총공급액 33조 8,260억 원 중에서 최종소비자의 직접 소비를 비롯하여 비식품산업용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3.2%이고 식품산업 투입비율은 46.8%에 이른다. 이중 농산물은 전체 공급액 21조 9,870억 원에서 45.9%인 10조 883억 원이 식품산업에 투입되고, 축산물은 전체 공급액 6조 6,3664억 원에서 65.8%인 4조 3,637억 원이 식품산업 가공에 투입된다. 농수산물부문 중 축산물의 식품산업 투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순이다.

표 2.9 농수산물의 가공비율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 공급	기타		식품산업투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산물	21,987,426	11,899,060	54.1	10,088,366	45.9
축산물	6,636,421	2,272,716	34.2	4,363,705	65.8
임산물	525,141	419,341	79.9	105,800	20.1
수산물	4,676,982	3,398,106	72.7	1,278,876	27.3
계	33,825,970	17,989,223	53.2	15,836,747	46.8

자료: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1998.

농축산신문, 『한국식품연감』, 2002.

1995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담배 배합사료부문을 포함한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동일한 경공업부문에서 가장 높고 전체 제조업⁴에서도 화학제품 및 전기, 전자기기제조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식품산업이 직접적으로 고용확대에 기여한 외에 산업연관관계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를 고려해보면 식품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부문 내에서 섬유 및 가죽제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수송장비제조업에 이어 5번째로 나타났다.

최종수요에 의한 1995년 식품산업의 생산유발액⁵은 35조 5,380억 원이다. 정곡 및 제분 부문은 전체 생산유발액의 21.8%에 해당하는 7조 7,560억 원으로 가장 크며, 음료 부문이 6조 8,570억(19.3%), 육류 및 육가공 부문이 5조 2,840억(14.9%) 원 등의 순이다. 또한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8조 8,050억 원이다. 음료부문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의 39.1%에 해당하는 3조 4,460억 원으로 가장 크다. 과자 및 국수류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 1,860억 원,

4) 산업연관 분석에 이용된 제조업 범주에는 섬유 및 가죽제품, 석유 및 석유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전기, 전자기기, 식료품 등이 포함 되었음.

5) 김철민 외, 『농업관련산업의 유형화와 연관구조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과채가공품 및 기타 식료품이 8,510억 원, 낙농품이 7,650억 원, 육류 및 육가공품이 7,520억 원 등의 순이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재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수입 유발액은 총 4조 9,050억 원이다. 육류 및 육가공품이 전체 수입 유발액의 35.3%인 1조 7,330억 원으로 가장 크고, 조미료 및 유지 부문이 6,650억, 음료 부문이 6,290억 등의 순이다.

제 3 장

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1. UR 이후 뉴라운드 추진 경과

1.1. UR 농업협상

UR 협상의 의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은 이전까지 GATT 체제 밖에 있었던 농업분야를 다른 분야와 같이 WTO 체제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따라서 농업분야는 다른 공산품이나 서비스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UR 협상에서 합의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관세 감축 및 비관세 장벽 감축 또는 철폐를 다룬 시장접근 분야이다. 둘째, 국제시장을 왜곡시키는 회원국의 농업관련 국내보조를 감축시키는 분야이다. 그리고 마지막 분야는 수출보조를 감축하는 것이다.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총 1,312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WTO에 양허하였으며, 쌀과 관련하여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취급조항을 농업협정 부속서(Annex 5)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쌀은 이행계획서(C/S)에 관세율을 양허하지 않았다. 쌀은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10년차에 관세화 유예여부를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다만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국내 소비의 1%에서 시작하여(1995년) 4%로 증량하기로(2004년) 하였다.

보리, 옥수수, 대두, 감자, 고구마 등 개별 법령으로 수입을 제한해 오던 주요 농산물(통합공고상 111개 품목)은 관세상당치(TE)로 전환하여 시장을 개방하였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최소 및 현행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출입공고상 수입을 제한해 오던 품목(BOP 품목) 95개는 관세율 상한을 적용하여 양허하고 품목에 따라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국내보조와 관련해 품목별 AMS가 총생산액의 5%를 초과하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품목의 경우 가격지지를 위한 수매지원 형식의 보조를 감축대상 국내보조로 계산하여 2004년까지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쌀에 대해서는 1993년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협정문상 기준연도는 1986~88년)함으로써 이행 초기에 쌀관련 보조액의 급속한 감축을 방지하였다. 수출보조분야에서는 과거의 지원실적이 없어 양허를 하지 않았으나, 개도국에 허용되는 유통비용과 국내 운송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1.2. DDA 농업협상

1.2.1. 협상 준비 단계: AIE 작업(1997.3~1999.11)

WTO 농업위원회는 1995년 3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모두 21회 개최되었다. 농업위원회는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공식회의에서는 주로 회원국들의 UR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회원국들이 WTO 사무국에 통보한 UR 이행 결과에 대해 토의하는 등 감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비공식회의는 1997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비공식회의는 싱가포르 각료회의(1996년 12월) 결정에 따라 새로운 농업협상을 준비하는 성격의 회의로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 Information Exchange : AIE)’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 회의는 시애틀 WTO 각료회의 직전인 1999년 9월까지 개최되었다. AIE 논의를 위해 우

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회원국들이 74개의 의견서(Paper)를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쟁점이 가시화되고 케언즈(Cairns) 그룹,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그룹, 개도국 그룹 등 이해를 같이 하는 회원국 그룹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UR 협정문에는 추가적인 자유화나 협정문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협상일정이 명문화되어 있다(자동협상 의제 또는 기설정 의제, Built-in Agenda). 농업 관련 자동협상의제 가운데 하나인 농업협상과 관련해 농업협정문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농업협정문 제20조는 “...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을 통한 농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UR 협상 결과의 이행 완료 1년 전에 협상을 재개할 것에 합의한다”로 되어 있다.

자동협상 의제에 관한 논의 시점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2000년초에 시작될 농업분야 협상의 조기 종결을 위해 1997년부터 준비작업(Work Program)을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일본, EU, 스위스 등은 이러한 준비작업이 실질적인 협상개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양측은 타협안으로 협상은 2000년부터 시작하되 1997년부터 농업위원회에서 AIE 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AIE 작업은 1999년 11월까지 11차례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차기협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1.2.2. 1단계 협상: 제안서 제출(2000. 1 ~ 2001. 3)

WTO 농업협상은 농업협정문 제20조에 따라 2000년 3월회의부터 시작되었다. 제1차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불투명한 전체 협상전망을 감안하여 제안서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제1단계 협상계획만 확정하였으며, 제안서 제출 기간은 2000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제로 제안서 제출 기한은 2001년 2월 특별회의를 통해 2001년 3월까지로 연장되었다.

1단계 협상에서 회원국들이 제안한 제안서는 47개로 마감되었으며, 이와 함께 22개의 WTO 사무국 배경문서가 제출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2단계 협상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NTC(Non-Trade Concerns,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그룹의 일원으로 NTC 관련 제안서를 작성하여 27개국 명의의 공동제안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NTC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제1단계 협상과정에서 케언즈 그룹은 출발 초기부터 구체적인 기술적인 개혁안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협상 주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반면, NTC그룹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개념을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 이론적 논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협상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농업협상의 본질논쟁을 반복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결국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에 진전이 없게되자 케언즈 그룹과 NTC 그룹은 각각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1.2.3. 2단계 협상: 의제별 협상(2001. 5 ~ 2002. 3)

2단계 협상은 2001년 5월 농업위원회부터 시작하여 2002년 3월 농업위원회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진행되었다. 2단계 협상은 2001년 5월, 7월, 9월, 12월, 2002년 2월, 3월 등 여섯 차례 열렸으며, 협상의 의제는 초기 협상 의제로 10개 분야가 선정되었다. 10대 의제는 관세할당 물량(Tariff Rate Quota, TRQ) 관리, 관세, 감축대상 국내보조(AMS), 수출보조, 수출신용, 국영무역, 수출제한,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등이다.

2001년 5월 회의에서는 TRQ 관리, 관세, 감축대상 AMS 등 3개분야가 협상 대상이 되었다. 2단계 협상 기간 중에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각국의 고위급 및 실무급 외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회의 개최 빈도는 연간 4회에서 특별회의를 추가하여 6회로 늘어나고, 회의 기간도 2~3일에서 4~5일로 연장되었다. 그만큼 협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 협상에서는 이미 정해진 10대 의제 이외에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추가하여 19개 핵심 쟁점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심층논의가 시도되었다. 전통적인 의제(관세, TRQ,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에 대해서는 각국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NTC 관련 의제(식량안보, 식품안전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양측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1.2.4. 3단계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협상

3단계 협상은 2001년 11월에 개최된 도하 각료회의 이후 새로운 협상 일정에 맞춰 진행중인 2002년 3월 이후의 협상을 말한다. 도하 각료회의에서 WTO 다자간 협상은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명명되었다. 농업협정문 제20조에 의해 진행되어 온 농업협상은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게 된 것이다. 3단계 협상에서는 시장개방의 폭과 기간 등 세부원칙(Modality)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3단계 협상에서는 먼저 수출보조 분야가 논의되었으며(2002년 6월), 다음으로 시장접근 분야(2002년 7월)와 국내보조 분야(2002년 9월)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 시장접근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감축의 방식과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분야별 논의를 기초로 2002년 11월에는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협상이 열렸으며, 이를 기초로 2002년 12월 18일에는 의장의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가 배포된 바 있다.

의장 종합보고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주장을 비교적 균형있게 소개하고,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펴기보다는 상호간에 상대방의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타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관세감축에 있어서는 수출국 주장대로 스위스공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감축할 경우 수입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충이 필요하고, 수입국 주장대로 UR 방식을 중심으로 관세를 감축할 경우 수출국의 관심사항인 관세조화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고율관세, 관세격차, 누진관세 등을 완화할 방안)이 절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종합보고서를 배포한 이후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2월 12일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에 관한 의장 1

차초안을 배포하였다. 1차초안에는 2000년부터 시작된 WTO 농업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쟁점별로 시장개방의 폭과 기간을 명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의장초안에 나타난 시장개방의 폭은 UR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도국의 시장개방 폭은 특별품목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UR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개도국에 대한 우대가 확대되었다. 특히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 등의 차원에서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에 있어서 추가적 신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차초안에 대하여 수출국은 수출국대로 수입국은 수입국대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의장은 1차초안을 수정하여 2차초안을 제시하였으나(2003년 3월 18일) 1차초안의 내용과 유사하다. 2차초안은 개도국의 관세감축 방식을 관세율 단계별로 보다 세분화 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세부원칙이 어느 정도 수정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UR 협상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의장초안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하빈슨 의장 1차초안(2003년 2월 12일 발표)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 위해 2003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농업협상 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기존의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되었다.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의장 1차초안이 향후 협상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보조금과 관세의 감축폭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EU, 일본, 한국 등 수입국들은 일본 동경에게 개최된 WTO 미니 각료회의에 이어 이 회의에서도 의장 1차초안이 협상의 기초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의장 1차초안에 명시된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은 수입국들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따라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2월에 개최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중에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1차초안에 대해 명백한 거부의를사를 표명하거나(불가리아, 일본), 제시된 목표의 비현실성에 대한 우려(EU,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부터 관세, 수출보조, 국내보조의 감축의지 결여에 대한 비판(미국, 케언즈그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하빈슨 의장 1차초안 내용 중에

서 회원국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부분은 시장접근 분야이다. 스위스는 급격한 감축에 가장 크게 반발한 8개국(스위스, 불가리아, 대만, 이스라엘,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노르웨이)을 대표한 연설에서 무역과 비교역적관심 사항(NTC) 간에 공정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현행 다자간 농업협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EU와 일본도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인 모리셔스는 UR에서 적용했던 선형 관세감축 방식(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감축)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UR방식 동조국’ 75개국(EU 및 그 15개 회원국 포함)의 명단을 제출했다. UR 방식을 지지하는 국가는 EU와 EU 신규가입 예정국,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ACP)연안 국가, 일본, 한국, 인도 등이다. 중국, 이집트, 파키스탄 등 여타 주요 개도국들은 자국이 스위스공식의 감축 대상에서 예외로 취급되거나, 선진국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화방식을 적용하기로 할 경우에만 미국과 케언즈가 주장하는 스위스공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WTO 농업위원회 하빈슨 의장은 1차초안을 수정한 2차초안을 배포하였다(2003년 3월 18일). 2차초안은 1차초안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1차초안에 많은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었다. 이러한 의장 2차초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개최된 3월회의(3월 24~28일)에서도 회원국들은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농업협상 세부원칙을 확정하기로 당초 설정한 시한인 2003년 3월 31일을 맞추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WTO 사무국은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때까지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의사를 밝히고 3월 회의를 종료하였다.

1.2.5 협상 전망

현재 진행 중인 WTO 농업협상에서는 개별 회원국이 처한 상이한 농업 여건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제별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거의 모든 WTO 회원국들이 농업이 지니고

있는 정치·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선뜻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농업협정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번 협상의 목적이 보조 및 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 수준은 UR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다.

2003년 3월까지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결정되어야 하고, 2003년 9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WTO 각료회의 이전까지는 합의된 협상 방식에 따른 국별 이행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축폭이나 감축방식에 대해서 의장 종합보고서, 1차초안, 2차초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세부원칙은 합의를 이루어 낼 시한인 2003년 3월 회의에서도 정해지지 못하였다. 농업협상 분야의 협상 지연은 타분야 협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일정,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농업협상 분야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2차 의장초안을 기초로 감축폭과 기간 등을 조정하는 기술적 협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의장은 협상력이 큰 미국, EU, 케언즈 그룹, NTC 그룹 등과의 협의를 증가시켜 기술적 문제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간의 모임을 통해 각국은 전략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간 협상에서 이제 양자간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시장개방 폭 등 핵심적인 사항은 협상력이 큰 국가간의 양자협상 과정을 거쳐 멕시코 각료회의 이전까지 정치적인 타협에 의존하여 해결될 전망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교역장벽이 되는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분야별 구체적 약속수준 도출을 위한 전략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농산물 수입국들은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추진이라는 기본 입장에 자국 농업보호 차원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반영을 위한 공동전략 수립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개도국의 지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도국 우대 조치는 UR 수준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의장은 세부원칙 합의에 실패한 이후 농업협상은 ‘기술적 작업(technical work)’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혀 가장 중요한 분야인 3대지주(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골격에 대한 합의는 뒤로 미룬 채 기술적 작업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의장은 기술적 작업이 필요한 분야로 수출신용, 국영무역기업, 관세할당, 개도국의 특별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규율을 제시했으며, 특별품목(SP)의 수를 개도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EU는 기술적 작업의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기술적 작업에 비교역적 관심사항(NTC)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작업에 회원국들이 참여하게 되면 비록 대폭적인 정치적 양보는 할 수 없을지라도 스스로 농업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인상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에 대한 개도국들의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술적 작업을 계속하자는 합의마저도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농업협상 세부원칙 합의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작업을 계속하자는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들이 동의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향후 WTO 농업협상은 관세나 국내보조 등의 감축방식과 같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까지 연기하고 의장이 제안한 기술적 작업에 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 하빈슨 의장은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 관세감축 공식에 대해 합의를 먼저 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대로 칸쿤 각료회의 전에 감축수치에 대해 합의를 먼저 한 후 칸쿤 각료회의에서 감축 공식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평균 감축률과 최소 감축률만을 설정하는 UR 방식을 선호하는 EU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과 고율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스위스공식을 주장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로 입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관세감축 수치를 결정하지 않은 채 관세감축 공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 세부원칙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농업협상의 진전 속도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EU의 CAP 개혁안이 채택되는 것도 WTO 농업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WTO 칸쿤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가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으며, EU도 칸쿤 각료회의의 성공이 EU의 CAP 개혁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EU는 미국도 WTO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국의 농업법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WTO 사무국은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합의 실패가 DDA 협상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DDA 협상이 예정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산품 관세감축, 무역환경, WTO 협정 개정 등 다른 협상분야에서도 협상의 추진력을 유지하도록 할 전망이다. DDA 협상이 일괄타결방식을 취하고 있어 농업분야 협상의 지연은 협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 4 장

TRQ 관리제도의 경제적 의미와 국제비교

1. 관세할당(TRQ)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비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해 오던 품목은 UR 협상결과에 의해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관세화를 통해 설정된 관세(관세상당치)는 수입을 금지시킬 정도로 높아 시장접근 기회가 오히려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준기간 동안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1986~88년 평균 국내 소비량의 3% 이상을 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Market Access, MMA)으로 보장하여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기간 중에 5%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준기간의 수입량이 3% 이상인 품목은 현행시장접근물량(Current Market Access, CMA)으로 인정하여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정된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에 의해 수입기회가 보장되고 이러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방식에 의해 산출된 고율관세가 부과된다⁶.

6)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행시장접근과 최소시장접근이 수입국에 의해 보장된 의무수입량이 아니라 단지 저세율하에서 수출국에 대한 시장접근기회의 제공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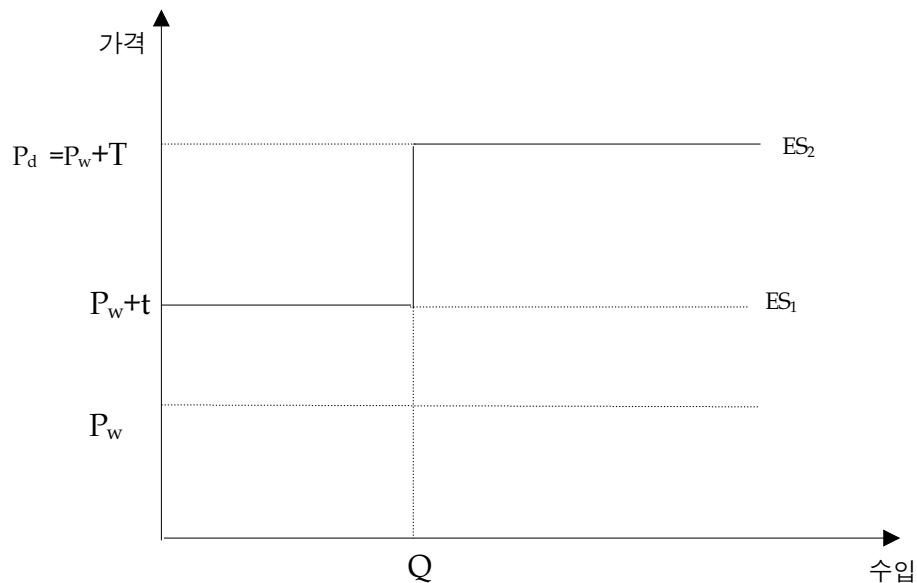
이러한 UR 농산물 협정에 의해 합의된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제도는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고 수출국들에게 최소한의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TRQ 제도는 수입국에 대하여는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관세할당제도는 일반적으로 수입쿼터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의한 무역제한 조치에 비해 교역 왜곡효과가 작기 때문에 기존의 수량제한조치에 비해 보다 시장지향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수입쿼터제는 일정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무역을 크게 왜곡하는데 반해 관세할당제도는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비록 고율관세가 적용되지만 수입을 계속 허용하기 때문에 무역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관세할당제도가 갖는 의미를 <그림 4.1.>을 통해 살펴보자. 관세율 할당제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시장접근물량(Q)까지는 낮은 세율(t)이, 그리고 그 이상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T)이 부과된다. 이러한 이중관세제도와 함께 해당 품목의 국제시장이 경쟁적이고 수입국이 소국이라는 가정은 실효 수출공급 곡선을 두 개의 수평선으로 나타내게 한다. 여기서 ES_1 는 국제가격에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t)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초과공급 곡선이며, ES_2 는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관세(T)가 적용되는 초과공급 곡선이다. 따라서 실제 수입시장에서의 실효 수출공급 곡선은 시장접근물량까지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ES_1 과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의 ES_2 로 나뉘어 진다. 여기서 P_d 와 P_w 는 각각 국내시장 가격과 세계시장 가격을 나타낸다.

엄밀한 의미에서 관세할당제는 수입국으로의 교역량 유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수량제한조치는 아니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되는 고율관세가 수입금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쿼터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가 설정된 고율관세보다 높은

그림 4.1 TRQ 제도의 개념



경우에만 관세할당제도는 수입쿼터제도와 다르다. 그러나 이 조건은 주어진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실제로 관세할당제의 무역에 대한 효과는 수입국의 국내 수입수요 상황을 보여주는 초과수요 곡선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이론적으로 수입수요 곡선이 놓일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시장조건하에서 수입국의 수입수요 곡선이 국제가격에 낮은 세율이 합해진 것으로 표시되는 수출공급 곡선(ES_1)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이다(그림 4.2.a). 예를 들어 국내외 가격차가 미미한 품목이거나 국내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교역량은 0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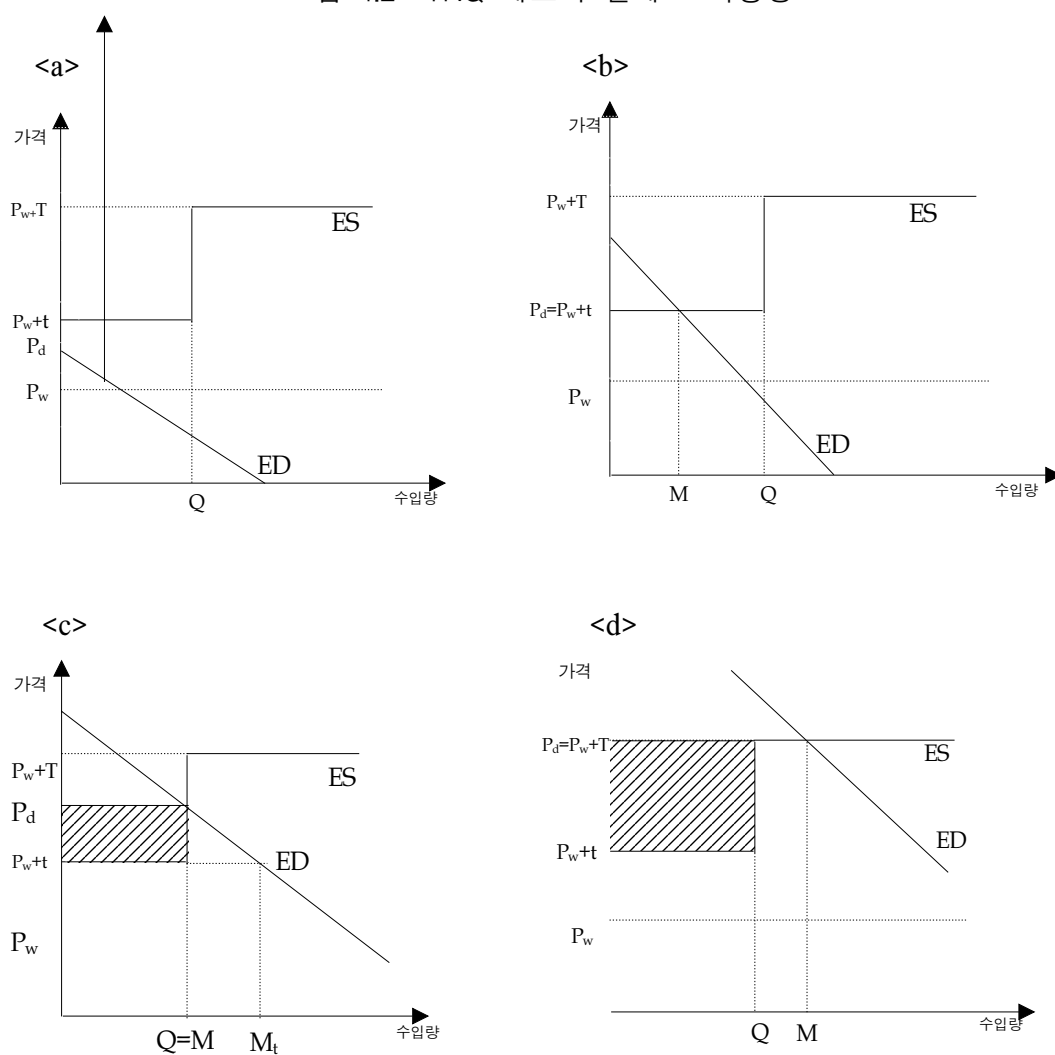
둘째, 수입수요 곡선이 국제가격에 낮은 세율이 합해진 것으로 표시되는 수출공급 곡선(ES_1) 위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 수입(M)은 일정량이 이루어지나 낮은 세율로 수입기회가 보장된 시장접근물량(Q) 보다

는 적은 교역이 이루어진다($0 < M < Q$). 국내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시장접근물량에 부과되는 낮은 관세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의 관세할당제도는 낮은 단일관세로 수입되는 경우와 같다. 국내외 가격차가 없기 때문에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부터 수입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수입국의 수입수요 곡선이 두 개의 수출공급 곡선 ES_1 과 ES_2 사이에 위치하며, 실제 수입이 양허된 시장접근물량만큼($M=Q$) 이루어지는 경우이다(그림 4.2.c).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할당제도는 관세만 부과되는 경우의 수입제도와 구별된다. 수입량은 관세할당제가 시행되지 않고 단지 낮은 관세율이 부과될 때 이루어지는 수입량(M_t)에 비해 적다. 따라서 실제 낮은 관세가 부과될 때 발생하는 수입수요에 비해 적은 수입량만 유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접근물량 수입은 수입차액을 발생시킴으로써 해당품목의 수입 기회와 수입량의 국내판매에 대한 분배 문제를 발생시킨다. 만일 시장접근 물량에 대한 수입권이 조건 없이 배분될 경우 수입권을 보유한 기업은 쿼터렌트(Rent)에 해당하는 독점적 이윤이 보장된다. 이 경우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에 부과되는 낮은 관세를 더한 것보다는 높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관세를 더한 것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부과되는 고율관세는 이 상황에서 수입금지적 관세로 작용한다.

넷째, 수입수요 곡선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하는 고율관세하의 수출공급 곡선(ES_2)상에 위치하는 경우이다(그림 4.2.d).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가 충분하여 실제 수입량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게 된다. 이 때 해당품목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관세를 더한 값, 즉 $P_d = (P_w + T)$ 이고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위당 수입차액(R)은 $T - t$ 이다. 이러한 수입차액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 보유자가 얻을 수 있는 단위당 최대 이윤이 된다.

그림 4.2 TRQ 제도와 실제 교역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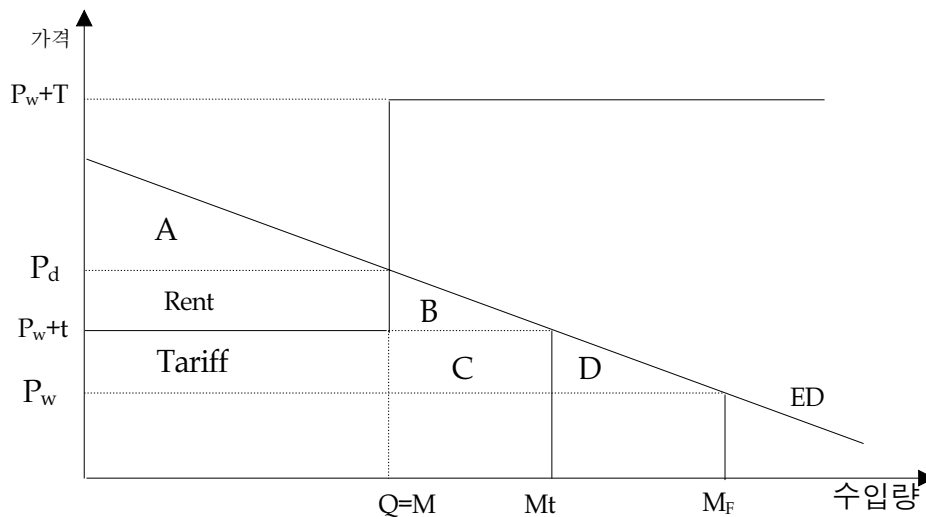


주: 빗금친 부분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야기되는 수입차액을 나타냄.

관세할당제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수입수요 곡선이 두 개의 수출 공급곡선 사이에 위치하여 시장접근물량(Q)만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관세할당제도를 통한 수입관리제도는 자유무역이나 관세만을 통한 수입제도에 비해 수입국의 국내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이나 관세를 통한 수입보다 적은 양의 수입이 이루어지게 한다. 주어진 국제가격(P_w)에서 관세할당제도에 의해 실현된 수입국의 국내가격은 P_d 이며, 수입량(M)은 Q 임에 반해 자유무역시의 수입량은 주어진 국제가격하에서 M_F 이고 낮은 단일관세하의 수입량은 M_t 가 될 것이다(그림 4.3). 이에 따라 자유무역 대신에 관세할당제를 통한 수입관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의 크기는 면적 $B+C+D$ 이며, 낮은 단일관세만을 통한 수입 대신에 관세할당제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후생감소는 면적 $B+C$ 에 해당한다. 관세할당제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차액(그림 4.3에서 $A+Rent+Tariff$)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경제적 요인은 물론 경제외적 요인이 작용하는 분야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그림 4.3 TRQ 제도의 후생효과



2.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국제비교

2.1.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

세계적으로 볼 때, 관세할당제는 2000년 기준으로 38개 국가에서 총 1,365개 품목에 대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639개 품목은 단일 관세의 적용만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관세만으로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대부분은 낮은 시장접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에 의해 실제적 의미에서 관세할당제가 운영되고 있는 품목은 726개 품목이다. 각국이 이행계획서에 관세할당제 사용의 권리를 보유한 품목은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중관세제도인 관세할당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회원국의 관세할당제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시장접근물량의 배분방식은 주로 실행관세적용(Applied tariff), 수입허가제(License on demand),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과거실적배분(Historical importers), 공매(Auction) 등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표 4.1).

지금까지 WTO에 통보된 바에 의하면 대략 7가지 주요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이 있다⁷⁾. 현재 시장접근물량의 배분방식은 실행관세, 수입허가 혹은 승

표 4.1 WTO에 통보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식(2000년)

관 리 방 식	관세	수입 허가	공매	과거 실적	선착 순	국영 무역	생산자 단체	혼합 방식	기타	계
품 목 수	639	297	52	119	153	20	9	60	16	1,365
비중(%)	46.8	21.8	3.8	8.7	11.2	1.5	0.7	4.4	1.2	100

주: 기타는 수입관리방식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WTO(2002), TN/AG/S/6,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 7) 시장접근물량을 유지하는 WTO 회원국은 어떻게 각 국이 관세할당제를 유지하고 운영해 왔는지를 WTO 사무국에 통보해 왔다.

인, 선착순, 과거실적, 공매,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배분 등 회원국과 품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방식별 국제적 운영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관세율만 부과되어 수입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에 통보된 전체 시장접근 관리품목, 즉 원칙적으로 관세할당제 운영이 예정된 품목의 47%가 이러한 단일 관세의 적용만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관세할당제 운영을 통보한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는 세계 전체 시장접근 통보 품목의 17%에 해당하는 232개 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시장접근 관리품목의 92%에 해당하는 213개 품목은 이중 관세제도로서의 관세할당제가 아닌 전형적인 단일 관세에 의한 수입자유화 품목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가 관세할당제 운영을 통보한 품목의 대부분을 이같이 실행관세의 부과만으로 시장접근물량 수입을 보장하는 이유는 우선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⁸. 실행세율과 양허세율 사이에 관세율 격차가 거의 없어 실제 수입차액의 분배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방식 채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르웨이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의 회원국으로서 시장접근물량 관리품목 중 많은 품목에 대한 교역이 지역적 무역협정 회원국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노르웨이 이외에 EEA의 다른 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및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 Common Market)의 회원국들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8) 참고로 UR 합의에 따라 이중관세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화 대상 품목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물량 이내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는 낮은 수준 혹은 최소 수준 일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콜롬비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은 100% 이상의 시장 접근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지난 UR 농업협정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시장접근물량에 부과되는 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인 36%보다 낮은 21% 이다.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관세의 평균수준은 가장 높은 366%로 분석되었다(OECD, 1999).

등과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의 회원국인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도 상당수의 시장접근 관리품목에 대해 단일 관세 적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단일 관세에 의한 수입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입관리방식은 수입허가제도이다. 수입허가제도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에 대해 수입권이 배분되는 제도이다. 만일 수입권에 대한 수요가 설정된 시장접근물량보다 클 경우에는 모든 신청자에게 비례적으로 수입량을 배분하거나 일부 신청자에게만 수입권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권에 대한 수요가 설정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착순제도가 적용된다.

이러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권 허가제는 EU,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추천이 요구되는 21개 품목이 WTO 사무국에 의해 수입권 허가제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유럽자유무역연합(Central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들인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방식으로 수입허가제 혹은 면허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입허가제를 통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은 여타 방식에 비해 체계적으로 수입물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 전체 시장접근기회 보장 품목의 22%에 해당하는 297개 품목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허가 혹은 면허제를 통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 경쟁억제 등을 이유로 수출국들은 시장지향적인 수입제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셋째, 선착순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배분방식은 수입통관시의 순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까지는 낮은 시장접근세율이 부과되고, 그 이후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선착순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배분방식은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체코와 모로코는 모든 시장접근 품목에 대해 이 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선착순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은 여타 방식에 비해 정부개입의 축

소를 통한 투명성 증대 및 행정적 편의성 등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 시장접근 품목의 11%에 해당하는 153개 품목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착순제도는 수입수요가 설정된 시장접근물량보다 큰 경우에 당해연도 시장접근물량을 할당받기 위한 수입업자간의 경쟁 심화로 초기에 수입이 급증하는 등 시장교란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방식은 수입시 낮은 시장접근세율이 적용될지 혹은 고율관세가 적용될지 불분명하여 수입업자의 위험부담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성,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기본적으로 통관 및 관세평가 절차가 잘 정비된 전산화 체제를 갖춘 국가에 있어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넷째,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권을 과거 교역 규모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수입업자 혹은 수출국에 할당하는 과거실적에 따른 배분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적으로 전체 시장접근 품목의 9%에 해당하는 119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공 등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실적에 따른 수입권 배분은 단기적으로 수출입업자간의 안정적이고 일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수입업자의 시장진입 저해 등 왜곡된 시장구조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다섯째,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이 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배분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 전체 시장접근 품목의 4%에 해당하는 5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파나마 등이 이 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공매방식은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액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는 점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기초하여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이 관리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수입물량을 배분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생산적 이윤추구행동에 의해 오히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표 4.2 주요국의 TRQ 관리방식별 품목수와 비중(2000년)

단위: 개, %

국가	관리방식	관 세	수입 허가	과거 실적	공 매	선착순	국영 기업	생산자 단체	기 타	계
미	국	-	-	-	-	32(59)	-	-	22(41)	54
브	라	1(50)	-	-	-	-	-	-	1(50)	2
E	U	1(1)	44(51)	22(25)	-	20(23)	-	-	-	87
일	본	-	13(65)	-	-	-	4(20)	-	3(15)	20
호	주	1(50)	-	1(50)	-	-	-	-	-	2
캐	나	1(5)	6(29)	5(24)	-	4(19)	1(5)	-	4(19)	21
뉴	질	3(100)	-	-	-	-	-	-	-	3
한	국	1(2)	21(33)	16(25)	4(6)	-	10(16)	3(4)	9(14)	64
스	위	7(25)	2(7)	-	4(14)	5(18)	-	-	10(36)	28
노	르	213(92)	1(1)	7(3)	11(5)	-	-	-	-	232
이	스	2(17)	2(17)	1(8)	-	-	-	-	7(58)	12
태	국	-	14(61)	-	-	-	3(13)	6(26)	-	23
인도네시아		1(50)	-	-	-	-	1(50)	-	-	2
필	리	3(21)	-	10(71)	-	-	1(7)	-	-	14

주: ()의 수치는 해당 수입관리방식이 개별 회원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기타는 혼합 방식과 수입관리방식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WTO(2002), TN/AG/S/6,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여섯째,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이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한을 갖는 국영무역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 방식이 원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시장접근물량 통보 품목의 2%에 해당하는 20개 품목에 이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수입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되는 20개 품목의 절반에 해당하는 10개품목이 우리나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국영무역 방식은 수입물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와 수입차액 회수 및 정부재원으로의 활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입관리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수출국으로부터 국영무역 기업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부족, 생산자 보호, 비상업적 수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입선 결정이 정부로부터 수입권을 부여받은 배타적 기관에 의

해 결정됨으로써 다른 상업적 개인기업에 비해 상업적 고려가 무시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난이 있다.

마지막으로, 낮은 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생산자, 가공업자, 혹은 유통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부여된 경우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방식은 전체 관세할당제 운영품목의 1%미만인 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태국의 양파, 대두, 설탕 등 6개 품목과 우리나라의 오렌지, 인삼, 천연꿀 등 3개 품목이 이 방식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 생산자단체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방식은 시장개방으로 부정적 영향을 직접 받는 그룹에 대한 보상이라는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생산자 단체의 특성상 그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량과 수입품종, 수입시기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기회의 보장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관리 방식은 이상의 중요한 7가지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되어 시행되는 혼합방식이 있다. 전체 관세할당제로 예정된 품목의 대략 4%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폴란드, 스위스, 캐나다 등이 혼합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2 시장접근물량 수입 이행률 국제비교

시장접근물량 대비 실제 수입물량으로 나타낸 시장접근물량 이행률을 수입방식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낮은 관세 한 가지에 의해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지향적 수입방식의 이행률이 다른 방식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지향적 방식으로는 실행관세방식, 공매방식, 선착순방식 등이 있다. 관세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수입물량 관리에 개입되는 방식으로 과거실적배당방식, 국영무역방식, 수입허가제 등이 있다.

그러나 WTO 사무국이 배포한 수입관리 방식별 이행률 통계를 살펴보면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인 국영무역, 과거실적배분, 생산자단체 배분 등

의 시장접근 이행률이 시장지향적 수입관리 방식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먼저 시장접근물량의 실제 이행률(Fill-rate)은 수입관리 방식이 갖는 속성과 이행기간 동안의 품목별 시장조건 이외에 각 회원국 정부가 채택하는 수입관리 방식의 정치적 고려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회원국 정부는 품목별 시장접근 관리방식을 독자적 권한으로 결정해 왔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가 커 수입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회원국 정부가 이들 품목의 수입관리 방식 선택에 신중한 접근이 있었다. 그러한 민감품목들은 대부분 국영무역, 과거실적배분 등의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을 통해 관리되어왔다. 이러한 수입관리 방식에 의존하는 품목의 수입은 의무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수입 이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외 가격차가 적어 수입으로부터 국내

표 4.3 TRQ 관리방식별 시장접근 이행률 비교

단위: 개, %

관리방식	총 TRQ 품목 평균 이행률		TRQ증량 불변품목 (CMA)		TRQ증량 품목 (MMA)	
	1995	2000	1995	1999	1995	1999
관 세	71	68	73	69	64	73
선 착 순	56	60	67	69	37	49
수 입 허 가	58	51	69	63	49	42
공 매	26	32	55	0	24	28
과 거 실 적	91	58	94	69	84	51
국 영 무 역	81	72	100	100	76	100
생 산 자 단 체	74	83	-	-	74	N.A
기 타	56	95	100	100	20	32
혼 합 방 식	74	44	76	65	74	79
불 특 정	100	86	100	41	N.A	N.A
평 균	66	60	73(651)	67(557)	54(382)	51(270)

주: CMA/MMA의 수입이행률에서 ()는 고려된 품목수이고 시장접근이행률 수치가 100%를 초과하는 품목은 이행률 상한을 100%로 하여 계산함. WTO사무국의 2000년 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1999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WTO(2002), TN/AG/S/6,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농업에 대한 위협이 적거나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은 시장지향적 수입관리 방식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시장접근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할당제 해당 품목은 시장접근물량을 매년 증가시키지 않아도 되는 현행시장접근(CMA) 품목과 매년 증가시킬 의무가 있는 최소시장접근(MMA) 품목으로 구분된다. 현행시장접근 품목과 최소시장접근 품목의 시장접근 이행률을 비교해보면 현행시장접근 품목의 시장접근 이행률이 높았다. 현행시장접근 품목은 UR 타결 이전인 1986~88년도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3%이상 수입되던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수요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소시장접근 품목은 기존 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물량을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수요가 없거나 적은 경우가 있다.

표 4.4 주요국의 수입관리방식별 단순평균 시장접근 이행률 추이(1998년)

단위: %

국가 \ 방식	실행 관세	선착 순	수입 허가	공 매	과거 실적	국영 기업	생산자 단체	기 타	혼합 방식	미 통보	총 계
호 주	100	-	-	-	81	-	-	-	-	-	91
브 라 질	100	-	-	-	-	-	-	-	-	-	100
캐 나 다	-	53	82	-	100	100	-	100	100	-	85
체 코	-	45	-	-	-	-	-	-	-	-	45
콜롬비아	84	-	73	-	-	-	-	100	-	-	79
E U	-	70	65	-	94	-	-	-	67	-	69
일 본	-	-	56	-	-	100	-	85	100	-	88
한 국	49	-	49	33	83	93	81	-	83	-	70
노르웨이	65	-	98	44	83	-	-	-	-	-	65
필 리 핀	70	-	-	-	39	100	-	-	-	-	50
폴 란 드	-	-	44	-	-	-	-	-	0	-	41
태 국	100	-	28	-	-	50	75	-	100	-	48
미 국	-	62	-	-	-	-	-	-	80	44	66
전체평균	71	51	54	39	71	91	78	45	84	44	63

자료: WTO(2002), TN/AG/S/6,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회원국들이 WTO에 통보한 자료를 지표로 계산한 시장접근 이행률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이상 100%), 호주(91%), 스위스(90%), 이스라엘(88%), 캐나다(85%)의 순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이행률은 70%로 전체 WTO 회원국의 해당연도 단순 평균 이행률 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루마니아(1%), 슬로베니아(38%), 불가리아(40%), 폴란드(41%), 스로바키아(43%), 체코(45%) 등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시장접근 이행률은 낮은 편이다.

관세할당제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품목은 과일 및 채소로 TRQ 품목 중 약 26%에 해당하는 351품목이 해당되며, 그 다음으로 육류, 곡물, 낙농품, 유지류 등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란과 음료를 제외한 여타 품목군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방식은 실행관세에 의한 방식이다. 사실상 이 방식은 관세할당제에 의한 수입관리 방식의 효과를 목적

표 4.5 주요 품목군별 수입관리 운영 현황(2000년)

구 분	곡물류	유지류	설탕 및 그제 품	낙 농 품	육류	계란 및 관련 품	음료	과 채 류	담배	섬 유 류	커피 류	기타	총 계
실행관세	109	63	20	51	93	7	10	214	7	7	20	38	639
선 착 순	20	13	14	16	26	-	11	29	1	7	14	2	153
수입허가	58	27	9	33	68	10	10	56	3	2	13	8	297
공 매	1	-	-	24	17	2	2	6	-	-	-	-	52
과거실적	17	11	7	29	32	-	2	17	1	1	2	-	119
국영무역	7	3	-	2	-	-	-	6	1	-	-	0	20
생산자단체	1	3	-	-	-	-	-	3	-	-	1	1	9
기 타	-	-	-	6	2	-	-	1	-	-	-	-	9
혼합방식	4	3	1	20	8	2	-	14	-	1	3	4	60
미 통 보	1	-	-	1	-	-	-	5	-	-	-	-	7
총 계	218	123	51	182	246	21	35	351	13	18	54	53	1,365
품목별 비중(%)	15.9	9.0	3.7	13.3	18.0	1.5	2.6	25.7	1.0	1.3	3.9	3.9	100

자료: WTO(2002), TN/AG/S/6,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표 4.6 주요 품목군별 시장접근 이행률 비교(2000년)

단위: %

구 분	곡물류	유지류	설탕 및 그제 품	낙 농 품	육류	계란 및 관련 품	음료	과 채 류	담배	섬 유 류	커피 류	가타	단 순 평 균
실행관세	53	79	74	74	66	22	100	73	100	100	85	47	68
선 착 순	59	62	80	53	36	-	40	69	NA	NA	NA	100	60
수입허가	59	50	57	53	50	35	14	53	54	50	47	26	51
공 매	NA	-	-	39	43	8	NA	-	-	-	-	-	32
과거실적	66	50	25	67	49	-	100	60	NA	NA	NA	-	58
국영기업	100	-	-	100	-	-	-	-	78	-	NA	-	72
생산자단체	95	68	-	-	-	-	-	99	-	-	NA	100	83
기 타	-	-	-	93	100	-	-	100	-	-	-	-	95
혼합방식	100	NA	NA	NA	100	2	-	-	-	18	NA	NA	44
미 통 보	NA	-	-	86	-	-	-	NA	-	-	-	-	86
단순평균	59	61	61	65	54	25	38	67	71	55	58	48	60

자료: WTO(2002), TN/AG/S/6,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으로 한 것은 아니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이 방식에 운영되던 품목을 여타 수입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목적으로 시장접근물량 관리 대상 품목으로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방식으로 선착순제도를 가장 선호한 경우는 음료였으며, 계란은 수입허가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행관세, 수입허가, 선착순, 과거실적배분 등의 순서로 수입관리 방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2.3. 부가조건 요구 현황

WTO 회원국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품목을 수입할 때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으로 시장접근물량 관리 품목의 18%에 해당하는 246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 수입에 부가적인 조건이 요구되고 있다. 낮은 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에 요구되는 부가적인 조건으로는 수입할당량 제한, 과거 무역경험,

표 4.7 시장접근물량 수입을 위한 부가조건 현황

부 가 조 건	TRQ 품목		국 가 수		이행률(%)	
	1995	2000	1995	2000	1995	2000
국내산 구매규정	50	48	5	6	87	73
수입할당량 제한	106	106	6	7	50	47
수 출 증 명	26	24	2	2	75	69
과 거 무 역 경 험	60	63	8	9	66	53
과거무역경험+수출증명	3	4	2	2	100	85
국내산구매+수입할당량제한	-	1	-	1	-	N.A
총 계	245	246	23	27	67	62

자료: WTO(2002), TN/AG/S/6,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국내산 구매규정, 수출증명 등이 있으며, 종종 두 가지 이상의 부가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2000년 기준으로 TRQ 제도를 운영하는 38개 국가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27개 국가들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부가조건을 시장접근물량 수입의 부가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조건별 시장접근물량 수입 이행률을 비교해 보면, 과거 무역경험과 수출증명 동시 충족, 국내산 구매규정, 수출증명의 순으로 시장접근 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과거 무역경험이나 수입할당량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낮은 수입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 WTO 회원국이 시장접근물량 수입시 부가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기준으로 TRQ를 운영하는 38개 국가 가운데 호주, 필리핀, 코스타리카 등 11국은 시장접근물량 수입에 부가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27개국은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부가조건을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에 요구하고 있다. 시장접근물량 수입시 국산 구매규정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는 콜롬비아(33개 품목)와 스위스(11개 품목)였다. 수입할당량에 제한을 많이 요구하는 국가는 헝가리(54개 품목), 폴란드(31개 품목), 노르웨이(10개 품목) 등이다. 시장접근물량 수입시 수출국의 수출증명을 부가조건으로 요구하는 국가는 EU(22개 품목)와 미국(2개 품목)이었으며,

표 4.8 국별 시장접근물량 수입을 위한 부가조건 요구현황(2000년)

국 가	국산 구매 규정	수입 할당량 제한	수출 증명	과거 무역경험	국산구매 + 수입할당량 제한	수출증명 + 과거무역 경험	무조건	계
호 주	0	0	0	0	0	0	2	2
캐 나 다	0	1	0	2	0	1	17	21
도 미 니 카	0	0	0	7	0	0	1	8
콜 롬 비 아	33	0	0	0	0	0	34	67
E U	0	0	22	15	0	3	47	87
형 가 리	0	54	0	0	0	0	5	59
일 본	0	0	0	18	0	0	2	20
한 국	0	0	0	1	0	0	63	64
노 르 웨 이	0	10	0	0	0	0	222	232
스 위 스	11	3	0	0	1	0	13	28
폴 란 드	0	31	0	0	0	0	78	109
태 국	0	0	0	4	0	0	19	23
미 국	0	0	2	1	0	0	51	54
계	48	106	24	63	1	4	1119	1365

자료: WTO(2002), TN/AG/S/6,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과거 무역경험이 요구된 국가는 우리나라(1개 품목)를 비롯하여 일본(18개 품목), EU(15개 품목) 등이다. 국내산 구매규정과 수입할당량제한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1개 품목)이다. 수출증명과 과거무역경험이 동시에 요구되는 국가는 EU(3개 품목)와 캐나다(1개 품목)로 나타났다.

2.4. 수입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

2.4.1. 실행세율 적용(Applied Tariffs)

실행세율 적용방식은 이중관세제도인 관세할당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별도의 수입권 배분 없이 모든 수입물량에 단일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같이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시장접근물량

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쿼터에 적용되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별도의 수입관리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방식이다.

실행세율 적용방식은 제도의 적용이 단순하고 수입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입차익에 대한 귀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의 후생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도 이 제도의 장점이다. 시장접근물량의 낮은 수입 이행률이나 다른 수입관리 방식의 잠재적 무역왜곡과 관련된 농산물 수출국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경우 국내 해당 품목의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국제가격의 변동이 그대로 국내시장에 반영되어 국내시장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세할당제 운영 품목 가운데 이 방식을 적용하는 품목은 향후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관세할당제를 포기하고 단일관세로 양허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2.4.2. 선착순 배정(FCFS: First Come First Served)

선착순 배정 방식은 수입통관의 순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이 적고 덜 관료적인 수입관리 방식이며, 행정적으로 단순하고 다른 수입관리 방식보다 투명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관세할당제 운영과 관련된 비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방식에 의한 수입권 배분은 시장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국가별 수입에 차별이 없는 제도로서, 같은 조건이라면 TRQ 물량 소진이 가장 잘 되며 과거 수입실적이 없을 경우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선착순 배정은 쿼터량에 비해 수입수요가 적을 경우 적합한 제도이다. 이론적으로 관세할당제의 수입권 배분 방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이 방식에 의한 수입권 배분은 해당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가 큰 경우 초기에 수입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아 재고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음에도 수입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물품은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

점이 있다. 해당 수입품이 통관 시점에서 할당내(in-quota) 관세가 부과될지 할당외(over-quota) 관세가 부과될지 불명확하여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기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입 이행률이 낮을 수 있다. 이 방식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입통관정보가 체계적으로 전산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2.4.3. 수입허가제(Licence on Demand)

수입허가제도는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일정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만일 수입권에 대한 수요가 설정된 시장접근물량보다 클 경우에는 수입물량을 비례적으로 감소시켜 배분하며, 수입권에 대한 수입수요가 설정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착순으로 배분한다. 이러한 수입관리 방식은 체계적으로 수입을 관리하고 연중 수입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될 세율을 미리 알 수 있어 선착순 배정에서와 같은 불투명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수입권이 특정 수입업자 혹은 수출국가에 배정되어 수입차익이 일부 수입권 획득자에 귀속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수입 이행률이 저조할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정부의 자의적인 수입권 배분으로 야기된 결과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2.4.4.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배분(Historical Allocation)

과거 실적에 따른 수입권 배분 방식은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권을 과거 수입실적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수입업자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이미 수입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고, 다수의 활동적인 수입업자가 있는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간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수입업자나 수출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아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과거 수입실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입권을 배정 받은 수입업자

는 별 다른 노력 없이 수입차액을 차지하게 된다는 형평성 문제와 수입권 배분 제도의 개편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 효율적인 새로운 수입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2.4.5. 수입권 공매(Quota auction)

수입권 공매제도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권을 정부기관이 공매에 의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입차액을 정부재원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수입권 공매는 수입차액이 정부에 귀속되어 수입차액의 배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입허가, 과거실적 배분,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할당 등의 수입관리 방식보다 시장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수입을 촉진하고 무역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수입관리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 과거실적 배분,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할당 등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 방식과 달리 기득권 형성을 저지하고 새로운 수입업자 혹은 수출업자가 자유로이 시장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입권 공매제도의 효율성은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와 최대 지불의사가 있는 수요자를 연결시킬 수 있고 거래비용이 적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업자간 담합이 없어야 달성될 수 있다. 또한 공매제도는 추가적인 수입부과금으로 수입국의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생산자단체가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공매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고 높은 경매가격에 수입권을 신청하는 대기업에 의해 수입이 독점될 우려도 있다. 공매제도를 신규로 도입할 경우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는 수출업자간의 거래관계를 저해하여 오히려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비율을 하락시킬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수입권 공매제도는 추가적인 수입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만일 수입 이행률이 낮을 경우 수출국들로부터 양허된 관세수준 이상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한 무역왜곡적 수입관리 방식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2.4.6.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State Trading)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방식이란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수입권한을 갖는 국영무역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방식은 국내 시장상황에 따라 수입시기를 조절하여 민감품목의 국내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수입차익을 직접 정부재원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재정 활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영무역은 수입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부족,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발생 등 시장 조건을 고려하기보다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수입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 수출국들의 반발이 크며, 국내적으로도 경쟁 제한적 성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2.4.7 생산자단체 배분

생산자단체에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해당 품목과 관련된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을 대표하는 단체에 할당하는 제도이다. 이 방식에 의한 수입관리는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룹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특성상 수입개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량, 수입시기, 수입품종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출국의 실질적인 시장접근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생산자단체는 대개의 경우 수출입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입관리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 5 장

DDA 협상과 농산물 수입관리제도

1. UR 이후 우리나라 수입관리제도의 변화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골격은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새롭게 확정되었다. 관세제도와 더불어 WTO 출범 이후 중요한 요소로 출현한 것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이다. UR 협상타결에 따라 각국이 수입을 제한해 오던 품목은 관세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기준연도의 현행 수입량 혹은 국내소비의 최소 3%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기회를 보장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별 농산물 이행계획서를 통해 쌀, 보리, 고추, 마늘, 쇠고기 등 67개 품목군의 시장접근물량을 제시한 바 있다(2003년 현재 63개 품목: 오렌지 주스,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는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개방). 관세화 대상 품목은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기준연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연도의 시장접근기회를 계속 보장하는 방식인 현행시장접근(CMA) 품목과 기준연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미만인 경우 이행기간동안 3%에서 시작하여 5%까지 시장접근기회를 증가시켜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품목이 있다. 현재 시

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39개 품목은 최소 시장접근 품목이며, 나머지 24개 품목은 현행시장접근 품목이다.

관세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한 수준에서 양허한 고율관세(관세상당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율(실행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가격의 형성과 수입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들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국내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UR 협정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WTO 협정내용과 품목별 특성, 국내외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접근 물량이 설정된 품목을 지정기관 배정 방식(국영무역 혹은 생산자단체 배분: 17개 품목), 수입권 공매(6개 품목), 실수요자 배정 방식(자격제한 혹은 선착순: 40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각각의 수입관리 방식을 품목수에 따라 구분해 보면 실수요자 추천,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의 순으로 품목수가 많고, 현행시장접근보다는 최소시장접근 품목이 많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시장접근물량은 대부분 용도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세번별, 용도별 혹은 국가별 할당에 있어 경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번별 혹은 용도별 배정은 주로 과거 수입실적 및 생산실적 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 쿼터는 인정하지 않고 총량쿼터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은 기준연도의 국별 공급 비율을 고려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국별 수입쿼터를 인정하는 경우(미국, EU 등의 예)와는 달리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지정기관 배정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18개 품목(쇠고기 포함)이지만 WTO에서는 이들 품목을 국영무역(10개 품목), 생산자단체 배분(3개 품목), 혼합방식(5개 품목) 등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수입관리 방식을 관리기관의 법적인 성격에 따라 구분한데 반해, WTO는 수입관리의 실제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예 : 대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관리하나 일부 실수요자에게 배정을 한다하여 혼합으로 분류함). 또한 우리나라가 수입

표 5.1 우리나라의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

		품 목	추천대행기관	비 고
총 계		188품목(HS기준)	21개 기관	
지정기관 배정 (국영무역+생산자단체)		쌀, 보리 등 74(17)개 품목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제주감협, 산림조합 등 5개 기관	지정된 기관만이 수입판매 및 수입이익금 징수
수입권공매		분유, 참기름 등 16(6)개 품목 *대추, 밤 포함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 등 3개 공매주관 기관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주최하는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함
실수요자 배정	소 계	98(40)개 품목	18기관	
	자 격 제 한	옥수수, 종우, 종돈, 전분류 등 70(22)개 품목	유가공협회,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종축개량협회 등 15개 기관	국내산 구매, 가공시설 확보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자에게 배정
	신청순	종자용호밀, 묘목류 등 28(18)개 품목	종자관리소, 대한잠사회 등 9기관	신청순으로 물량배정

주: 수치는 HS 10단위 기준이며, ()속의 수치는 품목 수입.
 자료: 농림부 국제농업국, 2001.

권 공매 방식을 취하고 있는 품목은 6개이나 WTO에서는 이들 품목을 다시 수입권 공매(4개 품목), 혼합방식(2개 품목)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우리나라가 참기름 수입권을 대부분 공매하고 있으나, 일부 물량은 의약품용과 외화획득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탈지분유는 공업용으로 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실수요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면서 자격을 제한하는 품목은 22개 품목이나, WTO에서는 이들 품목을 수입허가(6개 품목), 과거실적 배정(14개 품목), 혼합방식(1개 품목), 실행관세(1개 품목)으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우리나라는 실수요자 배정 품목 중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모두 자격제한으로 구분하는 데 반해, WTO는 수입관리의 실

제내용에 따라 구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생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실수요자 자격제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WTO는 1995년 개방당시 지정기관에서 관리해오던 것을 1997년부터 실수요자 자격제한으로 관리방식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실행관세 관리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착순 배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18개 품목이나 WTO는 이들 품목을 수입허가 15개 품목, 과거실적 배정(2개 품목), 혼합방식(1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경우도 우리나라는 실제 실수요자에게 제한 없이 신청순으로 수입권을 주는 것을 실수요자 신청순으로 관리방식을 분류한 데 반해, WTO는 우리나라가 용도를 지정하는 등 실제 운영방식이 선착순과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신청순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현황 및 실적

2.1.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체계

우리나라는 현재 UR 협정 이후 출현한 관세할당제로 63개 품목(HS 10단위로 188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를 위해 지정기관 배정,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추천 등의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추천, 수입 이익금 징수는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안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장접근물량의 구체적인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관리는 농림부장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부고시』에 따라 시행된다. 수입관리 방식별 주요 내용과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2.1.1. 지정기관 배정

지정기관 배정 방식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은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감자(종자용 이외), 오렌지, 감귤류, 천연꿀, 인삼, 잣 등 MMA 관련 품목과 대두, 낙화생, 녹두, 팥, 메밀, 참깨 등 CMA 관련 품목 등 모두 17개 품목(HS 10단위로 74개 품목)이다. UR 타결 당시에는 18개 품목이었으나 2001년부터 쇠고기가 개방됨으로써 이 방식에서 제외되었다. 지정기관 배정방식의 대상 품목은 주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이다.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하던 기관 또는 관련단체를 국영무역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감자, 양파, 마늘, 고추, 팥, 생강, 쌀, 메밀, 땅콩, 참깨 등이며 대부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고 있다. 쌀은 조달청에서 수입물량을 관리하다 농림부로 수입관리 주체가 이전되었다. 오렌지, 감귤류, 잣, 인삼 등은 수입개방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생산자단체가 수입하고 있다. 해당품목들은 국영무역이나 생산자단체가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익금을 농안기금 등에 적립하여 농업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생산농가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정기관 배정 방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이행률이 낮아 수출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일부 수입권 공매제도의 도입이나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예: 오렌지, 천연꿀 등).

2.1.2. 수입권 공매

수입권 공매 품목은 UR 타결 당시 돼지고기, 닭고기, 참기름, 대추, 전지분유, 연유, 밤(이상 MMA 품목), 탈지분유(CMA품목) 등 8개 품목이었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1997년 7월부터 완전히 개방되어 6개 품목으로 축소되었다. 수입권 공매 대상 품목은 국영무역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은 품목 중에서 국내외 가격차가 커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수입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품목

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외적 통상압력과 수입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존 지정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던 품목 중 일부를 공매로 전환하고 있다. 참깨, 생강은 1999년, 메밀, 땅콩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시장접근물량의 50%를 공매를 통해 수입하고 이를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1.3. 실수요자 배정

실수요자 배정 방식이 적용되는 품목은 종자류, 묘목류, 사료류, 전분류 등으로 해당품목의 수입권을 수입물량 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순서별로 배정하거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는 품목은 주로 최소 비용으로 수입함으로써 국내 농업의 생산비 인하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실수요자 배정 방식은 크게 자격제한 방식과 신청순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자격제한 방식은 국내산을 구매한 실적, 가공시설 확보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며, 신청순 방식은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신청순서에 따라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물론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거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배정하기도 한다.

실수요자 배정 방식 중 수입자격 제한 품목으로는 골분, 종우, 종돈, 녹차, 사료용 근채류, 맥아, 변성전분, 고구마전분, 유당, 에틸알콜, 기타배합사료, 보조사료 등 최소시장접근물량(MMA) 품목과 종계, 유장, 버터, 매니옥, 맥주맥, 옥수수, 기타가공곡물, 육(골)분 등 현행시장접근물량(CMA) 품목을 포함하여 22개이다. 신청순에 의해 배정하는 품목은 조란, 잠종, 묘목, 뽕나무, 감자(종자용), 고구마, 종자용 조, 밀전분, 참깨유박 등 최소시장접근물량(MMA) 품목과 기타서류, 매니옥펠리트, 종자용 호밀, 종자용 귀리, 종자용 옥수수, 종자용 수수, 감자분, 인조꿀, 누에고치 등 현행시장접근물량(CMA) 적용 품목 등 18개이다.

표 5.2 수입관리방식별 품목분류(2001년)

수입관리방식		MMA	CMA	비 고
국영무역(17)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감자(종자용 제외), 오렌지, 천연꿀, 인삼, 잣(12)	대두, 땅콩, 팥, 메밀, 참깨(5)	○ 감자는 자격제한 없이 실수요자 추천 ○ 보리는 사료용으로 추천
수입권 공매(6)		연유, 전지분유, 참기름, 쌀, 대추(5)	탈지분유(1)	
실수요자추천(40)	자격제한(22)	종우, 종돈, 녹차, 고구마전분, 유당, 기타 배합사료, 보조사료 등(13)	종계, 유장, 버터, 맥주맥, 옥수수, 생사 등(9)	○ 국내유통질서 유지가 필요한 품목
	신청순(18)	조란, 잠종, 종자용 감자, 고구마, 조 등(9)	매니옥펠리트, 종자용 옥수수, 감자분, 인조꿀(9)	○ 국내외 가격차가 미미하거나 국내수요가 적은 품목
63		39	24	

주: ()내는 품목수.

자료: 농림부 국제농업국, 2001.

2.2. 시장접근물량 수입실적

2000년 기준으로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4개 품목(쇠고기 포함)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 이행률은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입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들 품목은 쌀, 쇠고기, 마늘, 참깨 등 국영무역 관련 10개, 탈지분유, 대추, 참기름 등 수입권 공매 품목 3개, 종돈, 종계, 버터, 옥수수, 보조사료 등 실수요자 배정 18개 등이다. 국내 수입수요가 저조한 선착순 배정 방식 적용 품목 18개를 제외하면 46개 품목 중 31개 품목이 95% 이상의 수입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물량기준으로는 총 시장접근물량 888만톤 가운데 1,061만톤이 수입되어 119.5%의 수입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필요에 의해 시장접근물량이 증량된 품목의 수입물량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접근물량 설정 기준연도(1988~90)와 이행연도 사이의 차와 그 동안의 국내수급 변화로 이행계획서상의 시장접근물량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증량시켜 운영해 왔다. 시장접근물량이 증량되어 운영되는 품목은 대부분 국내 물가안정에 필수적이거나 외화획득용 원자재들이다.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접근물량 적용 품목 64개 중 22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했는데 아래의 <표 5.4.>에서와 같이 증량에도 불구하고 수입 이행실적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5.3 수입관리방식별 시장접근물량 수입 이행률(2000년)

		이행완료(95%이상)	70%이상	30%이상	30%이하
계		37	6	5	16
국영 무역 (18)		쇠고기(100), 마늘(100), 녹두·팥(150.8), 잣(100), 겉보리(108.9), 쌀(100), 메밀(99.7), 대두(136.0), 낙화생(95.8), 참깨(1,037.6)	천연꿀(77.2), 생강(71.8), 오렌지(81.4)	감자(60.5), 양파(57.2), 고추(51.0), 인삼(47.0)	감귤(27.1)
수입권 공매(6)		탈지분유(92.3), 참기름(99.3), 대추(99.9),			전지분유(12.7), 연유(18.0), 밤(5.3),
실 수 요 배 정	자 격 제 한 (22)	종돈(105.0), 종계(125.2), 유장(96.0), 버터(100), 골분(96.0), 메니옥(554.9), 녹차(100), 맥주맥(186.7), 옥수수(126.6), 맥아(169.5), 감자전분(172.8), 메니옥전분(129.2), 고구마전분(365.5), 사료용근채류(1,457.7), 유당(196.6), 에틸알콜(98.9), 육·설육(50.0), 보조사료(519.1)	기타가공곡물(83.7), 기타배합사료(82.3)	생사(63.3)	종우(2.1),
	선 착 순 (18)	기타서류(100), 호밀(211.8), 귀리종자(93.3), 옥수수종자(120.2), 수수종자(113.9), 감자분(60),	밀전분(70.8)		조란·잠종·과수 묘목·뽕나무· 고구마·조종자· 인조꿀·참깨유박 (0), 감자종자(8.1), 메니옥펠리트(1.6), 누에고치(3.2)

주: 수입관리방식별 ()내 수치는 품목수이며, 해당 품목별 ()내 수치는 수입이행률임.

자료: 농림부 국제농업국, 『주요업무자료』, 2001.

표 5.4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수입실적(2000년)

단위: 톤

구분	품 명	2000년				2001년		
		C/S	증량	계(A)	이행실적	C/S	증량	계(B)
농 업 용 자 재	옥수수 (사료용)	4,721,100	3,378,900	8,100,000	6,463,445	4,721,100	3,048,900	7,770,000
	대두 (사료용)	846,365	593,635	1,440,000	1,148,268	846,365	603,635	1,450,000
	겉보리	19,390	30,610	50,000	21,000	20,438	29,562	50,000
	보조사료	3,429.8	19,570.2	23,000	23,000	3,615.2	26,384.8	30,000
	근채류 (사료용)	26,420.7	397,279.3	423,700	317,871	27,848.8	399,951.2	427,800
가 공 원 료	옥수수	1,381,000	677,613	2,058,613	2,058,613	1,381,000	757,028	2,138,028
	대 두	185,787	128,713	314,500	294,553	185,787	128,713	314,500
	팔	12,508.4	6,491.6	19,000	18,868	13,054.8	5,945.2	19,000
	맥주맥	30,000	26,000	56,000	56,000	30,000	62,000	92,000
	맥 아	40,000	28,000	68,000	68,000	40,000	50,580	90,580
	참 깨	6,731	63,269	70,000	70,000	6,731	72,869	79,600
	유 당	7,728.9	8,471.1	16,200	16,000	8,146.7	9,453.3	17,600

자료: 농림부 국제농업국, 『주요업무자료』, 2001년

2.3 수입차익의 징수와 기금조성 내역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 발생하는 수입차익의 대부분은 지정기관의 독점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이나 수입권 공매를 통해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의 재원으로 회수되고 있다. 이러한 재원은 국내 농산물 수급관리나 가격안정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1995~1998 기간에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4,213억원 정도의 수입 이익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약 96%에 해당하는 수입 이익금은 시장접근물량에 독점적 수입권을 부여하는 지정기관 배분 방식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4%는 수입권 공매를 통해 조성되었다. 특히 전체 수입 이익금 중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 이익금 비중이 92%를

표 5.5 수입관리방식별 수입이익금 징수내역(1995~1998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5~98 평균
총 계	518,150	556,019	403,072	208,073	421,329
지정기관배정	505,577	534,177	377,826	192,240	402,455 (96)
국영무역	496,883	520,769	345,170	185,895	387,179 (92)
생산자단체	8,694	13,408	32,656	6,345	15,275 (4)
수입권공매	12,573	21,842	25,246	15,833	18,874 (4)

주: ()안의 수치는 연도별 전체 평균 수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림부 국제농업국(2000), 『농업통상업무자료』로부터 재구성.

차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수입차액이 지정기관 배분 방식의 대표적인 유형인 국영무역을 통해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수입권 공매가 차지하는 수입 이익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 하면 기존에 국영무역이나 생산자단체 등 지정기관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되던 품목의 일부 혹은 전부가 수입권 공매제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이익금은 연도별로 큰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 변동이 큰 것이 주된 이유이다.

수입차액으로 발생한 이익금이 편입되는 주요 기금의 연도별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 이익금의 55%에 해당하는 연평균 2,314억원 정도가 농안기금에 할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익금의 연평균 41%인 1,746억원은 축발기금에 할당되고 있고, 나머지 4% 정도가 기타 기금으로 편입되고 있다.

농안기금 조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이행률이 높은 참깨로 199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농안기금 조성액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가격차뿐만 아니라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이 상대적으로 큰 대두, 마늘 등이 그 뒤를 이어

수입차액이 크다. 따라서 연도별 농안기금으로 편입되는 수입이익금은 이들 품목의 해당연도 국내 생산여건과 국내외가격차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종종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에 어려움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하기도 한다. 축발기금 조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쇠고기에 대한 수입부과금(Mark-up) 축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라 축발기금으로 편입되는 수입 이익금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3.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3.1. 관세할당(TRQ) 관련 협상동향

1947년 GATT가 발족되고 7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온 다자간 협상과는 달리 지난 UR 농업협상은 농업부문에 만연하던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화 과정에서 채택된 관세할당(TRQ) 제도를 통한 시장접근기회의 보장 등이 합의된 역사적인 협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상당치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고율관세,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이행률 저조, 국영무역 등 다양한 시장접근관리 방식을 통한 수입국 정부의 시장개입 및 관리무역의 성행으로 UR 이후 시장개방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협상 제안서를 통해 관세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공식에 의한 관세 인하와 국영무역 등을 통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관리가 무역을 왜곡하거나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수출국들은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WTO/DDA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실질적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실익 확보를 위해 UR 협상 타결 이후 국제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국가간, 품목간 관세격차,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한 수입국의 고율관세 및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누진, 관세부과의 단순성과 투명성 확보, 관세할

당 물량의 낮은 수입 이행률 및 수입관리방식 규율 강화 문제 등을 우선적인 협상 목표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감축이나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시장개방의 폭과 방식은 각국의 여건과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모든 회원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농산물 수입국들은 UR 이후 비관세장벽 철폐의 대가로 출현한 관세할당 제도가 농산물 교역확대와 수출국의 이익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전제로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수입관리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WTO/DDA 농업협상에서 수출입국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핵심 논쟁의 하나는 시장접근물량 확대 및 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것이다. WTO 농업협상에서는 현행 관세할당 제도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협상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는 실질적 시장접근 수준의 확대에 대한 것으로 현행 TRQ 제도하에서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시장접근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의 감축, 그리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의 감축에 대한 것이다.

수출국들은 실질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시장접근 물량 확대, 낮은 수입이행 실적을 보이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대폭 감축 혹은 철폐, 그리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부과되는 고율관세의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TRO 물량확대와 관련하여 케언즈그룹은 선진국의 경우 소비량의 20%까지 TRQ물량확대를 주장한 바 있으며⁹⁾ 미국은 모든 시장접근물량을 UR 이행 최종연도 양허수준에서 20%까지 늘리고, 이

9) 케언즈 그룹국가를 대표하는 호주는 지난 2002년 9월 협상에서 선진국의 경우 TRQ는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이행 첫째에는 10%를 증량(Down Payment)하고, 향후 5년간 10%를 더 증량하여 총 20%를 늘리되, 개도국은 증량없이 9년 동안 14% 늘릴 것을 제안하였음.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수입국들은 각국이 처한 농업상황을 고려한 소폭의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시장접근 개선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둘째는 TRQ 물량 수입관리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입관리 제도에 대한 규율강화에 대한 것이다. 시장접근물량 관리 방식과 관련하여 수출국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평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등의 수입국은 규율강화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TRQ 물량관리에 대한 규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수출입국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모든 회원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TRQ 관리방식의 규율 마련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TRQ 관리방식 중 농산물 수출국에 의해 가장 무역 왜곡적 수입관리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국영무역제도와 관련된 규율강화 문제가 주요 협상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인

표 5.6 관세할당제(TRQ) 협상 관련 주요국 입장

미국	· TRQ 물량 확대: 최종 양허기준 20% 증량 · 시장접근세율: 수입이행율에 따른 감축 혹은 철폐 · 수입관리방식: 규율강화
케언즈 그룹	· TRQ 물량 확대: 소비량기준 20% 증량 · 시장접근세율: 무관세적용 · 수입관리방식: 규율강화
EU	· 수입관리방식: TRQ 관리방식의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는 일련의 규범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다양한 관리방식 인정 필요성 강조(특히 공매제도의 장점부각 중)
일본	· TRQ 물량 확대: 국제 수급동향과 국내 소비변화를 고려한 신축적인 TRQ 물량설정 · 수입관리방식: 다양한 수입관리방식 인정
개도국	· TRQ 물량 확대: 선진국의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필요 · TRQ 관세: 개도국산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에 특혜 대우 요구

미국과 호주 등 케언즈그룹은 수입국영무역을 통한 독점적 수입권 철폐 혹은 운영하고 있는 수입국들은 이미 WTO 협정내에 효과적인 규범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규율강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농업위원회 의장이 제시한 관세할당 분야 2차초안 내용은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들이 주장한 시장개방 수준보다 낮은 것이다. 의장 2차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1999~2001년 평균 소비량의 10% 미만 품목에 대하여 5년간 1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이미 10%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현행시장접근 물량으로 유지하면 된다. 최소시장접근 품목 가운데 1/4은 10%가 아닌 8%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의 품목은 12%까지 증가시켜 평균 증가율을 10%에 맞추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최소시장접근 해당 품목은 1999~2001년 평균 소비량의 6.6% 미만 품목이며, 10년간 6.6%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해당 품목 가운데 1/4은 5%까지 증가시켜도 되나, 이 경우 다른 1/4에 해당하는 품목은 8%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특별품목은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당내 관세율은 관세의 추가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5.7 시장접근물량 관련 의장 2차초안 내용

선진국	개도국
·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10%미만 품목은 10%까지 증량 - 해당품목의 1/4은 8%까지 증가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은 12%까지 증가 - 이행기간: 5년	·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6.6%미만 품목은 6.6%까지 증가 - 해당품목의 1/4은 5%까지 증가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은 8%까지 증가 - SP품목은 증량 대상에서 제외 - 이행기간: 10년

3.2. 현행 수입관리 제도의 문제점

관세할당 물량 수입에 대한 바람직한 수입관리 방식의 정립은 여러 가지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대내적으로 수입관리의 정책목표, 수입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감안한 국내 수급관리의 필요성, 대체제도 운영의 장단점, 향후 수급 및 교역전망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이해당사국의 통상마찰 정도, 향후 TRQ 물량 관리에 대한 WTO 협상 타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WTO 농업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TRQ 물량의 확대폭과 수입관리 방식의 규율 강화 움직임 등 향후 협상타결 방향을 감안한 효과적인 수입관리 방식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시행중인 수입관리 제도의 골격은 지난 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지금까지 대체로 해당 품목의 피해 최소화와 수입차액의 환수를 통한 농업재원으로서의 활용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미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 수입관리 방식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수출국들이 TRQ 관리의 공정성, 효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국내적으로도 일부 품목에 대한 경쟁제한 및 산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3.2.1. WTO 농업위원회 등 대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

UR 농업협상 결과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농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 쇠고기, 오렌지 등 일부 품목은 수입물량 관리를 생산자 단체가 담당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수출국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에는 국내 판매시 구분판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쇠고기 구분판매제는 폐지되었다. 또한 일부 국영무역 품목은 수입비율이 낮고, 연도를 이월하여

물량을 통관시키고 있으며, 감자, 옥수수 등 일부 품목은 조제품을 수입하지 않기 위하여 특정 세번에만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등 쌀 수출국들은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 쌀의 용도를 가공용으로 지정하여 수입하고 있어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막론하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방출하고 있으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은 우리나라의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및 수입권 공매제도를 통한 수입차액 환수 등은 GATT 제2조(관세 양허), 제8조(수수료 및 부과금)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관세할당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품목수는 WTO 회원국 중 노르웨이(232개), 폴란드(109개), 아이슬란드(90개), EU(87개), 콜롬비아(67개)에 이어 6번째로 많다. 실행관세로 수입되는 품목 수를 제외한 실질적인 TRQ 물량에 대한 수입관리 품목 수는 우리나라가 EU(86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더욱이 수출국으로부터 무역왜곡 정도가 큰 수입관리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영무역과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입관리 품목이 우리나라는 13개로 이 방식에 의해 WTO 회원국이 수입을 관리하는 전체 품목수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TRQ 물량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국제규범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차액 환수 및 배분 문제는 수입국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이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케언즈 그룹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 수입국도 WTO 협상에서 투명성 있는 수입관리 제도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입관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국내 생산자단체에게 수입권 부여
- ② 유효기간이 매우 짧은 수입허가
- ③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품목의 수입권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 것
- ④ 국내농산물의 구매조건 또는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것

- ⑤ HS 4단위로 쿼터를 설정하고 6단위 이하에서는 쿼터를 배정하지 않는 조치
- ⑥ 사료용 등 최종 용도를 제한하는 조치
- ⑦ 수입권 획득에 대한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 ⑧ 국영무역기관을 비롯하여 수입창구를 단일화하는 조치

3.2.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산물 시장접근물량을 지정기관을 통해 독점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자격, 수입물량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급관리가 불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과 수입관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입추천과 수입관리가 사실상 불필요한 품목(38개 품목)
 -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13개 품목: 유장, 유당, 매니옥, 매니옥전분, 밀전분, 감자분, 녹차, 누에고치, 생사 등)
 - 낮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실적이 미미한 품목(17개 품목: 전지분유, 연유, 조란, 잠종, 묘목류, 감자, 고구마, 인삼, 인조꿀 등)
 -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아 농업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품목(5개 품목: 천연꿀, 땅콩, 골분, 육분, 기타배합사료)
 - 축산법에 의해 수입대상 규격이 정해져 있고 수입신고가 의무화된 품목(3개 품목: 종우, 종돈, 종계)
- ② 국영무역 방식의 수입관리가 불필요한 품목
 - 국내 생산량이나 가격 불안정이 적어 국영무역 관리가 불필요한 품목(7개 품목: 메밀, 생강, 낙화생, 참깨, 팥, 오렌지, 감귤류)
- ③ 불공정하고 경쟁제한적 관행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

- 물량배정과정에서 불공정관행이 우려되는 품목(4개 품목: 쌀, 쇠고기, 대두, 고구마전분)
- 수입자격, 수입물량, 자격제한 등 경쟁 제한적 관행이 우려되는 품목(2개 품목: 쌀, 버터)

4. 수입관리제도의 개선방향

4.1 기본 전제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관리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대외적으로 향후 WTO 농업협상의 관세할당 제도와 관련된 규율 개정 방향과 국내적으로 제기된 바 있던 수입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확보에 대한 것이다. 독점적 수입관리 방식은 경쟁력 있는 무역업자간의 연계가 곤란하여 효율성을 저해하고 수입 이행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수출국들은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는 투명해야 하고 상업적 고려라는 원칙에 따른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쿼터의 국별 배분은 공정성과 무차별성에 입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입관리의 효율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과거 수입실적에 입각한 수입권의 배분은 변화된 무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수입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수입관리의 비효율성은 수입이 이루어진 후 국내에서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 제한적 관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수입관리 방식에 따른 행정비용과 수입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rent seeking behavior)에 따라서도 효율성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입관리 방식의 선택은 교역 상대국의 주장이나 효율성의 기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비록 효율성이 저하되더라도 수입차익의 배분에 따른 국내 산업별, 계층별 형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국내가격이 불

안정하고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은 지정기관에 의한 독점수입과 적절한 가격 안정화 대책도 요구된다. 따라서 일부 품목의 국내 수급관리와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영무역 제도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영무역 방식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수입관리 방식은 수입품의 특성(동질성 여부), 수출입업자의 수, 계절적인 무역의 흐름, 국내수급 등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입관리는 오히려 대내적으로 수입관리의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수입관리 제도의 개선방향은 개선을 위한 평가 기준과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가중치(중요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결국 이들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가급적 제반 고려 여건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입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2 수입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기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다만 각각의 평가 기준 중 어떠한 항목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2.1. 개별 품목의 성격과 수입관리 제도

현재의 상이한 품목별 수입관리 방식은 각 품목의 특성과 무역의 특징에 기초하여 각각의 방식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내외 가격차가 작고 비교적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수입차익의 배분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적으며, 수입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품목은 선착순이나 실수요자 수입방식이 적합하다. 계절적으로 수입이 집중되거나 국내 가격의 변동폭이 큰 품목의 경우 국영무역이나 수입허가제가 적합하다. 국내외 가격차가 작은 반면 쿼터량에 비해 국내 수요가 적은 품목은 실행세율 적용 방식이 원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입업무의 전문

성이나 수출업자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품목은 과거 수입실적에 의한 수입 추천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4.2.2. 수입관리 제도의 효율성

수입관리 제도의 효율성은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입업자와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업자가 연계될 수 있는 수입제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수입허가제나 국영무역 등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성 저하된다. 또한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쿼터의 수입에 따른 수입차익의 획득을 위한 과도한 비용 발생이 우려되며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 공매제도가 가장 시장지향적인 제도라고 평가되는 반면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입이나 국영무역은 시장왜곡 현상이 크고 수입 이행률을 낮추는 폐단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입관리의 비효율성은 ① 수입독점에 의한 경쟁제한, ② 수입추천 및 물량배정과정에서 사업자 단체에 의한 각종 불공정 행위(사업자 단체의 신규조합원에 대한 수입물량 공급제한, 수입물량 배정시 자의적인 기준 설정, 조합원에게 여타 품목 구입강요 등), ③ 엄격한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한 경쟁제한(과거수입실적에 따른 수입추천 등)에 의해서 주로 발생된다.

다양한 수입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이행률과 쿼터배분의 비효율성에 근거하여 스칼리(Skully, 1998)는 <표 5.8>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5.8 수입관리 방식별 효율성 비교

수입관리방식	쿼터수입 미소진 가능성	쿼터 배분의 비효율성
실행세율	전혀 없음.	전혀 없음.
수입권공매	저	최저
수입허가	저	중
선착순배정	저	중
과거수입실적	중	최고
국영무역	저	고
생산자단체수입	저	고

주: 쿼터배분의 비효율성이란 쿼터의 수입권을 수입자별, 수출국가별로 공정하고 상업적인 원칙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배분하였는가의 여부.

4.2.3. 수입차익의 배분과 형평성

이중관세에 의한 수입차익의 발생과 귀속은 형평성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경제외적(예, 정치적)인 문제도 초래하게 된다. 국내외 가격차와 수입차익이 클수록 수입관리의 효율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가 환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형평성과 효율성간의 조화). 특정 수출업자나 수출국에게 수출권을 배분할 경우 수입차익이 수출국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의 수입권을 생산자단체에 배분(예, 오렌지 수입권을 제주감귤조합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개방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 또는 관련 단체가 수입차익을 환수하여 구조조정이나 가격안정 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수입개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4.2.4. 수출국의 요구사항

수출국들은 WTO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교환(AIE) 작업과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관리가 무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들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에 관한 규율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장접근물량의 품목별, 세번별 배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가급적 상업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쿼터물량의 국가별 배분은 수입제한이 없었을 경우 기대되는 시장점유율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GATT 13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수입관리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좀 더 투명한 방식이 도입되어 무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2.5. 수입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차익의 환수와 농업부문의 투자 필요성 이외에도 수입시기를 조정하여 국내가격의 변동폭을 조정하는 등 국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수확시기가 집중되어 계절성을 띠고 저장성이 낮아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4.3 수입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4.3.1. 일부 품목의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 폐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품목(13개 품목: 유장, 유당, 매니옥, 매니옥전분, 밀전분, 감자분, 녹차, 누에고치, 생사 등), 낮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실적이 미미한 품목(17개 품목: 전지분유, 연유, 조란, 참종, 묘목류, 감자, 고구마, 인삼, 인조꿀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아 농업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품목(5개 품목: 천연꿀, 땅콩, 꿀분, 육분, 기타배합사료) 등의 경우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수입추천제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폐지 여부의 의사결정은 품목별로 생산자, 소비자, 학계, 무역업계, 정부 등 관련 기관 및 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더라도 해당 품목의 대체품목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4.3.2.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으로의 전환

국영무역이나 생산자단체에 의해 수입이 관리되는 품목은 수입관리 관련 규율 강화, 고율관세의 대폭 감축(국내외 가격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등 WTO 협상 추이와 국내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의 축소로 수입차액 환수라는 국영무역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권공매방식 등 보다 시장 지향적인 수입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외 가격차가 작고 생산이나 가격의 변동폭이 작은 품목을 경쟁촉진 차원에서

수입권공매 방식이나 실수요자배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입권공매 방식은 수입차익을 정부나 지정기관이 환수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영무역과 차이가 없다. 물론 수입권공매방식은 나름대로 수입관리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의 품질이 급속히 동질적이어야 하며 수출입자의 수가 많고 무역관련 정보가 비교적 널리 공유될 수 있어야 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수입권공매나 실수요자배정 방식으로 민간수입을 확대하면 정부의 가격안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예: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등).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되는 일부 품목 중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없어 수입 이행률이 저조하고 실제 수입권공매를 통한 수입차액 환수가 거의 무의미한 한 경우에는 실수요자배정 등 보다 시장 지향적인 수입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이 관리되는 쌀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없어 수입 이행률이 8.2%에 불과하며, 수입차액 환수 실적도 미미한 실정이다.

EU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등 수입국들은 공매제도가 수입 이행률이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으므로 TRQ 관리 방법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TRQ 관리 방법 중 특히 공매제도가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부과금을 발생시킴으로써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매제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매제도를 통한 수입관리의 제약요인 발생에 대비하여 보다 시장 지향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3.3. 경쟁제한 관행의 개선

산업의 균형발전, 공평성, 효율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일부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자격의 제한이나 관세할당량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품목의 수입관리 차원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입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국내 경제정의 실현차원에서 시정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경쟁제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입된 가공용 쌀을 가공공장의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 수입 대두를 연식품조합에서 실수요자에게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것, 수입 버터를 관광용품센터로 한정하여 수입자격을 제한하는 것 등의 경쟁 제한적 관행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각국의 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경쟁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규범의 제정 및 규율 강화 움직임을 감안할 때,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특별한 수입관리가 필요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 왜곡현상 제거를 통한 시장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과감한 경쟁제한 관행의 철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입된 하나의 품목에 대해 용도별로 수입관세나 수입차액부과에 차이를 둬으로써 국내 유통질서의 혼란, 산업간 불균형 심화, 탈법 조장 등 시장왜곡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두는 연간 170만톤이 수입되는 데, 이 중 80%가 넘는 착유용 및 사료용은 1%(일부는 5%)의 관세만 부과되어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반면 두부제조용, 두유 제조용, 장류 제조용 등으로 공급되는 대두는 5%의 관세 이외에 수입원가보다 높은 수입차액(2000년의 경우 톤당 38만원 추정, 관세로 환산할 경우 136%)을 징수하여 국내 대두 제품 소비자와 생산업체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4.3.4. 유사품 및 관련제품을 고려한 수입관리 방식의 채택

많은 농산물은 상품간에 밀접한 대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율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경우가 많다. 마늘의 경우에서와 같이 높은 관세율과 수입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신선/냉장 마늘)과 달리 유사(냉동 마늘) 및 대체품목(초산조제/건조 마늘)은 낮은 세율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율 격차를 이용한 대체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신선마늘의 관세율이 높고 국영 무역을 통해 마늘이 관리되고 있더라도 해당 생산농가는 대체품 또는 유사품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고추와 고추장, 생강과 조제생강, 땅콩과 피넛버터, 대두와 대두분말, 감자와 냉동감자 등의 경우에도 관세격차로 인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다.

표 5.9 품목별 대체, 유사품목간의 관세(관세상당치) 비교

품목	관세상당치	대체/유사품목	HS 세번	기준관세	양허관세
고추	286.5	고추가루	0904-20-2000	300	270
		고추장	2103-90-1030	60	54
		혼합조미료	2103-90-9030	60	54
마늘	382.0	초산마늘	2001-90-9060	40	36
		냉동마늘	0710-80-2000	35.5	27
양파	143.3	건조양파	0712-20-0000	150	135
팔	446.5	강낭콩	0713-33-9000	35.5	27
참깨	668.5	참기름	1515-50-0000	700	630
		기타	2008-19-9000	59.2	45
생강	25.4	설탕처리생강	2006-00-3000	75	45
메밀	271.7	대체유사품없음			
땅콩	244.6	깍지땅콩	1202-10-0000	256.1	230.5
		알땅콩	1202-20-0000	256.1	230.5
		조제땅콩	2008-11-9000	71	63.9
		피넛버터	2008-11-1000	71	54
		아몬드	0802-12-0000	50	21
		캐슈넛	0801-30-0000	50	32.8
대두	516.7	대두분말	1208-10-0000	35.5	27
감자	322.7	종자용감자	0701-10-0000	338	304
		감자분, 조분	1105-10-0000	338	304
		감자플레이크	1105-20-0000	338	304
		감자전분	1108-13-0000	506	455
		냉동감자	0710-10-0000	30	27
		건조감자	0712-10-0000	30	27
		조제/저장처리/냉동	2004-10-0000	40	18

자료: 농림부,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1994) 및 농림축산물 품목분류(1999/2000).

국제적으로 관세율 인상을 통한 관세격차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국영무역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품목을 공매제도나 다른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입업자들이 관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대체품이나 가공품으로 수입함으로써 실제 수입차액 환수나 해당품목의 생산자 보호 등 당초 국영무역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 품목이 계속 국영무역으로 수입관리 되는 경우 비록 관세할당량이 수출국에 수입기회를 보장해준 것이지 의무적인 수입물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대외적으로 국영무역에 의해 관리되는 관세할당량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량은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의 피해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제 6 장

주요국의 식품 관련 관세율 비교

1. 주요국의 관세제도

각 국은 자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관세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이한 관세 구조를 나타낸다. 관세의 형태 측면에서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용되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다양한 특혜 세율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산업부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누진관세나 역관세가 채택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의약품, 건설장비, 철강, 가구, 농기계 등 투입재에 대해서는 무관세(zero-for-zero)를 적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WTO 체제 아래에서 많은 나라들은 양허관세율(bind rates)을 낮추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양허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보다 높지만, WTO 체제에서 양허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는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에 농산물은 쿼터와 변동 부과금(variable levies) 등의 국경조치가 관세로 전환되는 이른바 관세화 과정을 통해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제도 아래 놓이게 되었다. TRQ는 정해진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쿼터 내 또는 할당 내 관세율: in-quota rates)을 적용하는 반면에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 더 높은 관세율

(쿼터 초과 또는 할당 초과 관세율: out-of-quota rates)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쿼터 초과 관세율과 많은 쿼터 내 관세율이 종량세의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여기서는 분석 대상국가로 선정한 10개국 가운데 관세제도가 매우 단순한 칠레를 제외한 9개국의 관세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칠레의 관세제도는 6%의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단순한 형태이며, WTO에 양허된 일부 품목의 관세율도 최고 세율이 31.5%에 불과하다. 중심세율 6%가 적용되는 농산물은 전체의 90%에 가깝다. 관세 부과 형태는 종가세로 단순화되어 있다. 따라서 칠레에 대한 농산물 관세제도 분석은 생략하였다.

1.1. 한국의 관세제도

1.1.1. 관세정책의 기초

우리나라 관세제도는 1980년대 이후에 차등관세율제도에서 균등관세율제도로 이행하였다는 점과 평균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적용된 높은 관세율을 통한 산업보호를 축소하고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 격차를 줄여 시장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984년과 1988년 두 차례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통해 균등관세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중심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평균관세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누진적 체계를 가지는 차등관세제도에 따른 특정산업 보호효과를 없애고 시장 원리에 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자생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시킨다는 취지로 균등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관세율의 급격한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품목별 세율을 중심세율 위주로 책정하여 중심세율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한편, 중심세율 자체를 연차적으로 2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1990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의 관세율에 도달하고자 노력

하였다.

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생산이 전혀 없거나 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입 의존이 불가피한 비경쟁 원자재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국내 생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쟁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지금까지 과보호되었던 투입재와 생산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관련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재에 대한 높은 보호세율도 인하하여 내수 위주의 산업보호를 완화하였다.

1.1.2.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우리나라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0%에서 946.6%까지 분포의 폭이 넓고 관세화 과정에서 다양한 관세율이 설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종량세 도입을 인정받아 68개 품목의 양허관세에는 종가종량선택세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기본관세와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종가종량선택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세액이 높은 것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로 주요 대상 품목은 버섯류, 채소류, 견과류, 양념채소(고추, 마늘, 생강 등), 참깨, 대두, 보리, 당면, 도토리 등 부피가 크거나 저품질의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UR 협상에서 관세화에 의해 양허관세가 설정된 품목은 118개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0~853.6%이며 곡물류(전분 포함)와 인삼, 농업용 종자 등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BOP 품목¹⁰으로 UR 협상에 의해 새로운 양허세율을 설정한 품목은 108개이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들의 관세율은 9.6%~946.6%이다. 유제품, 양념채소, 과실류, 견과류, 유지작물, 매니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기본세율보다 높고 관세화 품목은 매우 높은 수준의

10) UR 협상 타결 이전에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던 품목들로 1989년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협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GATT 18조 B항)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장개방이 불가피했던 품목들을 말한다.

관세가 책정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밀과 곡물박류, 종자를 제외하고는 중심세율인 8% 이하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본관세율보다 양허관세율이 낮은 품목도 일부 존재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냉장), 양고기, 가공육류 등 축산물, 사과, 배 등 과실류, 일부 채소류, 밀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관세협상에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고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이 같은 수준에 있는 품목은 오렌지, 농업용 종자, 주류, 일부 인삼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도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양허관세율이 200% 이상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곡물류와 양념채소류, 분유, 참깨 등이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품목들로 볼 수 있다. 특히 곡물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매우 낮으나 양허관세율은 수백%에 달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 사료와 가공용 곡물은 낮은 관세율로 공급하고 농가소득과 식량자급도 유지를 위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보다 낮은 20~60%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고차가공품에 속하는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비교적 낮은 양허관세율인 10%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과즙음료 정도이다. 반면 60%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두부, 조제육류, 일부 주류, 일부 과실주스 등으로 국내 원료농산물의 생산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1.2. 일본

1.2.1. 개요

일본은 관세법과 관세 정률법을 근간으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이 적용하는 관세율 종류는 크게 다음 4가지로 구성된다.

- ① 기본세율 : 기본세율은 관세 정률법이 정한 세율로서 관세행정에서 기본이 되며, 장기간 적용된다.
- ② 잠정세율 : 잠정세율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정한 세율로 단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 ③ 협정세율 : 협정세율은 WTO 협정이나 다른 국제협정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말한다. 단, 협정세율은 잠정세율이나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④ 특혜세율 : 특혜세율은 개도국이나 개도국 지역이 원산지인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혜세율의 수준은 보통 선진국 물품에 징수하는 세율보다 낮다. 특혜세율은 잠정 관세조치법(TTML) 제8조 2항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 순서이다. 관세율표는 1988년부터 일본,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들이 가입한 ‘HS 조약’ 또는 ‘상품의 명칭 및 분류를 통일하는 국제조약’에 기초한다. 이 조약의 부속서인 ‘HS 품목표’는 품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관세 평가제도 하의 과세가격은 도매가격에 운반비와 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이 된다.

1.2.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특혜관세 제도는 개도국이나 개도국이 속한 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도국의 소득 증대, 공업화 촉진, 경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7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혜세율은 보통 최혜국(MFN)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낮다. 농수산물(HS 1~24류)에 대해서는 ‘특혜세율 적용 목록(positive list)’ 방식에 따라 73개 품목(HS 4단위 기준)을 선정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실행세율보다 10~100% 인하된 수준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특혜세율 공여는 면책조항(escape clause)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특정시기에 특정 물품의

수입량이 급증해 일본의 국내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때에는 특혜 세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관세율을 설정해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관세청, 2000). 첫째, 종가세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세율의 형태로 수입품의 가격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종가세의 대상 품목은 주로 상품간 품질 격차가 크거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는 품목들이다. 일본의 실행 세율표에 따르면 종가세 적용대상 품목의 비중은 88%이다. 둘째, 종량세는 수입품의 수, 용적, 중량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율과 수입가격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종량세의 대상 품목은 주로 상품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셋째,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친 것으로 선택세와 복합세로 나뉜다. 선택세는 같은 품목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정해 이 가운데 보통 세액이 큰 것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 차액관세는 수입품목의 가격과 정해진 기준가격 사이의 차액을 세액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섯째, 슬라이드(slide) 관세는 국제시황의 변동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큰 품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적정한 관세를 부과하지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계절관세는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바나나, 오렌지, 자몽, 포도 등 과실류에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2.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일본은 낙농제품, 쌀과 기타 곡물, 채소 및 서류, 생사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탈지분유의 경우 비슷한 지방 함유율의 제품이라도 급식용, 사료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쿼터가 적용된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은 0~35% 정도의 종가세 형태로 결정되며, 여기에다가 kg당 400~1,200엔 정도의 종량세를 더해 쿼터 초과 관세율을 적용한다. 쌀을 제외한 곡물과 채소의 경우 0~40% 정도의 쿼터 내 관세율을 적용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로 곡물의 경우 kg당 50~120엔, 채소의 경우 350엔이 부과된다. 생사, 땅콩, 서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은 7.5~40% 정도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kg당 600~7,000엔이다.

쌀은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되면서 수입물량 제한이 사라졌다. 적용 관세율은 톤당 1999년에 351,170엔(2,922 달러), 2000년에 341,000엔(2,837달러)으로 정해졌다. OECD와 WTO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세율(ad valorem equivalents: AVEs)에 따르면 HS 6단위 기준으로 낙농제품의 평균 쿼터 초과 관세율은 각각 250%와 476%이며, 곡류와 채소의 경우 각각 248%와 490%로 나타났다.

1.3. 미국

1.3.1. 개요

미국 관세제도는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Tariff Act)’ 제402조와 1979년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제2장에 근거한다. 관세체제는 1989년에 공식 채택한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에 따라 분류되고 여기에 해당 관세율을 적용한다. 수입물품 분류 가운데 앞의 6단위 숫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나머지 세항 분류는 이전에 사용하던 관세율표(TUSA)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율표는 부문(section)과 장(chapter)으로 나뉜다. 부문은 동물, 식물, 기초재료, 화학물질, 기계, 전자제품, 기타로 물품을 구분하고, 장은 부문에서 분류한 제품을 종류와 제조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세율을 제시한다.

관세 평가제도 아래 과세가격(관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정해진다. 과세가격은 수입품의 구매자가 수출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기초하며, 이는 GATT 도쿄 라운드에서 채택된 ‘관세평가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평가 방식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은 운임과 보험료가 관세 부과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3.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관세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만 대부분의 수입품목은 종가세 대상이다.¹¹ 종가세율의 범위는 보통 2~7% 수준이며 평균 관세율은 4%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이나 가공단계가 낮은 품목의 경우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최혜국(MFN)에 적용하는 특혜관세는 모든 WTO 회원국과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된다. 무역 대상국이 MFN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에 따라 국민의 이주권 인정, 미국과 양자 통상협정 체결 등을 갖춰야 한다.

미국이 개도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호혜적이지 않은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CBI)는 중미와 카리브 연안의 24개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미국은 자국이 체결한 무역협정(NAFTA, US-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협정)의 대상국에 대해서는 인화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 제조한 원료를 사용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이에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HTS 9802로서 미국산 원료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에서 더해진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1996년 기준으로 총 수입품의 8.5%는 이 규정에 의해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13.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구조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쿼터 내 관세율은 0~25% 범위의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평균 쿼터 내 관세율은 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모든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율인 4%보다는 높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종량세 또는 혼합세 형태로 적용된다. UR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과 최종 양허세율의 격차가 15%로 설정됐으나 이 감소 폭이 모든

11) <http://usinfo.state.gov/journals/ites/0697/ijee/ej7f&f.htm#remedy>

품목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설탕제품 그룹의 경우에 관세율이 설탕 함유량의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관세율의 증가세 부분만 감축되게 된다. 평균 쿼터 초과 관세율은 29%이지만 견과와 땅콩 및 땅콩버터의 관세율은 각각 150%와 135%에 이른다. 산출된 세계가격보다 100% 이상으로 높은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설탕뿐이다.

1.4. 유럽연합(EU)

1.4.1. 개요

유럽연합의 관세제도는 1958년에 6개 회원국이 시작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모태로 발전해 왔다. 역내 회원국 사이의 물품이동의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고, 제3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Common Customs Tariff: CCT)를 적용한다.¹² CCT는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관세율은 수입품의 특성이나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통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나 가공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에 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품의 원료 및 반가공 수입품에 대해서는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관세 부과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체제는 국제관세기구(WCO)가 관장하는 HS(Harmonized System)에 기초해 운용된다. 관세의 종류는 표준관세와 양허관세가 있다.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혜관세는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카리브해안 국가들, 태평양군도 국가들(ACP 국가) 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특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한편 양허관세는 WTO 협정에 의해 적용된다.

1.4.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유럽연합은 WTO 틀뿐 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과 관세협정 등의 수단으로 개별국 또는 국가 그룹과 특혜협정을 맺고 있다. EEA(European Economic

12) http://europa.eu.int/comm/dg10/publications/brochures/move/douane/customs/txt_en.html

Area)는 유럽연합,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EEA에 포함되지 않은 스위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역내 경제권의 확대를 대비해 유럽연합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앙 및 동구권 국가들과 협정을 맺고 상호 관세양허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특혜관세도 있다. Lomé 협정의 당사국인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국, 태평양 연안국들(ACP)에서 수입되는 모든 산업재와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지중해 연안국과 협정을 맺고 특혜관세를 공여한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특혜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 GSP) 아래 유럽연합은 GSP 대상국의 제조품과 가공 농산물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4.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유럽연합은 농산물에 대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를 설정해 적용한다. 쿼터 내 관세율은 0~20% 범위의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정해져 있다. 종량세 가운데 최저 관세율 대상 품목은 곡물 잔류물(residue)로 톤당 30 ECU이고, 최대 관세율 적용 품목은 치즈로 톤당 1,000 ECU이다. 일부 품목(HS 100590, 100700)의 경우 실행관세율이 이행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아 관계기관 자의로 쿼터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종가세로 환산된) 산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무역협정에 따라 상이한 쿼터 내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냉동 돼지 허릿살고기와 햄(HS 02032957)의 경우 일부국에서 수입되는 34,000톤에 대해서는 톤당 250 ECU의 종량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톤당 434 ECU가 적용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수는 HS 6단위 기준으로 181개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평균 관세율(종가세로 환산된)은 45% 정도로 모든 관세대상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 수준인 7.2%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로 높은 수준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육류(HS 02, 80%), 잔류물(HS 23, 67%) 등이고 낙농제품과 지방 및 기름(HS 15)도 평균 수준 이상이 산출한 세계 평균가격 수준보다 100% 이상으로 높은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보리, 설탕, 쇠고기 등이다.

1.5. 중국

1.5.1. 개요

중국에서는 관세청(CGA)이 관세를 평가하고 징수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17%의 부가가치세도 징수한다. 현재 관세의 종류는 일반관세와 최소관세 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 등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관행에 따라 국가 그룹별로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중국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ASEAN 개도국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관세평가는 2002년에 수출입관세법을 개정해 이전의 최소가격 방식에서 WTO 협정이 제시하는 거래가격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소가격 방식은 신고된 수입가격을 관세최소가격 데이터베이스 상의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해 수입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 관세 평가방식은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새로운 관세 평가방식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이용된다.

1.5.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중국은 WTO에 가입을 계기로 관세율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있다.¹³ 가입 첫해인 2002년에 관세품목의 73%에 해당하는 5,300개 품목에 대해 3%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져 관세율 평균이 12%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3)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201/07/eng20020107_88176.shtml

2002년에 15.8%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 가입할 때에 40~60%에 이르는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까지 낮추기로 약속했다(Carter and Rozelle, 2002).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곡물, 면화, 식용유, 양모,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에 대해 TRQ로 양허했다. TRQ 품목의 쿼터 내 관세율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5.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중국의 농산물 양허관세는 평균 38%로 높은 편이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양허세율은 40%이며, 최고 세율은 135%이다. 농산물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품목이 20~5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허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은 37개로 전체의 4% 수준이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곡물, 곡물 가공품, 식용유, 주류, 담배 등이다. 중국은 농산물과 관련하여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협상에서 곡물과 유지작물에 대하여 관세할당(TRQ) 물량을 설정하였다. 관세할당 물량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품목별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배정하고, 국영기업이 쿼터 물량 수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목별 TRQ 물량은 다음과 같다. ① 밀: 730만 톤(2000년)에서 960만 톤으로 확대(2005년), ② 쌀: 266만 톤에서 532만 톤으로 확대, ③ 옥수수: 450만 톤에서 720만 톤으로 확대, ④ 대두유: 170만 톤에서 730만 톤으로 확대 등이다.

TRQ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점차 시장기능이 강화된다. ① 밀의 국영무역 비율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90% 수준 유지, ② 옥수수는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 75%에서 2004년 60%로 축소, ③ 쌀의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0% 수준 유지, ④ 대두유의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 50%에서 2004년까지 10%로 축소하는 등 TRQ 관리방식은 강화되고 있다.

1.6. 멕시코

1.6.1. 개요

멕시코는 모든 나라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 분류 체계는 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1년 5월 현재 MFN 관세율에 포함된 세번수는 모두 11,387개이다. 단순평균 실행 MFN 관세율은 16.5%이다. 설탕이 포함된 일부 제품을 뺀 모든 품목에는 종가세 관세율이 적용된다. 설탕이 포함된 제품은 종량세 또는 혼합세가 적용되는데, 종량세의 수준은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톤당 395.86 달러이다.

종량세 대상 품목수는 설탕, 설탕 함유율이 90% 이상인 코코아, 시럽 등 10개이다. 그리고 혼합세 대상은 응축 우유, 과일, 과일주스, 조리된 식품 등 45개 품목이다. 관세 평가방식에서 과세가격 계산기준은 CIF 가격에서 보험조건을 제외한 C&F 가격이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기준가격(reference price)보다 낮을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 증명될 때까지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멕시코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소비재와 원자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원자재와 중간재의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소비재와 식품류의 관세율은 높은 편이다. 다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조약국들과 마찬가지로 섬유, 신발류, 식품, 음료와 담배, 식용유와 지방, 동물 및 채소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이상 또는 고관세의 형태를 나타낸다.

UR 이후 단순 평균 양허관세율은 36%이며, 농산물이 43%, 산업재가 35% 정도이다. 평균 실행관세율은 양허관세율 수준보다 크게 낮아 전체의 경우 17%이고, 농산물의 관세율은 25%이다. 멕시코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상국에 대해 관세를 꾸준히 인하하고 있다. 멕시코가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코스타리카('94), 볼리비아('94), NAFTA('94),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95), 칠레, 우루과이 등이며, 협정 체결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관세 이외에도 멕시코는 통관절차(customs processing)의 방편으로 수입품목에 대해 0.8%의 부과금을 매긴다. NAFTA 회원국과 G3(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2003년부터 적용)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부과금이 면제된다.

1.6.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TRQ 제도 아래 쿼터 초과 관세율은 총 221개 품목에 설정된 반면에 쿼터 내 관세율은 50개 품목에 적용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22%는 종량세 형태인 반면에 쿼터 내 관세율은 모두 종가세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41%로 쿼터 내 관세율의 49%보다도 낮는데, 이는 종가세율만 평균치 산출에 포함된 데 따른 결과로서 종량세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 수준보다 더 높다.

46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가 적용된다. 이 방식은 밀, 보리, 설탕,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많은 주요 식품에 적용되는데, 보통 관세율 수준이 높으며 최소 관세율이 100% 이상인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돼지기름의 경우 최소 관세율이 254%로 가장 높게 설정돼 있다. 쿼터 내 관세율은 분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50%가 적용된다. 분유의 경우 쿼터 내 물량에 대해 관세율은 0%이다. 쿼터 내 물량은 100% 충족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에 배정돼 있고 나머지 일부를 캐나다가 차지한다.

1.7. 호주

1.7.1. 개요

호주의 관세율 체계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일반 관세는 1999년 현재 5% 수준이다. 특혜관세는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국가에 적용되는 것과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로 구성된다. 품목 분류 체계는 HS 분

류 방식이다. 관세 평가는 GATT 제7장에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기초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가격은 FOB 가격이므로 CIF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¹⁴

1.7.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관세는 호주의 중요한 무역정책 수단이지만, 총 조세수입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낮으며, 관세율도 낮다(WTO, 2002). 실행 MFN 관세율은 현재 4.3%이고, 2005년까지 계속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4.7%인 반면에 농산물의 경우 1.2%로 다른 나라와 달리 농산물의 관세율이 오히려 낮다. 약 86%의 관세율이 0~5%이다. 양허 MFN 관세율의 평균은 10.5%로 실행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상한으로 유연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99% 이상의 관세율이 종가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호주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관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세는 모두 10개의 세율로 단순화되어 있다. 관세부과 방식은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등이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누진관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TRQ는 5개 치즈 품목과 가공되지 않은 담배에 적용되고 있다.

1.7.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호주는 TRQ 제도를 도입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의 농산물에 대해 가장 낮은 평균 TRQ 관세율을 설정한 나라이다. TRQ가 적용되는 세번수는 9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치즈와 치즈 관련 품목이고, 그 나머지는 담배와 껌이다. 쿼터 초과 평균 관세율은 27%이고, 쿼터 내 관세율은 7%이다. 치즈에 대한 쿼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인 반면 담배의 경우에는 종가세이다. 그러나 쿼터 내 관세는 모두 종량세이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CIF 가격에 기초한다.

1.8. 캐나다

1.8.1. 개요

캐나다 관세제도의 주요 근거 법령은 관세법과 관세율법이다. 관세법(Customs Act)은 통관과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수출입 준수사항, 관세평가, 감세 및 환불, 규정의 집행방식 등을 규정한다. 관세율법(Customs Tariff)은 관세 부과와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법률이다. 관세율의 기본 구조는 일반특혜관세(GPT)와 최혜국관세(MFN), 특별관세 등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저율의 일반 특혜관세의 수혜 대상이 되며, 그 밖의 품목은 최혜국관세가 적용된다.¹⁵ 일반특혜관세는 최혜국 관세율의 1/2 수준이며,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다. 특별관세는 영연방국과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관세부과 상품분류는 HS 분류 방식에 기초하며, 원산지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평가방식에서 과세가격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 형태의 관세가 주로 부과된다.

1.8.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캐나다는 종가세 중심의 관세구조를 가지며 관세율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종가세 관세율의 단순 평균은 7.5%이고, 표준편차는 26.6%이다. 그러나 섬유, 신발, 식품, 음료와 담배, 식용유와 지방, 동물 관련 제품 등의 관세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동물 및 채소 관련 제품과 식품, 음료와 담배의 1/4~1/3 정도가 종량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누진관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섬유의 경우 원료, 중간재, 최종재의 관세율은 각각 1.1%, 9.3%, 15.4%이다. 전체 품목에서

15) 일반특혜관세 대상 품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GPT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수혜국에서 직접 캐나다로 선적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덧붙여야 한다.

15% 이상의 고관세 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이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1.8.3. 농산물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TRQ 제도 아래 쿼터 내 관세율은 대부분 종가세로 0~9% 정도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도 주로 종가세이나, 최소 관세율이 종량세 형태로 정해져 있다. 세번수 가운데 37%가 종량세 또는 혼합세 형태를 띠는데, 특히 시리얼과 맥아 등 조리된 식품이 이에 해당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200~300%로 높게 설정된 품목은 가금육(HS 01, HS 16)과 낙농제품(HS 04, HS 18, HS 19, HS 21) 등이다. 종가세 기준으로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우유와 크림으로 293%이며, 가장 낮은 품목은 쇠고기로 27%이다. 이에 따라 탈지 및 전지분유와 버터 등 낙농제품은 세계가격보다 2.5배 정도 되는 관세율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반면에 밀, 보리, 쇠고기 등의 쿼터 초과 관세율은 세계가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

1.9. 태국

1.9.1. 개요

태국의 관세는 크게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히 특혜관세는 GATT 협정세율, GSTP, 태국-라오스 사이의 협정세율, ASEAN 국가와 협정세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부과 형태로는 종가세와 종량세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를 위한 품목 분류는 HS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관세 평가방식은 실거래가격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대부분 CIF 가격에 기초한다. 그러나 부당한 가격조작과 세수 탈루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거 일정 기간에 수입된 동종 동질 품목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1.9.2. 관세제도의 현황과 특징

태국은 1990년 이후 본격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해 왔으며, 1997년부터는 3,908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율구조를 39개에서 6단계로 단순화하고 있다. 세율은 0%, 1%, 5%, 10%, 20%, 30% 등 6단계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은 아직까지 양허되지 않은 세번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 양허되지 않은 세번수는 1,498개 정도이다. 양허세율이 15% 이상인 세번수는 4,512개에 달하여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1.9.3.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 구조의 특징

태국의 농산물에 대한 평균 양허관세율은 35% 정도이다. 양허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생사 226%, 분유 216%, 식물성 기름과 케이크 133~143%, 양파 142%, 종자 125%, 생사 94%, 커피와 차 90%, 콩 80%, 담배 72% 등이다. TRQ는 총 농산물의 7%에 해당하는 55개 품목에 대해 설정돼 있으며, 쿼터 초과 관세율의 평균은 93% 정도이다.

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2.1. 양허세율 구조

2.1.1. 양허관세 부과 형태

개발도상국들의 관세 부과방식은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은 양허관세 부과 형태로 종가세(전체 품목 수의 95.2%)와 선택세(전체의 4.8%)를 두고 있다. 실행관세는 종가세만으로 부과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한국이 UR 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세를 양허하면서 종가

표 6.1 양허관세율 부과 방식별 현황

단위: 개, %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합계
한국	1,244(95.2)	0(0.0)	63(4.8)	0(0.0)	1,307(100.0)
태국	734(99.6)	4(0.5)	0(0.0)	0(0.0)	737(100.0)
멕시코	950(100.0)	0(0.0)	0(0.0)	0(0.0)	950(100.0)
중국	863(100.0)	0(0.0)	0(0.0)	0(0.0)	863(100.0)
칠레	766(100.0)	0(0.0)	0(0.0)	0(0.0)	766(100.0)
미국	983(57.2)	617(35.9)	0(0.0)	120(7.0)	1,720(100.0)
캐나다	868(66.6)	225(17.3)	170(13.0)	40(3.1)	1,303(100.0)
EU*	1,036(58.8)	476(27.0)	0(0.0)	250(14.2)	1,762(100.0)
호주	780(98.2)	14(1.8)	0(0.0)	0(0.0)	794(100.0)
일본	1,041(79.8)	162(12.4)	44(3.4)	57(4.4)	1,304(100.0)

* EU의 계절관세(11개), Minimum(17개), Maximum(17개) 등은 복합세에 포함.

세와 종량세 가운데 유리한 것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선택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태국은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종류의 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종량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4개에 불과하다. 멕시코, 중국, 칠레 등 나머지 개발도상국은 모두 종가세를 적용한다.

캐나다는 네 가지 형태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과 EU는 각각 선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형태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과 EU의 비종가세 부과 품목의 비율은 각각 57.2%와 58.8%로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종량세 부과 품목이 EU에 비해 높은 반면 EU는 복합세 부과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EU는 계절관세, 상·하한 관세 등 복잡한 형태의 관세를 가지고 있다. 호주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량세 부과 품목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일본은 네 가지 관세 부과 형태를 모두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EU에 비해 종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79.8%).

2.1.2. 양허관세 분포

각국의 관세율을 비교함에 있어서 평균 관세율의 의미는 크다. 평균 관세율은 그 나라의 관세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양허관세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실행관세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의 평균 양허세율은 63.8%로 평균 양허관세율이 가장 낮은 호주에 비해서는 60% 포인트나 높다.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다음으로 높은 양허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이다. 멕시코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2.8%이다. 중국과 태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각각 37.9%, 35.4%로 나타났다. 반면 칠레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8.9%로 선진국들보다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일본의 양허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평균 양허세율은 41.3%에 달한다. 캐나다와 EU의 평균 양허세율도 20%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호주의 평균세율이 4.0%로 가장 낮다. 미국의 평균 양허세율은 11.1%이다.

가장 높은 양허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쌀은 종량세 형태로 양허되었으며, 이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1,416% 수준이 된다. 물론 이러한 종가세는 수입가격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가격으로 변화된 종가세는 평가하는 시점과 수입품의 품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종량세가 종가세보다 투명성이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쌀 다음으로 높은 관세를 나타낸 것은 한국의 매니옥으로 887.4%이다. 한국은 매니옥 이외에도 인삼, 전분 등에 대해서 800% 이상의 양허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와 EU도 460%가 넘는 양허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으며, 미국은 담배에 대하여 3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와 칠레의 최고 양허관세는 30%이다. 양허세율 중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세율(표 3-6의 최빈값)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0% 세율이 가장 많다. 한국은 27%의 세율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6%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표 6.2 국별 양허관세 비교

	품목수(개)	평균(%)	최빈값(%)	최고세율(%)
한국	1,307	63.8	27	887.4
태국	737	35.4	30	226.0
멕시코	950	42.8	36	254.0
중국	863	37.9	40	135.0
칠레	766	8.9	6	31.5
미국	1,720	11.1	0	350.0
캐나다	1,303	21.3	0	465.8
EU	1,762	22.1	0	462.7
호주	794	4.0	1	31.3
일본	1,304	41.3	0	1,416.6

주: 국가별로 실행세율의 품목 수가 양허세율의 품목 수보다 많은 이유는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높은 HS 분류를 기준으로 양허된 점과 실행세율에 1604, 1605류(수산조제품)가 포함된 점등임.

관계로 6%의 양허관세를 나타내는 품목 수가 가장 많았다. 태국, 멕시코, 중국 등 기타 개발도상국들은 양허관세의 최빈값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30~40%에 달했다.

2.1.3. 관세율 단계별 분포

관세율의 단계는 매우 낮은 세율부터 수입을 차단할 정도로 높은 세율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기본세율은 매우 낮은 세율로 5% 이하를 들 수 있고 매우 높은 수준으로는 40~50%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양허관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UR 협상을 통해 관세화로 전환된 많은 품목들이 수백%에 이르는 관세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양허관세율 단계를 편의상 10% 미만을 매우 낮은 관세로 구분하였으며, 관세율이 세 자릿수 이상 즉, 100% 이상 되는 것을 매우 높은 단계로 구분하였다. 매우 낮은 관세와 매우 높은 관세 사이에 속하는 관세율은 다시 세 단계로 구분하여 모두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한국의 양허관세는 세율 단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은 품목이 분포한 관세율 단계는 20~50%의 관세로 전체 품목 가운데 1/3 이상에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많은 품목이 분포하고 있는 세율 단계는 10~20%로 전체 품목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 10% 미만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16.7%에 불과하다. 매우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농산물의 비중은 칠레를 제외한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전체의 9.1%로 일본과 함께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표 6.3 양허관세율의 분포

단위: 개, %

	0~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합계
한국	221 (16.9)	349 (26.7)	445 (34.0)	173 (13.2)	119 (9.1)	1,307 (100.0)
태국	50 (6.8)	16 (2.2)	584 (79.2)	72 (9.8)	15 (2.0)	737 (100.0)
멕시코	61 (6.4)	7 (0.7)	811 (85.4)	17 (1.8)	54 (5.7)	950 (100.0)
중국	49 (5.7)	118 (13.7)	623 (72.2)	36 (4.2)	37 (4.3)	863 (100.0)
칠레	680 (88.8)	0 (0)	86 (11.2)	0 (0)	0 (0)	766 (100.0)
미국	1,213 (70.5)	300 (17.4)	146 (8.5)	35 (2.0)	26 (1.5)	1,720 (100.0)
캐나다	1,049 (80.5)	114 (8.7)	30 (2.3)	17 (1.3)	93 (7.1)	1,303 (100.0)
EU	822 (46.7)	424 (24.1)	323 (18.3)	134 (7.6)	59 (3.3)	1,762 (100.0)
호주	689 (86.8)	87 (11.0)	18 (2.3)	0 (0.0)	0 (0.0)	794 (100.0)
일본	649 (49.8)	245 (18.8)	242 (18.6)	55 (4.2)	113 (8.7)	1,304 (100.0)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칠레는 90%에 달하는 농산물에 10% 미만의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가장 낮은 양허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태국, 멕시코, 중국 등 기타 개발도상국들은 70% 이상의 농산물에 대하여 20~50%의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3개국은 100% 이상의 고율관세나 10% 미만의 저율관세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선진국들 가운데 호주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이 많은 국가이다. 호주는 86.8%에 달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10% 미만의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50% 이상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0% 미만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이 70.5%이다. 100% 이상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26개로 전체의 1.5%이다. 캐나다에도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 많으나, 100% 이상의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중이 미국이나 EU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의 경우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93개로 전체의 7.1%에 달한다. EU와 일본의 양허관세율 단계별 품목분포는 서로 유사하다. 10% 미만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은 50%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고율관세 품목은 EU가 59개, 일본이 113개이다.

2.1.4. 품목군별 분포

앞에서 논의한 실행관세의 경우와 같이 양허관세도 품목군별로 나누어 평균 양허관세율을 구하고, 그 분포를 국가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은 곡물류에 대하여 높은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11류(곡분·전분)의 평균 양허세율이 314.8%로 가장 높고, 10류(곡물)의 평균세율도 218.0%로 높은 수준이다. 평균 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군은 7류(채소류), 12류(유지작물, 인삼), 13류(식물성 액즙) 등이다. 35류의 동물성 단백질과 변성전분의 양허관세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 밖에 낙농제품(4류), 과일과 견과류(8류), 차류(9류) 등의 양허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평균 양허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군은 곡물, 전분, 낙농품, 견(비단) 등 네 개다. 곡물의 평균 관세율이 166.3%로 가장 높다. 낙농품의 평균

양허세율은 153.5%로 일본 내에서도 다른 품목들에 비해 높았으며, 분석 대상국가들의 낙농품에 대한 관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사 및 비단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 밖에 양허관세율 평균이 100% 이상은 아니지만, 50%으로 비교적 높은 품목들은 16류(수산가공품)부터 21류(조제식품)에 속하는 가공식품이다. 실행 관세에서 나타났듯이 일본의 농산물에 대한 누진관세 체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실행관세율과 마찬가지로 24류(담배류)의 평균세율이 52.2%로 높게 나타나고, 4류(낙농품)를 비롯하여 17류(당류) 등이 미국의 평균 양허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U에서 가장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군은 낙농품으로 평균 74.2%에 달한다. 이것은 EU의 양허관세율 평균 22%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그밖에 EU가 보호하는 중요한 품목으로는 육류, 곡물 및 전분, 담배, 가공식품 등이다. 캐나다에서 양허관세율이 높은 품목군은 낙농품, 수산가공품, 육류, 조제식품,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전분 등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낙농품의 관세율은 114.2%로 수입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육류와 수산가공품의 관세도 50%에 가까워 평균관세율 21.3%의 2.5배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품목군별로 관세율이 매우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관세율 37.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22류(음료·알콜), 24류(담배류) 정도에 불과하다. 10류(곡물)의 평균세율은 74.2%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품목들은 평균 관세율이 40% 전후에 분포하고 있다. 멕시코는 당류와 코코아 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류의 평균 관세율은 123%에 달한다. 그 밖에 육류와 낙농품에 대한 관세가 높은 편이다. 태국은 담배와 비단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며, 다른 품목들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평균관세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표 6.4 유별 각 국의 평균 양허관세율

단위: %

	태국	멕시코	중국	칠레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한국
1류	13.8	29.0	19.9	6.0	1.1	26.6	15.5	0.4	13.1	19.7
2류	34.7	82.1	37.5	6.0	4.7	47.2	34.1	0.1	24.2	23.0
4류	32.8	56.4	40.9	23.4	25.6	114.2	74.2	5.2	153.5	67.9
5류	29.7	27.9	30.3	6.0	0.6	1.5	0.2	1.9	0.3	14.9
6류	33.4	28.4	27.2	6.0	2.2	4.2	5.2	0.8	0.7	21.9
7류	46.9	40.3	34.8	6.0	5.9	3.5	13.5	4.0	38.5	125.4
8류	39.2	37.8	37.5	6.0	4.3	1.8	13.6	2.4	9.1	85.4
9류	47.6	36.0	37.3	6.0	0.9	1.2	2.4	0.1	3.5	76.9
10류	38.3	54.7	74.2	7.6	2.1	10.1	43.5	0.8	166.3	218.0
11류	30.7	46.2	50.7	6.8	2.8	26.0	28.2	2.8	146.5	314.8
12류	35.3	24.3	25.3	13.4	6.4	1.4	2.5	1.6	40.8	121.2
13류	23.9	27.2	24.6	6.0	0.8	0.0	2.2	2.2	3.4	110.6
14류	27.7	30.4	33.7	6.0	0.9	0.0	0.0	0.7	1.9	8.4
15류	38.2	46.3	42.8	17.8	4.7	8.8	12.4	4.1	5.3	25.5
16류	35.2	45.0	40.0	6.0	2.8	49.5	23.7	10.2	49.3	54.6
17류	44.1	123.0	49.2	12.0	20.5	7.4	31.0	7.9	69.6	31.0
18류	31.1	64.1	19.5	6.0	12.8	34.5	17.3	7.9	15.8	21.5
19류	29.9	39.4	39.3	6.0	16.4	19.1	19.5	6.2	85.5	33.7
20류	32.3	39.0	40.0	6.0	8.8	6.1	26.1	8.3	16.6	43.6
21류	35.2	57.5	47.6	6.0	13.1	34.4	11.6	4.3	48.2	64.7
22류	56.9	41.5	98.3	6.0	4.8	11.4	14.4	9.5	27.2	32.9
23류	15.3	37.5	18.1	15.7	6.3	12.0	14.7	0.6	3.9	19.1
24류	64.0	51.8	91.8	6.0	52.2	5.9	28.6	12.8	6.8	59.1
29류	27.0	37.0	22.5	6.0	4.8	8.0	27.1	17.0	17.0	22.5
33류	30.0	29.1	40.0	6.0	1.4	1.8	3.2	5.9	1.8	13.2
35류	30.0	26.5	26.6	6.0	3.7	48.6	9.7	6.0	11.5	201.2
38류	28.5	33.5	25.8	6.0	4.0	4.3	14.4	9.0	11.8	15.5
41류	25.0	11.2	15.3	6.0	0.0	0.0	0.0	0.0	0.0	5.2
43류	25.7	20.0	39.6	6.0	0.0	0.0	0.0	1.0	1.5	14.5
50류	63.3	20.0	40.0	6.0	0.6	0.0	0.0	0.5	106.9	25.7
51류	21.0	28.8	34.6	6.0	2.3	0.0	0.0	1.0	0.0	2.0
52류	4.5	40.2	41.2	6.0	5.6	0.0	0.0	1.2	0.0	2.0
53류	27.0	30.5	18.0	6.0	0.7	0.0	0.0	1.0	0.0	2.0
평균	35.4	42.8	37.9	8.9	11.1	21.3	22.1	4.0	41.3	63.8

2.2.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도 비교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HS 코드는 10단위까지 가능하나 국제적으로 공통된 것은 6단위까지이다. 따라서 6단위 이하에서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품목의 분류가 매우 복잡한 국가가 있고 단순화된 국가도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품목분류가 1,300여 개고, 미국과 EU는 1,700여 개이다. 태국, 멕시코, 중국, 호주, 칠레 등의 농산물 품목분류 수는 1,000개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품목분류 수의 차이는 HS 6단위 이하에서 얼마나 품목을 세분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품목분류는 관세 부과 목적 이외에 통계적 목적과도 관련된다. 품목분류가 세분화되면 관세행정적 측면에서는 불편이 따를 수 있겠으나,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장점이 많다. 예를 들면, 포도주(HS 2204번)에 속하는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8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EU는 실질적으로 9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양허된 품목분류는 20여 개에 불과하나, 실행세율 품목분류는 통계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보다 더 세분화 한 것임). 품질과 가격이 크게 다른 여러 종류의 포도주가 수입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번(稅番)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물론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왜곡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차별화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리하다.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료를 가공 또는 혼합하는 방법으로 수입함(예: 쥘판)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품목분류가 단순한 것 못지 않게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단순한 관세율 적용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포도주에 대하여 30%의 동일한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채소류와 식물성유의 양허관세에 있어서 비교적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요 품목군별 HS 분류를 보면, 채소류(7류)가 108개로 가장 많다. 채소류의 품목분류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분화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식물성유(15류) 107개,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92개 등이다. 우리나라는 낙농품의 HS 코드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 일본은 20류가 195개로 구분되어 가장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채소와 과실의 조제품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HS 분류는 축산물, 채소, 과실, 곡물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제로 되어 있다.

EU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세분화된 HS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축산물과 채소·과실 조제품이다. 육류의 경우 EU는 219개 코드로 되어 있어 미국(93개)이나 우리나라(68개)보다 2~3배 더 세분화되어 있다. 낙농품은 미국이 EU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다. 미국은 낙농품에 있어서 251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EU의 128개보다 두 배, 우리나라의 42개보다는 여섯 배나 더 세분화되어 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품목도 많다. 이러한 품목들은 곡물류를 비롯하여 초목류(6류), 기타 공업용 원료로 이용되는 농산물(주로 29류 이하에 속하는 농산물) 등이다.

품목분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농산물을 중심으로 실험품목 단위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품목은 앞에서 분석한 품목군별 분류 가운데 특별히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을 위주로 하였다. 따라서 육류, 유제품, 과실, 채소, 유지작물, 코코아 제품, 주류 등을 위주로 하였다. 분석 대상 25개 품목의 HS 코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546개 코드이다. 다음은 EU로 417개 코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세분화가 잘 된 나라는 일본(267개) 캐나다(239개), 태국(161개), 한국(158개) 등의 순서이다. 한국은 세분화 정도에 있어서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쇠고기는 미국이 가장 세분화된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쇠고기 세번은 42개로 우리나라의 6개에 비해 7배나 많다. 우리나라의 가금육에 대한 HS 코드는 33개로 EU 다음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표 6.5 품목군별 각 국의 품목분류 현황

	태국	멕시코	중국	칠레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한국
1류	24	32	28	19	23	27	33	15	22	45
2류	53	59	57	53	93	100	219	50	84	68
4류	34	48	34	44	251	85	128	27	76	42
5류	18	20	37	19	18	19	21	15	16	50
6류	14	29	16	12	28	36	28	13	13	66
7류	59	63	72	64	155	139	108	77	80	108
8류	52	62	61	65	116	87	123	53	87	68
9류	33	33	39	32	47	50	54	37	70	36
10류	17	22	16	16	21	25	20	16	26	26
11류	34	37	34	34	38	66	66	34	52	41
12류	54	83	78	52	58	53	74	61	52	85
13류	13	36	21	13	15	12	18	13	17	24
14류	11	13	12	11	14	11	12	11	15	23
15류	70	76	53	52	61	68	125	55	72	107
16류	11	15	14	13	28	55	39	19	33	21
17류	21	24	17	17	57	40	36	23	43	31
18류	11	11	11	12	78	17	15	11	18	19
19류	19	20	18	17	68	82	39	20	84	42
20류	47	49	71	49	170	89	267	58	195	92
21류	17	27	17	22	86	36	40	23	77	62
22류	26	43	23	27	70	78	74	50	47	51
23류	23	35	28	29	35	35	63	23	35	41
24류	9	10	11	9	56	15	13	21	11	25
29류	1	1	2	3	2	1	6	1	1	1
33류	14	27	19	16	20	16	40	16	19	20
35류	4	4	10	13	16	14	24	4	5	11
38류	2	2	8	7	10	2	15	2	2	2
41류	12	13	14	12	12	11	16	12	12	40
43류	9	12	10	9	3	9	13	9	13	13
50류	4	4	6	4	4	4	4	4	5	16
51류	10	22	15	10	39	10	16	10	10	13
52류	5	10	5	5	22	5	6	5	5	9
53류	6	8	6	6	6	6	7	6	7	9
합계	737	950	863	766	1,720	1,303	1,762	794	1,304	1,307

표 6.6 국별 HS 분류의 세분화 정도

	태국	멕시코	칠레	중국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한국
쇠고기 (0201, 0202)	6	6	6	6	42	12	14	6	13	6
돼지고기(0203)	6	6	6	8	14	6	22	6	24	6
가금육(0207)	13	24	13	21	19	38	42	13	22	33
밀크,크림(0402)	13	11	25	5	30	14	28	5	38	10
버터밀크(0403)	3	2	2	2	25	6	30	2	25	3
치즈,커드(0406)	5	12	5	5	156	34	50	7	10	6
절화(0603)	3	3	2	2	16	11	7	2	5	10
감자(0701)	2	2	2	2	7	2	4	2	2	2
토마토(0702)	1	2	1	1	11	4	1	1	1	1
양파,마늘 (0703)	4	5	4	5	7	13	5	3	6	5
채두류(0708)	3	3	3	3	10	9	3	3	3	3
감귤류(0805)	10	5	6	7	10	5	13	5	9	6
포도(0806)	2	2	2	2	8	5	8	2	3	2
사과, 배 (0808)	2	3	3	5	4	6	7	2	2	3
커피(0901)	5	6	5	6	9	5	6	5	6	6
차류(0902)	4	4	4	10	7	6	4	4	8	4
밀, 메슬린 (1001)	2	2	2	4	25	4	4	2	8	6
보리(1003)	1	3	3	2	3	4	2	1	4	4
옥수수(1005)	2	4	2	2	5	2	6	2	9	4
쌀(1006)	48	4	4	5	13	4	34	4	8	6
전분,이눌린 (1108)	7	7	6	6	10	9	7	6	19	7
대두(1201)	2	3	1	5	3	1	2	1	1	2
낙화생(1202)	4	3	2	3	12	2	3	2	6	2
초콜릿 함유 식품(1806)	8	5	5	5	77	11	21	5	25	13
포도주(2204)	5	8	7	4	23	26	94	18	10	8
합 계	161	135	121	126	546	239	417	109	267	158

주: 1) 국별 실행세율 기준임. 단 중국과 EU는 양허세율이 기준임.

2) 멕시코의 초콜릿·코코아 함유식품의 경우, 2000년 실행관세 해당 품목이 없기 때문에 양허관세로 분류된 품목 수를 기록함.

치즈와 커드의 경우 미국은 15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 EU의 50개에 비해 3배나 많다. 우리나라는 이 품목에 대하여 불과 6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밀크, 크림, 버터 등 다른 유제품의 경우도 치즈와 유사하다. 밀은 미국에서 25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가장 세분화 정도가 높았다. 다른 나라들은 밀을 2~8 품목으로 분류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쌀(HS 코드 1006)의 경우, 태국이 48개 품목으로 가장 세분화되어 있다. 쌀은 EU도 34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은 6개 품목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특히 축산물에 대한 HS 코드를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밀크와 크림류, 버터 밀크, 치즈와 커드류 등의 품목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포도주, 코코아 조제품, 초콜릿 등 조제식품에 있어서도 품목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포도주를 94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포도주 관련 HS 코드는 8개이다. 미국은 쇠고기 42개, 치즈와 커드 156개, 밀과 메슬린 25개, 초콜릿 함유 식품 77개로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U는 가금육(42개), 치즈와 커드(50개), 감귤류(13개), 쌀(34개) 등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세분화된 품목분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밀크와 크림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38개로 가장 많고, 중국은 차류의 품목 수가 10개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았다.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누진관세체계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산업의 중요도에 따라 심한 누진관세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누진관세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세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누진관세체계의 개편은 완제품의 관세율 인상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마찰과 국제적인 관세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중간투입물의 관세 인하를 통한 누진관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단계의 확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단계별, 가공단계별 세율의 다단계화를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통해서도 누진관세체계를 통한 산업보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농업 특성에 부합하는

관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단순한 관세체계는 산업 간 또는 산업 내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품목분류를 세분화하고 과세 단계를 확대하여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세단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번분류(HS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세번 내에서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을 가공도와 혼합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관세구조의 특징

우리나라는 중심 관세율을 8%로 하는 산업간 균등관세율 체제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식량안보, 지역 균형발전, 도·농간 소득격차, 농업의 경제외적 요인 등이 고려되어 이러한 균등 관세율 정책의 예외적 분야로 인정되어 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 또한 농업보호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부문은 공산품 분야에 비해 높은 관세율과 복잡한 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관세화(Tariffication)에 의한 고율의 관세상당치의 도입 등으로 한층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관세상당치의 도입은 각국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높게는 1,000% 이상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품목 간 관세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 속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료 농산물과 가공식품간에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다. 따라서 농업 부문 관세체계의 복잡성과 경제 왜곡적 성격은 UR 협상을 통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WTO/DDA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들

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농산물 관세 체계와 관련하여 고율관세, 관세격차, 누진관세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율관세 문제는 UR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측면이 있다. 관세상당치를 적용한 관세는 선진국과 수출국에 있어서도 수백%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상당치의 도입은 관세격차도 심화시켰다. 누진관세는 가공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관세율을 높게 하는 것으로 시장보호 효과가 크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 체제하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출국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농산물 분야의 관세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의 현황을 양허관세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1. 관세격차

관세격차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품목 또는 품목군 사이에 관세율의 차이로 나타난다. 동일한 품목군 내에서도 품목의 분류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현저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농산물일수록 그 분류가 세분화되고, 세부 품목간의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 간 관세율 차이는 최저·최고세율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목에 대한 적용 세율에 있어서도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 간 관세격차 문제가 WTO/DDA 농업협상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3.1.1 관세율 평균의 격차

국별 농산물 평균 양허관세율의 격차는 <표 6.7>과 같다. 우리나라와 호주 사이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 60% 포인트에 달한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도 관세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칠레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관세율은 38%로 선진국 평균 관세율 20%에 비해 상당히 높다. 최고 세율의 격차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칠레와 호주의 최고 세율은 31%이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각각 1,416%와 887%로 국가 간 최고 세율의 격차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표 6.7 국별 양허관세율 격차

단위: %

	평균(A)	최고세율(B)	B - A
한국	63.8	887.4	823.6
태국	35.4	226.0	190.6
멕시코	42.8	254.0	211.2
중국	37.9	135.0	97.1
칠레	8.9	31.5	22.6
미국	11.1	350.0	338.9
캐나다	21.3	465.8	444.5
EU	22.1	462.7	440.6
호주	4.0	31.3	27.3
일본	41.3	1,416.6	1,375.3

주: 위의 10개국 모두 최저 관세율은 0%임.

평균 관세율은 개발도상국들이 높으나, 최고 관세율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다. 이것은 선진국들의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은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 관세율과 최고 관세율의 차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관세율과 최고 관세율의 차이는 일본이 1375.3% 포인트로 가장 심하다.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 국가는 칠레로 최고세율과 평균관세율 차이가 22.6% 포인트이다. 한국은 평균 관세율과 최고 관세율의 차이가 823.6% 포인트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3.1.2. 품목군별 관세격차

품목군별 관세격차는 한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 농산물로 분류된 공업용 섬유류의 관세율이 평균 2%에 불과하나, 곡분과 전분 등 곡물조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315%로 두 품목군 사이의 관세격차는 300% 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공업용 섬유류의 관세율이 0%로 가장 낮다. 그러나

표 6.8 국가별·유별 평균 양허관세율 격차

단위: %

	최저세율	최고세율	관세격차
한국	2(51,52,53류)	314.8(11류)	312.8
태국	4.5(52류)	64(24류)	59.5
멕시코	11.2(41류)	123(17류)	111.8
중국	15.3(41류)	91.8(24류)	76.5
칠레	6*	23.4(4류)	17.4
미국	0(41,43류)	52.2(24류)	52.2
캐나다	0(13,14,41,43,50,51,52,53류)	114.2(4류)	114.2
EU	0(14,41,43,50,51,52,53류)	74.2(4류)	74.2
호주	0(41류)	17(29류)	17.0
일본	0(41,51,52,53류)	153.5(4류)	153.5

* 칠레의 경우, 6%의 최저세율에 해당되는 유(類)는 <표 6.5>를 참조.

일본의 평균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낙농품으로 153%에 달한다. 따라서 일본의 품목군간 관세격차는 154% 포인트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품목군간 관세격차가 낮은 국가는 호주와 칠레로 17% 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유별 평균이 낮은 품목류들은 주로 공업용 원료 농산물(41~53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고세율을 나타내는 품목군은 낙농품(4류)과 담배(24류)인 경우가 많다.

3.1.3.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

새로운 상품의 출현은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쇠고기라도 품질을 차별화한 여러 가지 상품이 존재한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에 먹이는 사료에서부터 사육방식을 달리하고 가공, 유통 단계를 차별화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고 있다.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이 출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한 상품분류를 HS 코드에 삽입하고 관세율을 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지 않더라도 국제 무역에 사용되는 HS 코드를 보면 한 가지 농산물이 얼마나 세분화된 다른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쇠고기는 냉장과 냉동으로 구분되고 절단된 형태에 따라서 다시 HS 코드가 바뀐다. 물론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나라가 많다. 이렇듯이 하나의 품목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세분화된 HS 코드가 있고 관세율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쇠고기(HS 코드 0202)로 분류되는 쇠고기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EU는 같은 쇠고기라도 HS 코드 번호에 따라 최저 43%에서 최고 150%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한다. 같은 국가, 같은 품목군에 속하는 농산물에 관세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품목 분류에 의해 관세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농산물로는 전분과 이눌린이다. 전분과 이눌린은 품목군 내에서 관세격차가 749.4%나 난다. 옥수수의 경우에도 세부 품목간 관세격차는 302%나 된다. 그러나 한국의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는 일부 품목(<표 6.9>에 나타난 것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6~7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격차가 크지 않다.

일본의 경우 쌀로 분류되었으나 HS 코드가 다른 각종 쌀에 대한 최저관세는 589.9%이고, 최고관세는 1416.6%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땅콩에 대한 관세도 0%에서 577%까지 HS 코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 밖에 품목군 내에서 큰 관세격차를 보이는 경우는 낙농품, 전분과 이눌린 등이다. 일본도 품목군 내에서 큰 관세격차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품목군 내에서 관세격차를 크게 유지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EU이다. EU는 육류, 낙농품, 곡물류, 가공식품, 주류 등 대부분의 품목들이 품목군 내에서 큰 관세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요구르트·버터밀크 품목군 내에서 관세율이 3.2%인 품목이 있는가 하면 352.5%의 품목도 있다.

미국에서는 포도주에 대한 관세격차가 327.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낙농품의 관세격차가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크다. 낙화생, 초콜릿, 쇠고기, 감귤류 등의 관세격차도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는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가 미국과 유사한 품목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밀과 가금육에 있어서도 발견된다.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품목군내 관세격차를 보이는

품목도 많고 격차도 크다. 호주는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가 거의 없다.

중국은 커피, 옥수수, 쌀, 포도주를 제외하고는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는 크지 않다. 커피의 관세격차가 82%로 가장 큰 품목이다. 태국의 경우에는 밀크와 크림, 양파·마늘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멕시코는 감자, 보리, 옥수수 등 곡물류와 낙농품에 있어서 품목군 내에서 관세격차가 심하다. 칠레의 경우 밀크와 크림, 밀·메슬린에 대해서만 관세격차가 존재한다. 품목군 내에서 관세격차가 가장 크게 존재하는 나라는 EU이며, 관세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는 호주와 칠레이다.

먼저 쇠고기의 경우 국별 관세율은 호주의 0%에서 EU의 150%까지 매우 다양하다. 쇠고기에 대한 국가별 관세격차는 150% 포인트이다. 한국, 태국, 멕시코, 칠레, 일본 등 대부분의 쇠고기 수입국가들은 쇠고기로 분류된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U, 미국, 캐나다 등 쇠고기 수출국들은 쇠고기의 HS 코드별로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EU는 쇠고기에 대하여 43%에서 150%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품목군 내에서의 다양한 관세격차는 낙농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치즈·커드의 경우에 한국, 태국, 칠레, 중국 등은 관세격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이 최저 0%에서 최고 85.7%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EU가 7.7%에서 276.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요구르트와 버터밀크의 경우에도 호주의 관세율은 1%이나 EU의 관세율은 352.5%이다. EU는 버터밀크로 분류된 같은 품목군 내에서 관세율을 3.2%에서 352.5%까지 다양하게 부과한다. 관세격차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품목은 과일류와 화훼류 등이다.

따라서 같은 품목이라도 부위별, 상태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보호하고자 하는 농산물 또는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격차가 현저한 농산물은 낙농품, 곡물, 가공식품 등이다.

표 6.9 주요 품목별 관세격차 현황

단위: %

	한국		태국		멕시코		칠레		중국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쇠고기	40	40	30	30	45	45	6	6	32.5	40	0.5	26.4	0	26.5	43	150	0	0	50	50
돼지고기	22.5	25	30	40	45	45	6	6	40	40	6	0.6	0	0	0	49	0	0	0	89.1
가금육	18	27	30	40	37.5	234	6	6	30	40	0	27.9	0	249	0	64.1	0	0	3	11.7
밀크와 크림	36	176	5	216	37.5	125.1	6	31.5	27	76	0.4	94.2	0.9	295.7	1.7	220.3	0	1	21.3	411.3
요구르트, 버터밀크	36	89	18	30	37.5	37.5	6	6	40	40	0.05	295.9	1.2	237.5	3.2	352.5	1	1	21.3	432.3
치즈, 커드	36	36	30	30	37.5	125.1	31.5	31.5	40	40	0	85.7	0.3	245.6	7.7	276.8	0	31.3	22.4	40
절화	36	36	30	54	36	36	6	6	40	40	3.2	6.8	0	16	8.5	12	0	0	0	0
감자	304	304	125	125	9	245	6	6	40	40	2.0	2.4	1.1	1.6	4.5	13.5	5	5	3	4.3
토마토	45		40		36		6		25		2.6	4.3	0	5.9	47.8	53.4	1		3	
양파, 마늘	27	360	40	142	36	36	6	6	40	40	0.4	20	0	8.1	9.6	10.4	1	1	3	8.5
채두류	27	27	40	40	36	36	6	6	40	40	0	6.2	0	3.0	8	13.6	1	1	3	3
감귤류	30	144	30	40	36	36	6	6	40	52	0.8	27.2	0	0	1.5	46.9	1	1	0	32
포도	21	45	30	30	27	45	6	6	36	40	0	2.7	0	6.4	2.4	25.2	10	10	1.2	17
사과, 배	45	45	30	30	45	45	6	6	20	40	0	0.3	0	8.5	7.2	51.5	1	1	4.8	17
커피	29.5	54	90	90	36	72	6	6	18	100	0	0.3	0	0.7	0	11.5	0	1	0	12
차류	60.7	513.6	90	90	25	25	6	6	40	40	0	6.4	0	0	0	3.2	0	1	0	17
밀, 메슬린	1.8	9	27	27	67	67	6	31.4	114	114	2.8	44	0.5	76.5	12.8	101.9	0	0	241.2	269.4
보리	299.7	513	27		9	115.2	6	6	91.2		0.7	1.2	0	94.7	82.7		0		254.1	
옥수수	328	630	73	73	37	194	6	6	40	114	0	1.3	0.1	0.8	0	70.1	1	1	0	50
쌀	-	-	52	52	9	45	6	6	40	114	1.0	11.2	0	0.9	7.7	127.8	1	1	589.9	1416.6
전분, 이눌린	50.9	800.3	30	30	36	45	6	6	36	36	0	2.6	1.3	40.5	4.4	51.4	1	8	47.4	517.3
대두	487		80	80	9	45	31.5		114		0		0		0	0	1		0	
낙화생	230.5	230.5	30	30	9	45	31.5	31.5	40	40	8.4	163.8	0	0	0	0	5	5	0	577.3
초콜릿 합유식품	19.7	26.2	20	40	45	156	6	6	15	15	0	110.4	0	265.2	15.4	68.9	17	17	10	29.8
포도주	30	30	54	60	36	45	6	6	60	135	0.7	328	0.9	73.1	0.6	271.6	6	15	13.1	32.3

주: 1) 국별 양허세율 기준.

2) 위 표에서 하나의 세율로 표시된 것은 양허된 품목이 1개임.

3.2. 고율관세

고율관세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UR 농업협상으로 관세상당치에 해당하는 관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는 평균 관세율보다 크게 높은(예; 3배 또는 4배 등) 관세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수입을 차단할 정도로 높은 관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UR 협상에 의해 관세상당치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가 설정된 이후에는 국가별, 품목별로 수입금지적 관세에 해당하는 고율관세 품목이 많이 생겼다. 여기서는 분석대상국 10개국의 평균 관세율을 고려하여 100%가 넘는 관세를 ‘고율관세’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평균 관세율이 50%가 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100%를 고율관세로 보는 것은 평균과의 격차가 2배 이상 되는 관세라는 의미이다.

표 6.10 국별 고율관세 분포

	품목수	관세율(%)	주요 고율관세 품목류
한국	119	100.5~887.4	밀크·크림류, 감자, 양파·마늘류, 채소류, 두류, 전분류(p), 차류, 후추, 보리, 옥수수, 곡물의 분쇄물, 인삼류, 텍스트린
태국	15	125~226	감자, 대두유, 팜유, 야자유, 생사(p)
멕시코	54	109~254	가금육의 식용설육, 돼지비계, 밀크·크림류, 치즈, 감자, 보리, 맥아, 돈지류(p), 유지류(p), 자당류, 기타조제식료품류
중국	37	100~135	커피, 밀과 메슬린, 쌀, 기타가공곡물, 대두유, 유채유, 포도주·즙(p), 증류주(p), 담배류(p)
칠레	0	-	-
미국	26	109~350	밀크·크림류, 곡분, 당류, 조제견과류, 담배류(p)
캐나다	93	133.5~466	가금류, 식용설육, 밀크·크림류, 유장, 버터류, 치즈, 곡분(p), 맥아, 조제설육, 맥아엑스, 기타조제식료품류, 알부민
EU	59	101.3~462.7	쇠고기, 면양, 식용설육, 밀크·크림류, 유장(p), 버터류, 쌀, 올리브유, 버섯류, 과일·채소즙스류, 포도주·즙
호주	0	-	-
일본	113	101~1,416.1	밀크·크림류, 유장, 두류, 쌀(p), 곡분, 기타가공곡물, 전분과 이눌린, 조제설육, 자당류, 맥아엑스, 기타조제식료품

주: 1) 분석대상은 양허관세율임.

2) p는 최고세율을 나타냄.

한국은 10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119개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다(표 6.10). 119개 고율관세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100.5%에서 887.4%까지 격차가 크다. 주요 고율관세 품목은 낙농품, 곡물류, 두류, 채소류, 인삼 등이다. 한국 다음으로 고율관세 품목이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113개 품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주로 곡물류와 낙농품, 당류, 조제식료품 등의 농산물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는 곡물과 축산물의 수출국이지만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고율관세 품목이 많다. 캐나다의 고율관세 품목은 93개로 호주나 미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캐나다의 고율관세 품목은 축산물과 곡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고율관세 품목은 26개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미국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낙농품, 당류, 담배 등이다. EU의 고율관세 품목 수는 59개이며, 주로 축산물과 채소에 부과된다.

3.3. 누진관세

누진관세란 원료의 관세를 낮게 하고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료나 가공도가 낮은 상품을 해외에서 싸게 구입하여 생산비를 낮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완제품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완제품 시장의 발전은 원료의 수요를 증가시켜 원료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누진관세 체계는 완제품 산업의 실효보호율¹⁶을 높여 산업보호 효과를 크게 하는 제도이다. 그만큼 관세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여 가공도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완제품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자신들을 값싼 원료의 공급 기지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하

16) 실효보호율이란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관세율까지 고려한 보호율의 개념으로 원료의 관세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원료의 관세율이 낮으면 수입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여 생산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산업의 경쟁력은 커지게 된다. 반면 명목보호율은 양허관세율이나 실행관세율 등의 형태로 표시된 관세율 자체를 의미한다.

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역관세는 완제품 산업이 관세정책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원료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을 경우 생산자는 원료비 상승으로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된다. 더욱이 수입되는 완제품에 부과되는 낮은 관세는 완제품 시장의 경쟁을 격화시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게 된다.

3.3.1. 품목군별 누진성

관세의 누진성을 국가별로 판단하기 위해 품목군별로 평균 관세율 차이를 계산한 것이 <표 6.11>이다. 한국은 채소류와 채소조제품, 과일류와 과일조제품, 곡물류와 곡물조제품 사이에 역관세가 존재하지만, 육류와 육류조제품 사이에는 누진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원료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농산물 가공품은 역관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역관세는 태국, 멕시코, 칠레 등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세의 역누진성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고, 다음이 멕시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누진관세 체제를 가지고 있다.

표 6.11 품목류별 누진관세 현황

단위: %

	16류 - 2류	20류 - 7류	20류 - 8류	19류 - 10류
한국	31.6	-81.8	-41.8	-184.3
태국	0.5	-14.6	-6.9	-8.4
멕시코	-37.1	-1.3	1.2	-15.3
칠레	0.0	0.0	0.0	-1.6
중국	2.5	5.2	2.5	-34.9
미국	-1.9	2.9	4.5	14.3
캐나다	2.3	2.6	4.3	9.0
EU	-10.4	12.6	12.5	-24.0
호주	10.1	4.3	5.9	5.4
일본	25.1	-21.9	7.5	-80.8

주: 2류(육류), 16류(육류 조제품), 7류(채소류), 8류(과실류), 20류(채소 및 과실류의 조제품), 10류(곡물류), 19류(곡물 · 곡분의 조제품).

관세의 누진성은 선진국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는 분석대상 품목 전체에서 관세의 누진성이 발견되었다. 일본은 쌀을 비롯한 곡물류에 대한 국경보호 조치가 높은 나라로 곡물 가공품은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육류와 육류조제품 사이에 역관세가 존재한다. EU는 채소류와 채소조제품, 과일과 과일조제품 사이에 누진관세가 존재한다.

주로 육류와 육가공품, 과일류와 과일 조제품 사이에 누진관세를 나타내는 국가가 많은 반면에, 곡물류와 곡물 조제품은 역관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곡물과 곡물 조제품에 대해 모두 역관세가 나타나며, 많은 국가들의 곡물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 경향이 뚜렷하다. 개발도상국들은 채소류와 채소조제품 사이에 역관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선진국들은 누진관세를 나타낸다. 곡물 가공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대부분 누진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3.3.2. 주요 품목별 누진성

한국에서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와 이를 가공 처리한 조제품의 경우에는 누진관세가 존재한다(표 6.12). 그러나 곡물, 채소, 과일과 그 조제품 사이에는 역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과 옥수수 가공품 사이에는 역관세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토마토와 토마토 조제품 그리고 포도와 포도주 사이에도 역관세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사과와 사과주스는 동일한 관세가 부과되어 역관세나 누진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태국의 경우 역관세가 많이 발견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토마토와 이들의 가공품 사이에 모두 역관세가 존재한다. 중국은 옥수수 가공품의 경우에만 역관세가 나타나고 나머지 품목들은 누진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칠레는 분석 품목들에 대해서 역관세나 누진관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인 미국, 캐나다, 일본은 쇠고기의 경우에만 역관세가 나타나고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누진관세가 존재한다. 호주는 6개 품목 모두 누진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는 누진관세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돼지고기와 그 조제품, 포도와 포도주 사이에만 누진관세가 나타나고 있다.

포도와 포도주 사이에 역관세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며, 다른 국가들은 모두 누진관세가 나타난다. 돼지고기와 그 조제품 사이의 경우에는 태국만이 역관세가 존재한다. 품목별 누진성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곡물인 옥수수과 가공품사이에는 개도국들은 주로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EU를 제외하고 모두 누진관세가 존재한다. 세부품목에 대한 분석에서도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 비하여 누진관세가 존재하는 품목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12 국가별 주요 품목별 누진관세 현황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토마토	포도	사과
한국	32	16.7	-386.4	-4.5	-3	0
태국	-20	-3.3	-43	-10	27	10
멕시코	0	0	-1	1	4.5	-8
중국	5	0	-37	15	69.3	0
칠레	0	0	0	0	0	0
미국	-6.4	2.1	8.3	8.4	5.8	0
캐나다	-6.3	6.3	7.8	9.2	9.8	1.7
EU	-28	3.3	-1.7	-36.2	18.9	-7.8
호주	11	10.4	6	10	3.7	7
일본	-20.9	92.1	54.5	9.7	12.3	9.5

주: 각 품목의 세번분류는 다음과 같다.

쇠고기 : 쇠고기의 조제·저장 식용설육(160250) - 쇠고기(0201,0202).

돼지고기 : 돼지고기의 조제·저장 식용설육(16024) - 돼지고기(0203).

옥수수 : 옥수수(1005) - 콘플레이크(1904).

토마토 : 토마토(0702) - 조제·저장한 토마토(2002).

포도 : 포도주(2204) - 포도(0806).

사과 : 사과주스(200970) - 사과(080810).

제 7 장

관세감축 효과 및 이행계획서(안)

1. 관세 감축 관련 제안서 및 의장초안

관세 감축과 관련하여 여러 회원국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표 7.1.~7.3.). 이러한 과정이 협상 세부원칙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국이 제안한 주요 관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율관세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상당치를 계산함에 있어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내외 가격차를 과대 계산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엘살바도르 외 5개국, 우루과이). 회원국별로 나타나는 큰 폭의 관세격차와 관련하여서는 관세의 대폭 인하 및 관세 감축의 신축성 철폐를 통해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엘살바도르 외 5개국). 수입제한 효과가 크고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누진 관세를 철폐하자는 주장은 엘살바도르 외 5개국을 비롯하여 미국 등이 주장한 바 있다. 최고 상한관세를 설정하고(캐나다, 엘살바도르 외 5개국), 관세체계의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도 요구하고 있다(WTO 사무국 문서 AIE/S5, 미국).

표 7.1 관세 감축 방법과 폭에 대한 제안서

국 가	제 안 내 용	관련 제안서
한 국	○ 각국의 사정과 비교역적 관심 사항을 고려, 점진적으로 소폭 감축 ○ 신축적·점진적 접근	W/98
미 국	○ 국가 간 관세수준 격차 해소 ○ 쿼터 내(In-quota) 관세 포함, 상당 수준 감축 또는 철폐	W/15
캐나다	○ 단일관세 품목은 공식에 따라 상당 수준 감축하여 관세수준 격차를 축소(조화) - 최종이행연도 양허관세의 상한 설정(상한 초과시 이중관세로 전환하여 일정물량은 무관세 수입 허용) - UR의 감축률과 이번 협상 감축률의 합계에 하한 설정 ○ 이중관세 품목은 쿼터 내 관세 철폐, TRQ에 의한 자유화 정도를 고려하여 고율 관세 수준 결정	W/12
쿠바 등 11개 개도국	○ 선진국의 고율관세 제거, 관세조화공식 마련(가공 열대농산물 완전 자유화와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상승 감축 겨냥) ○ 단순평균방식 감축 반대	W/14
케언즈 그룹	○ 다른 분야 제품보다 나쁘지 않은 조건하에 상업적으로 의미있고 무차별적인 접근 허용 ○ 높은 관세일수록 많이 감축하는 공식을 이용, 대폭 감축 ○ 관세상한 설정 ○ 가능한 경우, 관세·기타 부과금 제거를 위한 추가 조치 도입 ○ 보상(Downpayment) 실시 - 선진국은 이행 초년도에 UR 협상의 개혁과정이 계속 되었을 경우 요구되는 수준의 상당수준 관세 감축	W/54
ASEAN	○ 관세격차 해소, 선진국의 관세를 더 많이 감축 ○ 추가적 관세인하, 고율 관세와 누진관세 철폐 등을 통한 열대농산물의 최대한 자유화	W/55
일 본	○ 관세수준 결정 시 각국의 생산, 소비, 국제수급 등을 감안, 품목별 신축성 확보 - 관세화 품목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도 감안하면서 국내외가격차와 농정개혁 진척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쿼터 초과(Out-quota) 세율 설정	W/91

표 7.1 관세 감축 방법과 폭에 대한 제안서(계속)

국 가	제 안 내 용	관련 제안서
카리브해 공동체	○ 개도국 산품에 대한 선진국 관세 상당 수준 감축 - 관세가 높을수록 많이 감축하는 공식 도입	W/100
노르웨이	○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관세 감축	W/101
인 도	○ 개도국은 적정 수준의 관세 유지, UR때 낮게 양허된 관세는 한도양허(Ceiling Binding) ○ 고율관세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개발(관세상한 설정 포함) - 선진국은 2001. 1. 1 관세의 50% 감축(2001말까지)	W/102
모로코	○ 선진국은 상당 수준 급속하게 관세 추가 감축 ○ 고율관세 철폐	W/105
이집트	○ 관세와 진입부과금을 상당 수준 감축 ○ 종량세, 참조가격, 최저진입가격, 가변부과금, 혼합 세율 등 철폐 ○ 고율관세, 관세격차 철폐	W/107
터 키	○ 선진국의 고율관세 철폐 ○ UR방식	W/106
EU, 폴란드	○ UR방식에 의한 관세 감축: 전체 평균과 최소감축률 적용	W/90, W/103
스위스	○ Request-Offer(R/O)방식 관세 감축(감축률 평균을 정하기 위 한 관세 감축공식으로 보완 가능 - 품목별, 사안별 접근	W/94
나이지리아	○ 선진국 고율관세의 상한 설정, 쿼터 내 관세 감축	W/130
콩 고	○ 선진국의 관세 및 고율관세 상당수준 감축, 양허관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경보호조치 철폐	W/135
멕시코	○ 관세 감축의 원칙은 국내보조, 수출보조로 인하여 국제무역 에서 초래되는 시장왜곡의 정도에 따라 결정 - 관세 및 TRQ에 대한 협상은 R/O방식 - 수출보조의 철폐 또는 상당 수준 감축, 무역 왜곡적 국내 보조의 상당 수준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관세 감축 modality는 UR방식과 유사할 것임.	W/138

표 7.1 관세 감축 방법과 폭에 대한 제안서(계속)

국 가	제 안 내 용	관련 제안서
요르단	○ 이행기간 말에는 각국의 양허세율이 수렴되도록 보장 ○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해 구체적 관세율 목표 설정 (예: 가중평균방식)	W/140
아프리카 그룹	○ 개도국 수출품이 직면하는 고율관세는 상당 수준 감축	W/142
나미비아	○ 고율관세는 정해진 기간 감축 및 점진적 철폐	W/143

표 7.2 누진관세 관련 제안서

국 가	제 안 내 용	관련 제안서
캐나다, 케언스그룹, 아세안, 카리브해 공동체, 터키, 이집트	○ 제거	W/12, W/54, W/55, W/100, W/106, W/107
미 국	○ 상당수준 감축 또는 철폐	W/15
쿠바 등 11개 개도국	○ 제거(관세조화공식 마련)	W/14
일 본	○ 가공농산물은 농업과 함께 발전해 온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세 설정	W/91
스와질랜드	○ 축소	W/95
인 도	○ 공식 개발	W/102
아프리카그룹	○ 선진국의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상승을 상당 수준 감축	W/142
나미비아	○ 정해진 기간 감축 및 점진적 철폐	W/143

표 7.3 관세 부과 방법 관련 제안서

국 가	제 안 내 용	관련 제안서
한 국	○ 신축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관세 부과방법 유지	W/98
미 국	○ 혼합세·복합세는 종가세로 전환	W/15
쿠바 등 11개 개도국	○ 가격변동대 제도, 계절관세 제도 등 가변적 관세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철폐하고 개도국에는 허용 ○ 선진국 관세체계의 투명성 제고 및 단순화 (모든 관세의 종가세 전환)	W/14
케언즈 그룹	○ 관세체계를 단순화·투명화 - 종량세로 표시된 최저진입가격 (specific minimum entry price) 철폐 - 종가세로 관세 감축약속	W/154
카리브해공 동체	○ 계절관세 및 종량세의 종가세 전환 ○ 가변적 관세, 복합관세 등 철폐 또는 단순화 - 개도국에게는 전환에 필요한 기간 인정	W/100
터 키	○ 선진국의 종량세, 혼합세는 종가세로 전환, 모든 가변관세와 복합세 철폐, 관세구조 단순화	W/106
이집트	○ 종량세, 참조가격, 최저진입가격, 가변부과금, 혼합세율 등 무역왜곡적 요소 철폐	W/107
콩 고	○ 관세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 제고	W/135

2000년부터 진행되어 온 1단계 및 2단계 WTO 농업협상에서 각국이 제안한 내용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협상 그룹 의장은 1차초안을 발표하였다. 1차초안에서 나타난 관세감축 관련 내용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주장을 절충한 형식으로 나타났다. 수입국이 주장해 온 UR 방식과 같은 신축성 있는 관세감축 방식을 수용하여 평균 감축률과 최소 감축률만을 정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내에서 품목별 관세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율이 120%를 초과하는 품목의 관세감축은 평균 40%, 최소 30%이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감축폭을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다(표 7.4). 또한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자는 수출국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관세감축에 관세율 별로 구간을 정하여 감축률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경우 관세율이 90%를 초과하는 품목은 평균 60%를 감축하여야 하나, 관세율이 15% 이하인 품목은 평균 40%만 감축하면 된다.

의장초안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부분은 시장개방 분야(특히 관세감축 분야)이다.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수출국은 수출국대로 수입국은 수입국대로 의장 1차초안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수출국은 그 동안 주장해온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만이며, 수입국은 관세감축 폭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다. 이러한 불만을 고려하여 의장은 1차초안을 수정한 2차초안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2차초안은 1차초안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며 다만 개도국의 관세감축 관련 관세율 단계를 한 단계 더 추가한 것에 그쳤다.

표 7.4 의장 1차초안의 관세감축 방식

구분	선진국				개도국			
	관세율	감축률		이행 기간	관세율	감축률		이행 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1차 초안	90%초과	60%	45%	5년	120%초과	40%	30%	10년
	15%초과~90%	50%	35%		20% 초과~120%	33%	23%	
	15%이하	40%	26%		20%이하 전략품목(SP): 품목 수 미정	27% 10%	17% 5%	

표 7.5 의장 2차초안의 관세감축 방식

구분	선진국				개도국			
	관세율 단계	감축률		이행 기간	관세율 단계	감축률		이행 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2차 초안	90%초과	60%	45%	5년	120%초과	40%	30%	10년
	15%초과~90%	50%	35%		60%초과~120%	35%	25%	
	15%이하	40%	25%		20%초과~60%	30%	20%	
					20%이하 전략품목(SP)	25%	25%	
UR협상결과	구분 없음	36%	15%	6년	구분 없음	24%	10%	10년

2. 관세감축 효과

2.1. 자료

국별 관세감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관세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비종가세 형태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세율표를 종가세 형태로 전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관세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산(평균 등)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종가세나 종량세 등 단일 과세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비종가세의 비율보다는 종가세의 비율이 높은 점, 종가세가 비종가세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종가세를 선택하였다. 종량세, 복합세, 계절관세, 최소 및 최고 관세 등 비종가세율은 모두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선택세의 경우는 종가세를 기준관세로 간주하였다. 종가세로의 변환은 종량세의 경우 해당 품목의 단위당 종량세를 해당 품목의 수입단가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계절관세, 최고 및 최저 관세 등으로 나타난 비종가세는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수입가격의 정확성과 시차에 따라 변환된 종가세는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관세율 자료를 원자료로 이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가별 양허관세는 AMAD(Agricultural Market Access Database, www.amad.org)에서 제공하는 자료, WTO, APEC 등의 관세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품목은 WTO 농업협상 대상인 국제표준 분류(HS) 1류~24류(수산물인 3류와 16류 가운데 수산 가공품은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류~53류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WTO에 관세가 양허되지 않은 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국가는 10개국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국가의 선정은 우리나라

와의 통상관계, WTO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연구 대상국가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한국, 중국, 칠레, 멕시코, 태국 등 5개국이 선정되었으며, 선진국 가운데서는 일본, 미국, 캐나다, EU, 호주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칠레는 단일 관세율을 지향하는 매우 단순한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 품목(낙농품, 가공품 등)의 관세율이 6%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율이 6% 수준이다. 따라서 일부 분석에서 칠레는 제외되었다.

수집된 관세율표는 엑셀 파일로 전환되었으며, 종량세 등 비종가세 적용 품목은 엑셀 파일에서 분류 및 종가세로의 전환작업이 시행되었다. 종가세로 통일된 국별 관세율표는 의장 2차초안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 수준별 감축률 기준에 따라 모듬(예, 개도국의 경우 관세율이 120%를 초과하는 품목은 관세 감축률이 평균 40%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품목들은 하나의 그룹 또는 모듬으로 표현하였음.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율의 높낮이를 관세율 단계로 표현하였음.)별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자료 정리 과정이 끝나면, 모듬별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을 정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률 적용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은 품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UR 국별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를 따라 결정하였다. UR 이행계획서 제출시에 이미 국가별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이 결정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연구자가 기준을 정하여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별, 관세 수준에 따른 모듬별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이 결정되면 모듬별로 나머지 품목의 감축률을 결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나머지 품목의 관세 감축률은 이미 정해진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의 감축률과 모듬별 평균 감축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품목의 관세 감축률은 모듬별 평균 감축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최소 감축률과 100% 감축률 범위 내에서 어떠한 감축률도 선택이 가능하다. 실제로 CS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연구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우의 수가 많은 점, 이 연구가 품목별 감축률보다는 평균 감축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품목의 감축률은 모둠별 평균 감축률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결정하여 최소감축률 적용 품목 이외의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하였다.

2.2. 농산물 양허관세 구조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율 단계별로 농산물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 <표 7.6>이다. 개도국 가운데 고율관세인 120%를 초과하는 관세(편의상 이하에서 4단계 관세로 지칭)가 부과되는 품목은 한국이 116개로 가장 많다. 한국 다음으로는 멕시코(47 품목), 중국(18 품목) 등의 순이다.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고율관세인 90%를 초과(3단계)하는 품목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115개 품목)이며, 다음으로 캐나다(96 품목), EU(78 품목) 등의 순이다. 고율관세 품목은 UR에 따른 관세감축에 있어서 최소감축률만 적용한 국가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고율관세 품목 116개 가운데 110개 품목에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였다. 일본, EU, 캐나다, 멕시코 등 4개국은 모든 고율관세 품목에 최소 감축률을 적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게 될 경우 3단계에 속하는 품목은 119개이며, 이들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433.3%이다. UR 당시 최소 감축률을 적용한 품목은 이들 가운데 113개에 달한다. 2단계에 속하는 품목은 843개이며, 평균 관세율은 34.4%로 낮은 편이다. 2단계 관세율 범위에 속하는 품목 가운데 50%에 가까운 416개 품목이 최소 감축률을 적용받았다. 1단계에 속하는 품목은 345개이며, 평균관세율은 8%이다. 1단계에 속하는 품목 가운데 최소 감축률이 적용된 품목은 46개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관세율 분포는 저율관세(1단계)의 비중이 높고 의장 2차초안에서 중간단계로 분류된 2단계에 속하는 품목의 비중이 낮다. 선진국에 있어서는 특히 저율관세 적용 품목의 비중이 높아 평균 관세율은 개도국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선진국에 있어서 관세에 의한 시장보호가 필요한 품목의 관세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일본, 캐나다, EU 등의 고율관세 적용 품목 수는 개도국보다 오히려 많다.

표 7.6 관세율 단계별 품목분포 현황

단위: 개, %

단계별	품목 구분	한국	태국	멕시코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4단계	품목수	116	15	47	18	-	-	-	-	-
	평균 관세율	441.8	159.8	182.4	133.5	-	-	-	-	-
	UR 최소감축률 적용 품목수	110	14	47	16	-	-	-	-	-
3단계	품목수	61	22	24	47	31	96	0	78	115
	평균 관세율	77.7	85.5	87.5	93.6	186.6	226.2	-	164.5	337.8
	UR 최소감축률 적용 품목수	47	22	22	7	26	96	0	78	115
2단계	품목수	551	527	786	628	241	61	31	632	365
	평균 관세율	36.7	33.7	36.8	37.9	31.1	34.5	22.3	33.0	29.9
	UR 최소감축률 적용 품목수	310	146	269	144	156	51	11	440	208
1단계	품목수	579	73	93	170	1,448	1,146	763	1,052	824
	평균 관세율	12.2	9.1	11.9	12.2	4.0	3.4	3.3	5.0	5.0
	UR 최소감축률 적용 품목수	108	54	50	16	641	359	185	210	119

주) 4단계: 개도국의 경우 120% 초과되는 관세.

3단계: 개도국의 경우 60% 초과~120%, 선진국의 경우 90% 초과 관세.

2단계: 개도국의 경우 20% 초과~60%, 선진국의 경우 15% 초과~90% 관세.

1단계: 개도국의 경우 20%이하, 선진국의 경우 15% 이하 관세.

2.3. 평균 관세율의 변화

의장 2차초안에 있어서 관세감축과 관련된 특징은 첫째, UR 결과보다 감축폭이 크고 선진국의 경우 감축기간이 단축된 점, 둘째,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여 관세의 조화를 추구한 점, 셋째,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특별품목을 인정하고 특별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여 개발도상국 우대를 확대한 점 등이다. 그밖에 누진관세가 유지되는(가공품의 관세가 원료 농산물에 비해 높은 경우) 품목은 가공품의 관세를 원료 농산물의 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하여 누진관세 체계를 완화시키도록 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관세감축률은 개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군의 감축률은 관세율이 낮은 품목군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품목별 관세 감축률을 계산하여 평균을 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으로 분류한 5개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1.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6.1%로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감축률은 UR 당시 선진국에 적용된 감축률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UR 당시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면 평균 관세 감축률은 55.8% 수준이 될 전망이다(부표 3 참조). 이러한 감축률은 이 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5개국 평균 감축률 51.4%보다 8% 정도 높은 것이다. 품목군별로 볼 때 관세 감축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날 부분은 주로 담배(24류), 주류(22류), 코코아 및 초코렛(18류) 등이 될 전망이다. 반면 관세 감축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날 품목은 묘목류(6류), 종축(1류), 박류(23류) 등 농업용 원료를 비롯하여 육류 조제품(16류) 등이다.

관세율이 낮은 칠레의 관세 감축률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27%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멕시코, 태국 등 기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은 31~32% 수준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다. 의장 2차초안은 1차초안에 비해 개

도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7, 부표 2 비교). 2차초안에 따른 개도국의 관세 감축률은 1차초안에 따른 경우에 비해 평균 2% 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2차초안에 따른 관세 감축률이 1차초안보다 0.7% 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가 2차초안의 2단계에 속하는 품목이 많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단계에 속하는 품목은 축산물, 과실류, 채소류 등 중요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 실질적인 의미로 볼 때 2차초안은 1차초안에 비해 평균 관세 감축률 감소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51.4%로 분석되었다.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일본과 캐나다의 관세 감축률이 56%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감축률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과 EU의 관세 감축률은 각각 50%, 52%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호주의 관세 감축률은 42.1%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개도국 가운데에서는 칠레,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호주의 관세감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양국의 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의장초안의 관세감축 방식이 낮은 관세는 높은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7.7 의장 2차초안에 따른 농산물 품목군별 평균 관세율의 변화

단위: %

품목	구 분	한국	타이	멕시코	중국	칠레	미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1류	감축전	19.7	13.8	29.0	19.9	6.0	1.1	26.6	0.4	15.5	13.1
	감축후	15.0	9.2	19.2	15.8	4.5	0.6	11.1	0.2	8.2	7.0
2류	감축전	23.0	34.7	82.1	37.5	6.0	4.7	47.2	0.1	34.1	24.2
	감축후	16.0	23.3	54.0	25.4	4.5	2.6	19.6	0.0	16.2	12.3
4류	감축전	67.9	32.8	56.4	40.9	23.4	25.6	114.2	5.2	74.2	153.5
	감축후	44.6	23.1	36.2	27.6	16.5	12.5	46.3	3.5	32.8	63.6
5류	감축전	14.9	29.7	27.9	30.3	6.0	0.6	1.5	1.9	0.2	0.3
	감축후	10.9	20.3	17.9	21.8	4.5	0.3	0.8	1.0	0.1	0.2
6류	감축전	21.9	33.4	28.4	27.2	6.0	2.2	4.2	0.8	5.2	0.7
	감축후	17.3	23.5	18.0	18.6	4.5	1.2	2.3	0.4	2.8	0.4
7류	감축전	125.4	46.9	40.3	34.8	6.0	5.9	3.5	4.0	13.5	38.5
	감축후	80.2	31.2	25.4	24.0	4.5	3.4	2.2	2.2	6.9	16.6
8류	감축전	85.4	39.2	37.8	37.5	6.0	4.3	1.8	2.4	13.6	9.1
	감축후	53.3	26.6	27.0	25.6	4.5	2.5	1.2	1.4	6.9	4.4
9류	감축전	76.9	47.6	36.0	37.3	6.0	0.9	1.2	0.1	2.4	3.5
	감축후	48.8	33.9	23.0	26.7	4.5	0.5	0.6	0.1	1.3	2.0
10류	감축전	218.0	38.3	54.7	74.2	7.6	2.1	10.1	0.8	43.5	166.3
	감축후	132.3	27.5	37.9	47.8	5.6	1.4	4.7	0.4	20.3	67.4
11류	감축전	314.8	30.7	46.2	50.7	6.8	2.8	26.0	2.8	28.2	146.5
	감축후	189.5	20.6	32.1	37.9	5.0	1.7	11.6	1.4	14.3	61.2
12류	감축전	121.2	35.3	24.3	25.3	13.4	6.4	1.4	1.6	2.5	40.8
	감축후	74.3	23.6	16.5	17.8	9.6	2.9	0.7	1.0	1.3	16.5
13류	감축전	110.6	23.9	27.2	24.6	6.0	0.8	0.0	2.2	2.2	3.4
	감축후	68.2	18.7	17.4	17.8	4.5	0.4	0.0	0.9	1.2	1.7
14류	감축전	8.4	27.7	30.4	33.7	6.0	0.9	0.0	0.7	0.0	1.9
	감축후	6.2	18.7	19.9	23.6	4.5	0.5	0.0	0.4	0.0	1.3
15류	감축전	25.5	38.2	46.3	42.8	17.8	4.7	8.8	4.1	12.4	5.3
	감축후	17.8	26.9	33.6	29.6	12.6	3.0	4.3	2.1	6.0	3.7
16류	감축전	54.6	35.2	45.0	40.0	6.0	2.8	49.5	10.2	23.7	49.3
	감축후	39.7	24.0	36.0	27.0	4.5	1.5	20.5	6.1	11.4	18.1
17류	감축전	31.0	44.1	123.0	49.2	12.0	20.5	7.4	7.9	31.0	69.6
	감축후	21.2	29.2	77.2	32.8	8.6	9.6	4.4	4.7	15.2	33.3
18류	감축전	21.5	31.1	64.1	19.5	6.0	12.8	34.5	7.9	17.3	15.8
	감축후	14.8	22.6	41.3	14.4	4.5	6.7	14.2	3.3	8.8	9.2

표 7.7 의장 2차초안에 따른 농산물 품목군별 평균 관세율의 변화(계속)

품목	구 분	한국	태국	멕시코	중국	칠레	미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19류	감축전	33.7	29.9	39.4	39.3	6.0	16.4	19.1	6.2	19.5	85.5
	감축후	25.3	20.1	27.5	26.7	4.5	8.2	9.0	3.5	10.7	37.1
20류	감축전	43.6	32.3	39.0	40.0	6.0	8.8	6.1	8.3	26.1	16.6
	감축후	29.4	21.7	27.4	27.0	4.5	4.6	3.6	4.7	12.7	7.4
21류	감축전	64.7	35.2	57.5	47.6	6.0	13.1	34.4	4.3	11.6	48.2
	감축후	45.1	23.9	37.9	32.7	4.5	6.9	14.6	2.4	6.3	20.3
22류	감축전	32.9	56.9	41.5	98.3	6.0	4.8	11.4	9.5	14.4	27.2
	감축후	19.1	39.3	32.2	60.9	4.5	2.8	6.0	6.7	7.2	15.0
23류	감축전	19.1	15.3	37.5	18.1	15.7	6.3	12.0	0.6	14.7	3.9
	감축후	14.9	11.3	26.0	13.6	11.2	3.0	5.1	0.3	7.2	2.6
24류	감축전	59.1	64.0	51.8	91.8	6.0	52.2	5.9	12.8	28.6	6.8
	감축후	22.0	42.5	38.4	56.5	4.5	22.1	4.0	6.9	15.0	3.9
29류	감축전	22.5	27.0	37.0	22.5	6.0	4.8	8.0	17.0	27.1	17.0
	감축후	18.0	21.6	23.5	17.6	4.5	2.5	4.1	7.0	13.6	11.1
33류	감축전	13.2	30.0	29.1	40.0	6.0	1.4	1.8	5.9	3.2	1.8
	감축후	9.4	20.2	18.8	27.0	4.5	0.8	0.9	3.3	1.7	1.0
35류	감축전	201.2	30.0	26.5	26.6	6.0	3.7	48.6	6.0	9.7	11.5
	감축후	121.8	20.2	17.3	20.7	4.5	2.6	20.1	3.1	5.1	7.4
38류	감축전	15.5	28.5	33.5	25.8	6.0	4.0	4.3	9.0	14.4	11.8
	감축후	12.3	20.9	21.3	20.0	4.5	2.5	2.3	3.7	7.5	7.6
41류	감축전	5.2	25.0	11.2	15.3	6.0	0.0	0.0	0.0	0.0	0.0
	감축후	3.8	19.5	8.9	11.5	4.5	0.0	0.0	0.0	0.0	0.0
43류	감축전	14.5	25.7	20.0	39.6	6.0	0.0	0.0	1.0	0.0	1.5
	감축후	11.3	20.2	13.5	27.2	4.5	0.0	0.0	0.5	0.0	0.8
50류	감축전	25.7	63.3	20.0	40.0	6.0	0.6	0.0	0.5	0.0	106.9
	감축후	20.8	39.6	13.5	27.0	4.5	0.3	0.0	0.3	0.0	42.8
51류	감축전	2.0	21.0	28.8	34.6	6.0	2.3	0.0	1.0	0.0	0.0
	감축후	1.4	15.3	18.7	27.3	4.5	1.7	0.0	0.5	0.0	0.0
52류	감축전	2.0	4.5	40.2	41.2	6.0	5.6	0.0	1.2	0.0	0.0
	감축후	1.4	3.8	28.5	27.3	4.5	3.0	0.0	0.6	0.0	0.0
53류	감축전	2.0	27.0	30.5	18.0	6.0	0.7	0.0	1.0	0.0	0.0
	감축후	1.4	21.6	23.8	13.5	4.5	0.4	0.0	0.5	0.0	0.0
전체 평균	감축전	63.8	35.4	42.8	37.9	8.9	11.1	21.3	4.0	22.1	41.3
	감축후	40.8	24.4	29.0	26.1	6.5	5.5	9.3	2.3	10.6	18.0
	감축률	36.1	31.2	32.2	31.1	27.3	50.0	56.4	42.1	51.9	56.4

주: 품목분류는 HS 분류에 따랐으며 유별 품목명은 『HS종합편람』, (한국관세연구소) 참조.

2.4. 누진관세의 변화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란 원료의 관세를 낮게 하고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료나 가공도가 낮은 상품을 해외에서 싸게 구입하여 생산비를 낮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완제품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완제품 시장의 발전은 원료의 수요를 증가시켜 원료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누진관세 체계는 완제품 산업의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s of protection)¹⁷을 높여 산업보호 효과를 크게 하는 제도이다. 그만큼 관세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여 가공도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완제품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자신들을 값싼 원료의 공급 기지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역누진관세(또는 역관세)는 누진관세와 반대되는 것으로 완제품 산업이 관세정책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원료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을 경우 생산자는 원료비 상승으로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된다. 더욱이 수입되는 완제품에 부과되는 낮은 관세는 완제품 시장의 경쟁을 격화시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게 된다.

관세의 누진성 여부는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s of protection) 개념을 도입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실효보호율 측정을 위해서는 어느 최종 소비재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중간재의 투입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의 실효보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품목군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HS 10단위 수준의 세분화된 품목별 실효보호율 계산에 이러한

17) 실효보호율이란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관세율까지 고려한 보호율의 개념으로 원료의 관세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원료의 관세율이 낮으면 수입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여 생산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산업의 경쟁력은 커지게 된다. 반면 명목보호율은 양허관세율이나 실행관세율 등의 형태로 표시된 관세율 자체를 의미한다.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품목군별로(HS 2단 위 수준의 품목류별)원료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분류하고 가공품과 원료 사이의 관세율 차이로 관세의 누진성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품목군별 평균 관세율 차이로 나타낸 관세의 누진성은 한국에 있어서는 채소류와 채소조제품, 과일류와 과일조제품, 곡물류와 곡물조제품 사이에 역관세가 존재하고, 육류와 육류조제품 사이에는 누진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원료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농산물 가공품은 역관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역관세는 태국, 멕시코, 칠레 등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세의 역누진성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고 다음이 멕시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누진관세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세의 누진성은 의장의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류조제품의 관세율에서 육류의 관세율을 뺀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31.6% 포인트로 누진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표 7.8). 이러한 관세의 누진성은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23.7% 포인트로 감소한다. 멕시코에서 나타나고 있는 육류조제품과 육류 사이의 관세율 차이는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37.1% 포인트(즉, 역관세 형태임)에서 -18% 포인트로 감소한다. 일본은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두 품목의 관세 차이가 25.2% 포인트에서 5.8% 포인트로 감소하여 관세의 누진성이 가장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채소조제품과 채소 사이에 역관세를 나타내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태국, 멕시코, 일본 등 4개국이다. 두 품목 사이에 나타난 관세율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으로 -81.9% 포인트에 달한다(표 7.9). 이러한 심한 역관세 현상은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50.8% 포인트로 축소된다. 멕시코는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역관세에서 누진관세로 바뀌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품목 사이에 누진관세를 나타내는 6개국의 누진성은 크지 않았으며, 관세를 감축할 경우 누진성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육류(HS 2류)와 육류조제품(HS 16류)의 누진관세 비교

단위: %

	16류 평균 관세율		2류 평균 관세율		관세율 차이(16류-2류)	
	감축전	감축후	감축전	감축후	감축전	감축후
한국	54.6	39.7	23.0	16.0	31.6	23.7
태국	35.2	24.0	34.7	23.3	0.5	0.6
멕시코	45.0	36.0	82.1	54.0	-37.1	-18.0
중국	40.0	27.0	37.5	25.4	2.5	1.7
칠레	6.0	4.5	6.0	4.5	0.0	0.0
미국	2.8	1.5	4.7	2.6	-1.9	-1.1
캐나다	49.5	20.5	47.2	19.6	2.4	0.9
호주	10.2	6.1	0.1	0.0	10.2	6.1
EU	23.7	11.4	34.1	16.2	-10.4	-4.7
일본	49.3	18.1	24.2	12.3	25.2	5.8

표 7.9 채소류(HS 7류)와 채소조제품(HS 20류)의 누진관세 비교

단위: %

	20류 평균 관세율		7류 평균 관세율		관세율 차이(20류-7류)	
	감축전	감축후	감축전	감축후	감축전	감축후
한국	43.6	29.4	125.4	80.2	-81.9	-50.8
태국	32.3	21.7	46.9	31.2	-14.5	-9.5
멕시코	39.0	27.4	40.3	25.4	-1.3	1.9
중국	40.0	27.0	34.8	24.0	5.2	3.1
칠레	6.0	4.5	6.0	4.5	0.0	0.0
미국	8.8	4.6	5.9	3.4	2.9	1.2
캐나다	6.1	3.6	3.5	2.2	2.6	1.4
호주	8.3	4.7	4.0	2.2	4.4	2.6
EU	26.1	12.7	13.5	6.9	12.7	5.8
일본	16.6	7.4	38.5	16.6	-21.9	-9.2

표 7.10 과실류(HS 8류)와 과실조제품(HS 20류)의 누진관세 비교

단위: %

	20류 평균 관세율		8류 평균 관세율		관세율 차이(20류-8류)	
	감축전	감축후	감축전	감축후	감축전	감축후
한국	43.6	29.4	85.4	53.3	-41.8	-23.9
태국	32.3	21.7	39.2	26.6	-6.8	-4.9
멕시코	39.0	27.4	37.8	27.0	1.2	0.3
중국	40.0	27.0	37.5	25.6	2.5	1.5
칠레	6.0	4.5	6.0	4.5	0.0	0.0
미국	8.8	4.6	4.3	2.5	4.6	2.0
캐나다	6.1	3.6	1.8	1.2	4.3	2.4
호주	8.3	4.7	2.4	1.4	6.0	3.3
EU	26.1	12.7	13.6	6.9	12.5	5.9
일본	16.6	7.4	9.1	4.4	7.5	3.0

과실류의 조제품과 과실류 사이에 누진관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8개국이다. 두 품목 사이의 관세율 차이는 EU가 12.5% 포인트로 가장 크다(표 7.10). EU의 이러한 관세의 누진성은 관세감축으로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두 품목 사이에 역관세가 존재하며, 관세율 차이는 -41.8% 포인트로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역관세도 관세감축으로 크게 완화되어 두 품목 사이의 관세율 차이는 -23.9% 포인트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류와 곡물조제품(가공품) 사이에는 역관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국가 10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수출국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역관세를 보이고 있다. 곡물 수입국으로 식량안보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심한 역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의 곡물류에 대한 관세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품목 사이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관세율 차이는 -184.3% 포인트이며,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이 차이는 -107% 포인트로 감소한다(표 7.11). 일본의 두 품목 사이에 나타난 관세율 차이는 관세감축 이전에 -80.8% 포인트에서 관세감축 이후에 -30.3% 포인트로 감소한다. 누진관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두 품목 사이의 관세율 차이는 관세감축 이후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11 곡물류(10류)와 곡물조제품(19류)의 누진관세 비교

단위: %

	19류 평균 관세율		10류 평균 관세율		관세율 차이(19류-10류)	
	감축전	감축후	감축전	감축후	감축전	감축후
한국	33.7	25.3	218.0	132.3	-184.3	-107.0
태국	29.9	20.1	38.3	27.5	-8.4	-7.4
멕시코	39.4	27.5	54.7	37.9	-15.3	-10.4
중국	39.3	26.7	74.2	47.8	-34.9	-21.1
칠레	6.0	4.5	7.6	5.6	-1.6	-1.1
미국	16.4	8.2	2.1	1.4	14.3	6.8
캐나다	19.1	9.0	10.1	4.7	9.1	4.3
호주	6.2	3.5	0.8	0.4	5.5	3.1
EU	19.5	10.7	43.5	20.3	-23.9	-9.6
일본	85.5	37.1	166.3	67.4	-80.8	-30.3

누진관세와 관련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공품과 원료 농산물 사이에 나타나는 누진관세 또는 역관세 현상은 관세감축으로 크게 완화된다는 것이다. 관세감축으로 인한 관세의 누진성 완화 효과는 누진성이 큰 품목일수록 크게 나타나며,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의장 2차초안의 내용이 높은 관세는 낮은 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더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2.5. 고율관세의 변화

고율관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보통 평균 관세율보다 2~3배 높은 경우를 고율관세로 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의장 2차초안을 중심으로 관세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2차초안에서 높은 관세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시된 세 가지 관세율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율 단계에 속하는 것을 고율관세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고율관세는 선진국의 경우 90%, 개도국의 경우 120%를 초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평균 양허관세율이 각각 63.8%, 41.3%인 점을 고려하면 고율관세가 평균보다 2배정도 높은 수준으로 정의된 것이다. 그러나 관세가 낮은 국가들(칠레와 호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각각 8.9%, 4.0%임)에게는 고율관세가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UR 당시(또는 WTO 가입협상 당시)에 최소 감축률을 적용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다시 적용할 경우 평균 감축률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는 UR에서 최소 감축을 시행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4단계에 속하는 품목 수는 116개이며, 이 가운데 110개 품목이 UR에서 최소 감축률이 적용된 품목이다. 이 경우 의장 2차초안에 따라 110개 품목에 최소 감축률 30%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16개 품목의 감축률을 100%로 하여도 평균 감축률 40%를 충족시킬 수 없다. 가장 높은 관세율 단계에 속하는 품목들은 UR 당시 대부분 최소 감축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의장 2차초안에 따라 이들 품목에 다시 모두 최소 감축률을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 국가별로 중요성이 큰 품목을 선택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의 감축률을 평균보다 높게 하여 평균 감축률을 충족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의 비중이 매우 높아 나머지 품목들의 감축률을 100%로 하여도 평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품목에 평균 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어느 나라에 있거나 고율관세 품목은 UR 당시 관세감축에 있어서 최소

감축률을 적용한 품목의 비중이 높아(표 7.12 참조) 이 연구에서 가정한 대로 의장 2차초안에 따라 다시 최소 감축률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고율관세 품목은 모두 평균 감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고율관세 품목에 대하여는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감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율관세 품목군 내에서 어떤 품목은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고 어떤 품목은 평균보다 높은 감축률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전망이다.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한국이 4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본으로 337.8%이다.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가 감축될 경우 개도국은 40%, 선진국은 60% 낮아지게 된다. 한국의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평균 265.1%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의 고율관세 품목 평균 관세율은 135.1%가 될 전망이다. 2차초안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100% 이내의 평균 관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7.12 고율관세의 관세 감축률

단위: %

	고율관세 품목 평균 관세율	감축후 평균 관세율	감축률
한국	441.8	265.1	40.0
태국	159.8	95.9	40.0
멕시코	182.4	109.4	40.0
중국	133.5	80.1	40.0
미국	186.6	74.7	60.0
캐나다	226.2	90.5	60.0
EU	164.5	65.8	60.0
일본	337.8	135.1	60.0

한국은 2단계에 속하는 품목이 551개이며, UR 당시 이 가운데 310개 품목에 최소 감축률이 적용되었다.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 310개의 평균 감축률은 20%가 된다. 이 때 2단계에 속하는 나머지 241개 품목은 평균 45%가 감축되어야 평균 감축률 30%를 충족시킬 수 있다(표 7.13). 3단계에 속하는 품목은 61개이며, 이 가운데 UR 당시 최소 감축률이 적용된 품목은 47개이다. 따라서 3단계에 속하는 품목 가운데 47개 품목에 최소 감축률 25%를 적용하면 나머지 14개 품목의 감축률은 평균 76%가 되어야 한다.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1단계에 속하는 품목은 579개이며, 이 가운데 최소 감축률이 적용된 품목은 108개이다. 따라서 1단계에 속하는 품목 가운데 471개 품목의 감축률은 평균 감축률보다 3% 포인트 높은 평균 28%가 되어야 한다.

표 7.13 관세율 단계별 관세 감축률

단위: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감축률			감축률			평균감축률			감축률		
	최소	기타	평균	최소	기타	평균	최소	기타	평균	최소	기타	평균
한국	15	28	25	20	45	30	25	76	35	40	40	40
태국	15	40	25	20	33	30	35	35	35	40	40	40
멕시코	15	32	25	20	37	30	35	35	35	40	40	40
중국	25	25	25	20	32	30	25	37	35	40	40	40
칠레	25	25	25	30	30	30	-	-	-	-	-	-
호주	25	49	40	35	59	50	-	-	-			
미국	25	48	40	50	50	50	60	60	60	-	-	-
캐나다	25	49	40	50	50	50	60	60	60	-	-	-
일본	25	45	40	35	77	50	60	60	60	-	-	-
EU	25	46	40	50	50	50	60	60	60	-	-	-

주: 기타 감축률은 최소 감축률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적용한 다음 평균 감축률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품목에 적용한 감축률을 의미함.

2.6. 관세격차의 변화

관세격차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품목 또는 품목군 사이에 관세율에 차이(격차)가 나타난다. 동일한 품목군 내에서도 품목의 분류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현저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농산물일수록 그 분류가 세분화되고, 세부 품목간의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 간 관세율 차이는 평균 관세율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목에 대한 적용 세율에 있어서도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 간 관세격차 문제가 WTO/DDA 농업협상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우리나라와 호주 사이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 60% 포인트에 달한다(표 7.14). 관세율 격차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도 관세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칠레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관세율은 38%로 선진국 평균 관세율 20%에 비해 상당히 높다. 국가 내에서 품목간에도 관세율 격차는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관세율은 평균 관세율보다 823.6% 포인트나 높다.

평균 관세율은 개발도상국들이 높으나 최고 관세율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다. 이것은 선진국들의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은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 관세율과 최고 관세율의 차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관세율과 최고 관세율의 차이는 일본이 1,375.3% 포인트로 가장 심하다.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 국가는 칠레로 최고세율과 평균관세율 차이가 22.6% 포인트이다.

관세격차는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별 평균 관세율격차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59.8% 포인트에서 38.5% 포인트로 축소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 관세감축 이전에 31.7% 포인트에서 관세감축 이후에 23.5% 포인트로 축소되었다. 평균 관세율과 최고 관세율 사이의 격차는 일본의 경우 1,375.3% 포인트에서 548.8% 포인트로 60%나 감소하였다.

표 7.14 관세율 격차의 변화

단위: %

		평균(A)	최고세율(B)	B - A
한국	감축전	63.8	887.4	823.6
	감축후	40.8	532.4	491.7
타이	감축전	35.4	226.0	190.6
	감축후	24.4	135.6	111.2
멕시코	감축전	42.8	254.0	211.2
	감축후	29.0	152.4	123.4
중국	감축전	37.9	135.0	97.1
	감축후	26.1	81.0	54.9
칠레	감축전	8.9	31.5	22.6
	감축후	6.5	22.1	15.6
미국	감축전	11.1	350.0	338.9
	감축후	5.5	140.0	134.5
캐나다	감축전	21.3	465.8	444.5
	감축후	9.3	186.3	177.0
호주	감축전	4.0	31.3	27.3
	감축후	2.3	20.3	18.0
EU	감축전	22.1	462.7	440.6
	감축후	10.6	185.1	174.4
일본	감축전	41.3	1,416.6	1,375.3
	감축후	18.0	566.6	548.6

주: 위의 10개국 모두 최저 관세율은 0%임. 따라서 최저세율과 최고세율간의 격차는 최고세율 수준임.

2.7. 관세감축과 식품산업

가공식품의 관세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운데 가공식품을 다시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가공식품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HS 10

단위를 기준으로 가공식품과 원료농산물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HS 분류에서 4류에 속하는 유제품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HS 10단위에서 가공품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원유와 분유 등의 형태는 원료 농산물로 분류하였으며, 요구르트와 치즈 등은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였다. 가공식품을 분류된 품목은 HS 17류에서 22류까지, 4류(일부), 15류 등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산업의 평균 관세율이 농산물 평균 관세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원료보다 가공품의 관세가 높은 누진관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40.6%로 농산물 평균 63.8%에 비해 23% 포인트나 낮아 역관세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15). 우리나라 식품업계는 이러한 역관세 문제를 해소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 식품산업 가운데 관세율이 농산물보다 높은 분야는 음료와 소스이나, 이러한 현상도 인삼차의 관세율이 700%를 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음료와 소스 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7.15 식품산업의 평균관세율 국제 비교

단위: %

	한국	태국	멕시코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4류	36.0	30.0	80.8	40.0	22.8	123.0	8.8	47.8	66.2
15류	32.8	42.5	49.8	19.3	4.9	9.6	4.2	12.3	6.0
17류	31.0	44.1	123.0	49.2	20.5	7.4	7.9	31.0	69.6
18류	23.4	36.0	96.6	15.0	13.9	52.8	17.0	25.0	21.3
19류	33.7	29.9	39.4	39.3	16.4	19.1	6.2	19.5	85.5
20류	43.6	32.3	39.0	40.0	8.8	6.1	8.3	26.1	16.6
21류	64.7	35.2	57.5	47.6	13.1	34.4	4.3	11.6	48.2
22류	32.9	56.9	41.5	98.3	4.8	11.4	9.5	14.4	27.2
전체평균	40.6	39.6	56.5	49.5	13.8	23.8	7.5	22.4	37.9

국가간 식품산업의 관세격차는 농산물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평균 관세율의 국가간 관세격차는 우리나라와 호주 사이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59.8% 포인트). 그러나 식품산업의 관세율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멕시코와 호주 사이의 관세율 격차는 49% 포인트이다. 멕시코와 중국은 농산물의 관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가공식품 관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의장 2차초안에 따른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31~34% 수준으로 농산물의 관세 감축률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16). 국가별로 평균 관세 감축률에 큰 차이는 없었다. 선진국의 식품산업 관세 감축률은 40~56%로 농산물 관세 감축률보다 약간 낮았다. 그러나 국가별로 볼 때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이 농산물보다 높은 국가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개도국 가운데 태국과 중국에서 나타났다.

식품산업 관세 감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개도국에서는 중국(감축률 33.9%)이며,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캐나다(감축률 54.6%)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관세 감축률은 32%로 농산물 평균 감축률에 비해 4% 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53.4%로 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에 비해 감축률이 21.4% 포인트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감축률은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으나 식품 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개도국 평균 감축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관세율이 농산물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관세감축에 있어서 농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개도국 또는 선진국 어디로 분류되더라도 농산물에 비해 관세 감축률이 2~4% 포인트 낮아 원료 농산물 조달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식품 수출시장인 중국, 태국 등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관세 감축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률이 53.4%에 달하여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표 7.16 의장 2차초안에 따른 식품산업 평균 관세율의 변화

단위: %

		한국 (개도국)	한국 (선진국)	태국	멕시코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4류	감축전	36.0	36.0	30.0	80.8	40.0	22.8	123.0	16.2	54.9	66.2
	감축후	25.5	18.7	20.2	52.2	27.0	11.5	49.3	10.7	26.0	26.2
15류	감축전	32.1	32.1	40.7	45.4	49.3	4.9	9.6	4.2	12.3	6.0
	감축후	21.8	14.4	28.1	33.6	32.9	3.1	4.7	2.2	6.1	4.3
17류	감축전	31.0	31.0	44.1	123.0	49.2	20.5	7.4	7.9	31.0	69.6
	감축후	21.2	12.1	29.2	77.2	32.8	9.6	4.4	4.7	15.2	33.2
18류	감축전	23.4	23.4	36.0	96.6	15.0	13.9	52.8	17.0	25.0	21.3
	감축후	15.6	8.7	23.9	62.6	11.3	7.3	21.6	7.0	12.5	12.5
19류	감축전	33.7	33.7	29.9	39.4	39.3	16.4	19.1	6.2	19.5	85.5
	감축후	25.3	18.5	20.1	27.5	26.7	8.2	9.0	3.5	10.7	37.0
20류	감축전	43.6	43.6	32.3	39.0	40.0	8.8	6.1	8.3	26.1	16.6
	감축후	29.4	20.7	21.7	27.4	27.0	4.6	3.6	4.7	12.7	6.9
21류	감축전	64.7	64.7	35.2	57.5	47.6	13.1	34.4	4.3	11.6	48.2
	감축후	45.1	32.6	23.9	37.9	32.7	6.9	14.6	2.4	6.3	20.0
22류	감축전	32.9	32.9	56.9	41.5	98.3	4.8	11.4	9.5	14.4	27.2
	감축후	19.1	11.4	39.3	32.2	60.9	2.8	6.0	6.7	7.2	14.8
평균	감축전	40.6	40.6	39.3	54.7	49.5	13.8	23.8	7.7	22.8	36.6
	감축후	27.6	18.9	26.7	37.9	32.7	7.1	10.6	4.6	11.3	16.6
	감축률	32.0	53.4	32.1	30.7	33.9	48.6	55.5	40.3	50.4	54.6

주) 4류는 042310, 040610, 040620, 040630, 040640, 040690, 15류는 1507~1518, 18류는 1806을 의미함.

3. 이행계획서(안)

3.1. 관세양허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의장 2차초안의 특징은 신축성과 관세조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의장의 관세감축 안은 UR 당시와 같이 관세감축에 있어서 품목별로 신축성을 인정하지만 관세가 높을수록 많이 감축하여 관세조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한 관세감축의 신축성은 UR 당시에 비해 크게 제약되었으며, 공식에 의해 높은 관세는 모두 일률적으로 많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수출국의 주장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감축 관련 이행계획서는 관세율 단계별로 상이한 평균 및 최소 감축률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의장 2차초안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관세율 단계별로 나뉘어진 모듬 내에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장초안이 제시한 관세감축 방식은 UR 당시와 달리 관세율 단계별로 감축률을 달리하고 단계별 모듬 내에서 최소 감축률과 평균 감축률을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UR 당시(또는 WTO 가입협상 당시)에 최소 감축률을 적용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다시 적용하고자 할 경우 평균 감축률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는 UR에서 최소 감축을 시행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때 발생한다.

식품산업 가운데에서도 중요성이 큰 품목을 선택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의 감축률을 평균보다 높게 하여 평균 감축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관·학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품목별 관세 감축률 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의장 2차초안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식품

산업의 관세 감축률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은 관세 감축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 반면 해당 품목의 관세감축 부담을 동일 모듈내의 다른 품목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의 선정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식품산업 분야의 이행계획서는 ① 의장초안에 따라 90% 이상의 관세는 평균 40%, 최소 30% 감축하는 방식에 따르되 최소감축 대상 품목은 UR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② 관세율 수준에 따라 평균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③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식품산업의 관세율이 이미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역누진관세 현실을 감안) 등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형된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품목별 업계의 의견이나 품목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행계획서 작성의 예는 부표 4와 같다.

3.2. 관세할당 증량

의장 2차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1999~2001년 평균 소비량의 10% 미만 품목에 대하여 5년간 1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이미 10%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현행시장접근 물량으로 유지하면 된다. 최소시장접근 품목 가운데 1/4은 10%가 아닌 8%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의 품목은 12%까지 증가시켜 평균 증가율을 10%에 맞추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최소시장접근 해당 품목은 1999~2001년 평균 소비량의 6.6% 미만 품목이며, 10년간 6.6%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해당 품목 가운데 1/4은 5%까지 증가시켜도 되나, 이 경우 다른 1/4에 해당하는 품목은 8%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특별품목은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당내 관세율은 관세의 추가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시장접근물량 설정 기준연도(1988~90)와 이행연도 사이의 시차와 그 동안의 국내수급 변화로 이행계획서상의 시장접근물량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증량시켜 운영해 왔다.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접근물량 적용 품목 64개 중 22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 물량을 증량시킨 바 있다. 따라서 현행시장접근 품목은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부담이 거의 없다. 현행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 품목은 육골분과 기타전분 두 품목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소시장접근 품목은 대부분 관세할당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할당 증량과 관련된 이행계획서는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식품업체에서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필요에 의해 관세할당량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허용해 왔다. 따라서 관세할당량 양허수준은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최소 수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관세할당량 증량의 예는 <표 7.17> 및 표 <7. 18>과 같다.

표 7.17 TRQ 증량 이행계획(안): 현행시장접근 품목

수입관리 방식	품목	평균 소비량(A)	평균 수입량(B)	비율 (B/A)	2004년 TRQ	선진국	개도국
국영무역	채유용 대두	1,123,021.0	1,122,873.0	100.0	846,365.0	-	-
	가공용 대두	445,667.0	324,771.7	72.9	185,787.0	-	-
	낙화생(땅콩)	35,989.6	23,672.5	65.8	4,907.3	-	-
	참깨	90,112.2	61,710.0	68.5	6,731.0	-	-
자격제한	종계	4,188.0	688.3	16.4	461.0	-	-
	맥아	61,587.0	60,910.2	98.9	40,000.0	-	-
	변성전분	70,804.0	69,475.4	98.1	45,692.0	-	-
	매니옥전분	3,652.0	3,652.0	100.0	2,400.0	-	-
	고구마전분	30,637.0	5,362.2	17.5	4,376.0	-	-
	매니옥	242,571.0	245,300.0	101.1	50,000.0	-	-
	맥주맥	261,333.0	56,304.7	21.5	30,000.0	-	-
	옥수수	8,810,000.0	7,987,311.9	90.7	6,102,100.0	-	-
	기타가공곡물	462.0	95.0	20.6	14.7	-	-
	옥(골)분	54,203.0	3,086.6	5.7	3,210.0	5,420.3	3,577.4
	생사	1,669.2	1,635.7	98.0	2,254.0	-	-
신청순	매니옥펠리트	84,274.0	77,710.7	92.2	1,000,000.0	-	-
	기타서류	2,400.0	239.7	10.0	326.7	-	-
	호밀(종자용)	3,383.0	3,383.0	100.0	1,327.3	-	-
	귀리(종자용)	622.0	623.2	100.2	597.3	-	-
	옥수수(종자용)	381.0	381.5	100.1	247.0	-	-
	수수(종자용)	16.0	15.6	97.5	13.7	-	-
	감자분	84.0	83.0	99.0	60.0	-	-
	기타전분	21,181.0	342.2	1.6	227.4	2,118.1	1,397.9
	인조꿀	na	0.4	na	6.0	-	-
	누에고치	92.0	88.8	96.5	1,143.0	-	-

주 : 소비량과 수입량은 1998~2000년 평균으로 의장초안과 차이가 있음.

- 는 해당사항 없음을 뜻함.

표 7.18 TRQ 증량 이행계획(안): 최소시장접근 품목

수입관리 방식	품목	평균 소비량(A)	평균 수입량(B)	비율 (B/A)	2004년 TRQ	선진국	개도국
국영무역	쌀	4,523,760.0	116,927.0	2.6	205,228.0	452,376.0	298,568.2
	겉보리	200,000.0	28,795.2	14.4	23,582.0	-	-
	녹두팔	41,997.0	25,990.9	61.9	14,694.0	-	-
	메밀	6,002.0	2,101.1	35.0	1,328.0	-	-
	고추류	197,000.0	6,345.9	3.2	7,185.0	19,700.0	13,002.0
	마늘	467,000.0	19,696.7	4.2	14,467.0	46,700.0	30,822.0
	양파	896,000.0	18,163.0	2.0	20,645.0	89,600.0	59,136.0
	생강	45,000.0	3,499.3	7.8	1,860.0	4,500.0	-
	감자(종자용)	42,839.0	96.0	0.2	1,898.0	4,283.9	2,827.4
	오렌지	56,091.3	56,091.3	100.0	57,017.0	-	-
	감귤류	561,558.0	738.6	0.1	2,097.0	56,155.8	37,062.8
	천연꿀	11,990.0	386.2	3.2	420.0	1,199.0	791.3
	인삼류	2,020.8	22.6	1.1	56.8	202.1	133.4
	잣	928.3	41.1	4.4	52.9	92.8	61.3
수입권 구매	연유	3,609.0	12.3	0.3	130.0	360.9	238.2
	탈지분유	19,387.0	2,972.7	15.3	1,034.0	-	-
	전지분유	4,488.0	418.4	9.3	573.0	448.8	-
	참기름	28,714.5	426.5	1.5	668.0	2,871.5	1,895.2
	밤	73,276.3	131.5	0.2	2,170.0	7,327.6	4,836.2
자격제한	대추	9,128.0	201.7	2.2	259.5	912.8	602.4
	종우	72,510.0	8.3	0.01	1,067.0	7,251.0	4,785.7
	종돈	29,300.0	1,326.9	4.5	1,850.0	2,930.0	1,933.8
	골분	462.0	407.4	88.2	467.6	-	-
	유장	31,067.3	31,067.3	100.0	54,233.0	-	-
	버터	3,583.0	772.8	21.6	420.0	-	-
	녹차	994.4	41.6	4.2	7.8	99.4	65.6
	사료용근채류	na	336,928.0	na	32,133.3	-	-
	유당	12,769.7	12,779.8	100.1	9,400.0	-	842.8
	에틸알콜	273,315.0	7,961.5	2.9	10,333.8	27,331.5	18,038.8
	기타배합사료	20,993.0	462.1	2.2	627.0	2,099.3	1,385.5
신청순	보조사료	502,158.0	17,375.7	3.5	4,171.4	50,215.8	33,142.4
	조란	465,621.0	0.0	0.0	19,515.8	46,562.1	30,731.0
	잠종	45.7	0.0	0.0	9.5	4.6	3.0
	묘목류(과수)	168.3	0.23	0.1	145.2	16.8	11.1
	팽나무	256.0	0.0	0.0	1,402.7	25.6	16.9
	감자(종자용)	42,839.0	96.0	0.2	1,898.0	4,283.9	2,827.4
	고구마	370,673.0	2,729.0	0.7	18,535.0	37,067.3	24,464.4
	조(종자용)	18.0	0.0	0.0	0.4	1.8	1.2
	참깨유박	18,238.0	0.0	0.0	212.0	1,823.8	1,203.7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1. 연구 목적과 범위

WTO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더욱 낮아져 수입 식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료 농산물의 관세인하로 생산비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 측면에서 WTO 농업협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유리한 협상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WTO/DDA 농업협상이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시장접근 분야 협상은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증량과 관리방식, 관세감축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 가운데 시장접근 분야를 분석하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다. 세부적인 연구목적 및 내용은 경쟁국별 관세구조 비교분석, 관세감축 효과의 국제 비교, 수입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할당 및 관세 분야의 이행계획서

(Country Schedule, C/S)를 식품산업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국제기구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분석 대상국가는 10개국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국가의 선정은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WTO/DDA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한국, 중국, 칠레, 멕시코, 태국 등 5개국이 선정되었으며, 선진국 가운데서는 일본, 미국, 캐나다, EU, 호주가 선정되었다.

1.2. 식품산업 현황과 전망

식품산업 취업자 수는 2000년에 17만 8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3만명 정도 감소하였다. 2000년 현재 식료품 제조업체 수는 6,421개로 1990년에 비해 37% 증가하였다. 전체 제조업체에서 식품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이다. 1990~2000년 기간에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2.8배, 고정자산은 2.6배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17만 8천 명으로 같은 기간에 16.8%가 감소하여 식품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종사자 1인당 자본장비율은 279만원에서 890만원으로 3.2배 증가하였으며,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46명에서 28명으로 감소하였다.

식품업체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소비자가 밀집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식품업체 수는 1,660개로 전체의 1/4에 달한다. 업체당 종업원 수는 경기, 인천, 경남 지역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지역 식품업체의 규모가 업체당 종업원 수와 부가가치 생산액 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지역 업체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57억원으로 2위인 충북보다 18억원이나 많았다. 전남의 식품업체는 종업원 수와 부가가치 생산액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1991~2000년) 업체 수가 증가한 업종은 육가공, 수산가공, 과채가공, 빵·과자류 제조업 등이다. 반면 유가공, 설탕류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의 업체 수는 감소하였다. 알코올성 음료 제조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477개에서 192개로 60% 감소하였다.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업체 수는 같은 기간에

175개에서 238개로 증가하였다. 식료품 업계에서 생산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육가공업으로 1991년 8.4%에서 2000년 12.5%로 증가하였다. 1991년의 경우 식료품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유가공 산업으로 그 비중이 16%에 달하였다.

식품 소비지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0.1%에서 2000년 35.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가공 기술의 발달, 소비자 기호의 변화, 외식산업의 발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한 편의 식품 수요 증가 등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식품산업 생산액은 2000~2005년 기간에 30% 정도 성장하여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 생산액은 연평균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WTO/DDA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WTO 농업협상은 회원국들의 제안서 제출을 중심으로 한 1단계 협상(2000. 1. ~ 2001. 3.), 제안서를 통해 중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토의를 진행한 2단계 협상(2001. 5. - 2002. 3.)을 거쳐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3단계 협상(2002년 3월 이후)에 와 있다. 3단계 협상에서는 먼저 수출보조 분야가 논의되었으며(2002년 6월), 다음으로 시장접근 분야(2002년 7월)와 국내보조 분야(2002년 9월)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 이러한 분야별 논의를 기초로 WTO는 의장 종합보고서(2002년 12월 18일), 의장 1차초안(2003년 2월 12일), 의장 2차초안(2003년 3월 18일)을 제시하였다.

WTO 농업협상에서는 개별 회원국이 처한 상이한 농업 여건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의제별로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협상 일정과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농업협상 분야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2차 의장초안을 기초로 감축폭과 기간 등을 조정하는 기술적 협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의장은 협상력이 큰 미국, EU, 케언즈 그룹, NTC 그룹 등과 협의를 증가시켜 기술적 문제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간의 모임을 통해 각국은 전

락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간 협상에서 이제 양자간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시장개방 폭 등 핵심적인 사항은 협상력이 큰 국가간의 양자협상 과정을 거쳐 멕시코 각료회의 이전까지 정치적인 타협에 의존하여 해결될 전망이다.

미국과 EU의 입장이 협상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다른 수출국과 연대하여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 세부원칙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협상을 빨리 진전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농업협상의 진전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이다. EU의 CAP 개혁안이 채택되는 것도 WTO 농업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WTO 사무국은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합의 실패가 DDA 협상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DDA 협상이 예정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산품 관세감축, 무역환경, WTO 협정 개정 등 다른 협상분야에서도 협상추진력을 유지하도록 할 전망이다.

1.4.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

우리나라는 국별 농산물 이행계획서를 통해 쌀, 보리, 고추, 마늘, 쇠고기 등 67개 품목군의 시장접근물량을 제시한 바 있다(2002년 현재 63개 품목: 오렌지 주스,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는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개방).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39개 품목은 최소시장접근 품목이며, 나머지 24개 품목은 현행시장접근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를 위해 지정기관 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추천 등의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추천, 수입 이익금 징수는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안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장접근물량의 구체적인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현재 시행중인 수입관리 제도의 골격은 지난 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지금까지 대체로 해당 품목의 피해 최소화와 수입차액의 환수를 통한 농업재원으로서의 활용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미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 수입관리 방식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수출국들이 TRQ 관리의 공정성, 효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국내적으로도 일부 품목에 대한 경쟁제한 및 산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대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① 국내 생산자단체에게 수입권 부여, ② 유효기간이 매우 짧은 수입허가, ③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품목의 수입권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 것, ④ 국내농산물의 구매조건 또는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것, ⑤ HS 4단위로 쿼터를 설정하고 6단위 이하에서는 쿼터를 배정하지 않는 조치, ⑥ 사료용 등 최종 용도를 제한하는 조치, ⑦ 수입권 획득에 대한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⑧ 국영무역기관을 비롯하여 수입창구를 단일화하는 조치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산물 시장접근물량을 지정기관을 통해 독점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자격, 수입물량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① 불필요한 수입추천과 수입관리, ② 불필요한 국영무역 방식의 운용, ③ 불공정하고 경쟁 제한적 관행 등이다. 따라서 수입관리 제도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의 폐지,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방식으로의 전환, 경쟁제한 관행의 개선 등의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1.5. 관세구조의 특징

품목간, 국가간 관세율 차이 등 관세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호주 사이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 60% 포인트에 달한다.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관세율은 38%로 선진국 평균 관세율 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율관세 품목은 우리나라가 116개, 일본이 115개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호주는 고율관세에 속하는 품목이 없다.

우리나라는 채소류와 채소조제품, 과일류와 과일조제품, 곡물류와 곡물조제품 사이에 역관세가 존재하지만, 육류와 육류조제품 사이에는 누진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원료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농산물 가공품은 역관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역관세는 태국, 멕시코, 칠레 등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관세의 누진성은 선진국들에서 많이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곡물과 곡물 조제품에 대해 역관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곡물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 경향이 뚜렷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은 채소류와 채소조제품 사이에 역관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선진국들은 누진관세를 나타냈다.

1.6. 관세감축 효과 및 이행계획서(안)

① 평균 관세율의 변화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평균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으로 분류한 5개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1.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6.1%로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면 평균 관세 감축률은 55.8%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감축률은 이 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5개국 평균 감축률보다 8% 정도 높은 것이다.

관세율이 낮은 칠레의 관세 감축률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27%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멕시코, 태국 등 기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은 31~32% 수준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다. 의장 2차초안은 1차초안에 비해 개도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초안에 따른 개도국의 관세 감축률은 1차초안에 따른 경우에 비해 평균 2% 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차초안에 따른 관세 감축률이 1차초안보다 0.7% 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51.4%로 분석되었다.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일본과 캐나다의 관세 감축률이 56%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감축률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과 EU의 관세 감축률은 각각 50%, 52%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호주의 관세 감축률은 42.1%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② 누진 관세의 변화

관세의 누진성은 의장의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육류조제품과 육류 사이에 존재하는 관세의 누진성은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23.7% 포인트로 감소한다. 채소조제품과 채소 사이에 관세율 차이는 -81.9% 포인트이며, 이러한 심한 역관세 현상은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50.8% 포인트로 축소된다. 곡물류와 곡물조제품(가공품) 사이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관세율 차이는 -184.3% 포인트이며,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이 차이는 -107% 포인트로 감소한다.

관세감축으로 인한 관세의 누진성 완화 효과는 누진성이 큰 품목일수록 크게 나타나며,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의장 2차초안의 내용이 높은 관세는 낮은 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더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③ 고율 관세의 변화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한국이 4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본으로 337.8%이다. 고율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가 감축될 경우 개도국은 40%, 선진국은 60% 낮아지게 된다. 한국의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평균 265.1%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의 고율관세 품목 평균 관세율은 135.1%가 될 전망이다. 2차초안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100% 이내의 평균 관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④ 관세격차의 변화

관세격차는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별 평균 관세율격차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59.8% 포인트에서

38.5% 포인트로 축소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평균 관세율 격차는 관세감축 이전에 31.7% 포인트에서 관세감축 이후에 23.5% 포인트로 축소되었다.

⑤ 관세 감축과 식품산업

의장 2차초안에 따른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31~34%, 선진국의 경우 40~56%로 농산물 관세 감축률보다 약간 낮았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관세 감축률은 32%로 농산물 평균 감축률에 비해 4% 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53.4%로 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에 비해 감축률이 21.4% 포인트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관세 감축률은 농산물에 비해 평균 2~4% 포인트 낮아 원료 농산물 조달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공식품 수출시장인 중국, 태국 등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관세 감축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률이 53.4%에 달하여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⑥ 이행계획서(안)

의장 2차초안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관세율 단계별로 나뉘어진 모듈 내에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은 관세 감축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 반면 해당 품목의 관세감축 부담을 동일 모듈내의 다른 품목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의 선정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식품산업 분야의 이행계획서는 ① 의장초안에 따라 90% 이상의 관세는 평균 40%, 최소 30% 감축하는 방식에 따르되 최소감축 대상 품목은 UR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② 관세율 수준에 따라 평균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③ 모든 가공식품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형된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할당 증량과 관련된 이행계획서는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식품업체에서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필요에 의해 관세할당량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허용해 왔다. 따라서 관세할당량 양허 수준은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최소 수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결 론

관세할당 물량의 수입관리 제도는 WTO 등 국제 협상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국내적으로 효율성 및 공정거래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입관리 제도의 개선은 크게 나누어 볼 때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및 관리의 폐지, 시장 지향적 수입관리 방식으로의 전환, 경쟁제한 관행의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의장초안에 따라 관세분야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관세율 단계별로 나뉘어진 모듬 내에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장초안이 제시한 관세감축 방식은 UR 당시와 달리 관세율 단계별로 감축률을 달리하고 단계별 모듬 내에서 최소 감축률과 평균 감축률을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UR 당시(또는 WTO 가입협상 당시)에 최소 감축률을 적용한 품목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다시 적용하고자 할 경우 평균 감축률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는 UR에서 최소 감축을 시행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때 발생한다.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을 다시 조정할 경우 품목 단체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농업피해의 정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고율관세 단계에 속하

는 품목들은 대부분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UR 당시 대부분 최소 감축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의장초안에 따라 이들 모든 품목에 다시 최소 감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점은 각국의 이행 계획서 작성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가별로 중요성이 큰 품목을 선택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의 감축률을 평균보다 높게 하여 평균 감축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품목별 관세 감축률 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관세할당 증량과 관련된 이행계획서는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증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식품업체에서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필요에 의해 관세할당량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허용해 왔다. 따라서 관세할당량 양허 수준은 의장초안을 충족시키는 최소 수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관세할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농림부, 2002. 「농림산물 품목분류」.
- _____, 2000/2001. 농업통상업무자료.
- _____, 2000/2001. 각국의 WTO 농산물 협상 제안서.
- _____, 1999. 시장접근물량수입관리 종합참고자료.
- _____, 2002. 「WTO 농업위원회 논의 사항」.
- _____, 2001. 「UR 협상이행관련 WTO 사무국분석자료(Ⅰ), (Ⅱ)」.
- _____, 2001. 「각국의 WTO 농산물 협상제안서」.
- 대한민국 정부, 1994. UR 농산물 협상 이행계획서.
- 박상태, 1996. 「관세정책 요론: 관세의 이론과 실제」, 한국관세연구소.
- 송유철 · 박지현, 1999.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 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정호 · 홍성훈 등, 1993.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연구보고서 93-02, 한국개발연구원.
- 이재옥 · 임정빈, 2002. 「주요국 WTO농산물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 이재옥 등, 2000.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개선방향」, KREI, 연구보고 R4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1999. “우리나라 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 「농촌경제」, 22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0. “WTO 출범 이후 시장접근관리방식의 국제적 비교 및 정책적 함축성”, 「농촌경제」, 23권 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0. “차기 WTO 농산물 관세 인하협상과 정책과제,” 「농업경제연구」, 제41집 제2권, 한국농업경제학회.

- 최낙균 · 신현수, 1993. 「UR이후 저관세율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 연구보고서 제258호, 산업연구원.
- 최세균 · 어명근 등,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3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 어명근,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분석,” 「농촌경제」 21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2001.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와 관세 감축 효과,” 「농촌경제」 24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2. “WTO 농업협상 관세감축 방식 분석,” 「농촌경제」 25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임송수 등, 200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연구보고 R4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BARE, 1999. WTO Agricultural Negotiations: Market Access Issues.
- Abbott, P. and A. Morse, 1999. “TRQ Implemen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Agriculture and the New Trade Agenda in the WTO 2000 Negotiations, World Bank.
- Australia,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 Canada, 2000. Customs Tariff.
- China,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 Choi, S.K. et al., 1998. “Effective Protection Rates of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1(2), Korea Rural Economic Development.
- Dixit, P. and T. Josling., 1997. State Trading in Agriculture :An Analytical Framework, IATRC, Working paper #97-4.
- EU, 2000. Common Customs Tariff.
- Gibson, P. et. al., 2001. “Profiles of Tariffs in Global Agricultural Markets,” USDA/ERS.
- Ingco, M. and F. Ng., 1998. 「Distortionary effects of state trading in agriculture:

- Issues for the Next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Japan,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 Joslig, T. and A. Rae., "Multilateral Approaches to Market Access Negotiations in Agricultur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Agriculture and the New Trade Agenda in the WTO 2000 Negotiations, World Bank, 1999.
- OECD, 1999. Post-Uruguay Round Tariff Regimes: Achievements and Outlook, Paris.
- _____, 1999. Review of Tariff Synthesis Report.
- Scully, D., 1999. The Economics of TRQ Administration, Working Paper #99-6, IATRC.
- U.S.A. 2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USDA/ERS, 2001. Agricultural Policy Reform in the WTO: The Road Ahead.
- _____, 1998. Agriculture in the WTO, USDA, WRS-98-4.
- _____, 2002. ERS's WTO Briefing Room, Various Issues.
- WTO, 2000~2002. Committee on Agriculture, Various Issues.
- _____, 1997/98. 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AIE), Various Issues.
- <http://lanic.utexas.edu/~sela/AA2K1/ENG/docs/Globalization/SPCLXXVIIDi2/spclxxviidi2-9.htm>

부록: WTO 농업협상 관세할당(TRQ)관련 주요국 제안 내용

1. ‘분석 및 정보교환(AIE)’ 작업

1) 미국

관세할당물량(TRQ), 즉 시장접근물량을 제시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제도는 UR 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보완조치로서 수출국들에게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WTO 규범 중에는 TRQ 관리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규율이나 규범이 없다는 주장이다. TRQ 관련 유일한 조항은 제13조(국별 쿼터의 배분방식)로서 잠재적인 공급국에 대한 접근기회의 배분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수입 관리에 대한 규범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제17조는 국영무역에 한정하고 있어 시장접근물량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규범으로서는 적당치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UR협상 타결 이후 회원국들은 TRQ 제도하에서 시장접근기회의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따라서 차기협상에서는 TRQ 관리방법을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은 개별 수입관리방식이 TRQ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방식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과 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를 강조(AIE/7)하였다.

- 수입허가가 TRQ 전량에 대해 수입업자와 최종사용자에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수입허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지의 여부
- 수입국의 가격수준과 국제가격과의 관계

TRQ 수입관리 방식 중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관행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생산자단체에 수입권 부여
- 수입권 재배분 조치의 지연
- 수입권의 유효기간 제한
- 국산 농산물 구매를 조건으로 한 수입허가
- 수입허가와 수출허가의 연계
- HS 4단위로 쿼터를 설정하고 6단위 이하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해 쿼터 배정을 배제하는 조치
- 사료용, 가공용 등으로 최종용도를 제한하는 조치
- 수입권 응모자격의 제한
- 국영무역기관을 비롯하여 수입창구를 단일화하는 조치
- 높은 쿼터 관세율(in-quota tariffs)

또한 미국은 국영무역기업은 전통적인 목적(수입통제, 과잉생산 해소와 비상업적 수출, 비상시 식량확보 등)에서 벗어나 정부의 지원하에 독점력을 행사, 무역을 왜곡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2) EU

EU는 UR협상 결과 TRQ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농업협정문에서 TRQ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원국들은 그동안 GATT 제13조의 수정, 보완을 주장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EU 역시 TRQ의 투명하고 무차별적인 수입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세할당물량, 즉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은 공정, 투명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여 쿼터물량의 미소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관세할당물량 수입에 따른 이익이 클수록 보다 엄격한 쿼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EU가 분석한 각 수입관리 방식의 장단점들이다.

○ FCFS

- 비관료적인 측면에서 가장 신속적인 방식이나 쿼터의 경제적 가치가 클 경우에는 혼란 초래

○ 수입권 배분(System of simultaneous examination); 수입허가

- 무역의 왜곡 없이 점진적으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해당 품목의 특수한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예; 수입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도입, 최소 또는 최대 수입량, 수입권의 전매 허용).

○ 과거 수입실적에 기초한 수입권 배분

- 수입권 과다신청의 폐단은 없으나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적임.

○ 공매

- 공매제도는 신속, 투명하며 무차별적인 수입관리 방식으로 수입업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쿼터의 소진을 촉진시킴.
- 공매제도는 다수의 동질적인 수입업자가 참여해야 함.
- 또한 공매제도는 관리가 단순한 장점이 있음.
- 공매후 쿼터량이 소진될 수 있는 기준가격을 설정
 - 공매 제시가격으로 수입권을 분배하는 방식
 - 모든 당첨 수입업자에게 기준가격으로 수입권을 분배하는 방식

3) 호주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방식은 품목의 특성, 시장상황, 쿼터의 규모, 계절적인 무역의 흐름, 공급국가의 수, 수입국 내에서의 배분방식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고 호주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TRQ 관리방식은 공정성, 무차별성, 투명성, 상업적 고려 등에 기초해야 하며, 수입품이 수입국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해 경쟁이 가능해야 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호주의 입장이다. 호주는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식의 하나로 선착순제도의 채택을 주장(AIE/9)하고 있다. 그러나 선착순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 쿼터물량의 증량, 2) 쿼터 미 사용자에 대한 벌칙부과, 3) 미 사용쿼터의 재사용, 4) 중앙집권적인 수입관리체제 수립(선착순제도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방식과 관련된 수입허가절차(Import Licensing Procedure),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TRIMS), GATT 1조, 2조, 8조, 11조, 13조, 17조와의 관계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수입관리에 관한 규범으로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제3조(비자동수입승인)”를 원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제3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조 2항 : 무역제한 또는 왜곡효과, 또는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지 말아야 함(예; 국산구매의무 부담)
- 3조 5항(e) : 법적, 행정적 요건(거주요건, 최종용도제한 등)을 통한 부적절한 제한금지
- 3조 5항(g) : 합리적인 수입권의 유효기간 설정
- 3조 5항(j) : 수입권의 배분은 정상적인 상업적 관계를 고려하고 신규참여자의 기회도 보장(추첨이나 공매는 바람직하지 못함)

2.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1) 미국

미국은 농산물협상 전반에 관한 제안서(G/AG/NG/W/15)에서 모든 품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연차적으로 상당 수준 증량시키고, TRQ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TRQ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적인 장치와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또 다른 제안서(G/AG/NG/W/58)에서 TRQ 개혁방향에 관해 폭넓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TRQ 수입관리 방식의 개선을 위한 4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 TRQ 관리방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TRQ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을 제정
- 과거의 TRQ 수입률을 기초로 in-quota 관세를 인하, 즉 이행률이 낮은 경우 in-quota 관세를 더 큰 폭으로 인하
- 국가간 관세격차의 축소 및 TRQ 물량의 점차적인 증량
- TRQ 이행률이 낮은 경우 자동적으로 in-quota 관세를 인하

TRQ 규율제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존의 WTO 관련 규정(수입허가절차협정, GATT 10조, 13조)을 더욱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면 TRQ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되어 무역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규율제정에서의 원칙으로서 투명성(Transparency), 비제한성(Non-restrictiveness), 재배정(Reallocation) 등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다.

○ 투명성(Transparency)

TRQ 수입관리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회원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입

허가절차협정상의 투명성에 대한 지침과 GATT 제10조(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 쿼터배정일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표준적인 의사소통 매체, 쿼터시스템의 변경을 위한 절차 등을 공표하거나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투명성이 제고되면 잠재적인 수출입업자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TRQ를 무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비제한성(Non-restrictiveness)

농업위원회(AIE)에서 많은 국가가 TRQ 수입을 제한하거나 시장수요의 일 부분에 대해서만 수입을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제한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절차협정과 관련 GATT 조항에 기초하여 수입이 가공농산물에 불리하고 원료 농산물에 한정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율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종용도의 인위적인 지정, 혼합규정이나 국산품 구매기준, 국내 생산자를 통한 수입허가 배분, 수출허가 조건부 수입권 배분, 재수출 요건 등을 금지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물량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TRQ에 의한 무역제한 효과를 방지하고 회원국들의 소비수요가 가장 잘 반영된 제품으로 TRQ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다.

○ 재배정(Reallocation)

일반적으로 많은 TRQ 관리방법(특히 수입허가)은 수입권의 재배정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수입권을 배정받은 자가 특정기간 내에 선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수입권을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신속히 미사용 허가를 신규 참여자를 포함하여 다른 수입업자에게 재배정해야 한다.

2) 캐나다

캐나다는 제안서(G/AG/NG/W/12)에서 시장접근의 개선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회원국간, 품목간에 시장접근상 큰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으며 단일관세 품목의 경우 경쟁관계(예; 옥수수과 사료용 보리)에 있는 품목간에, 그리고 가공관계 별로 관세수준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중관세품목(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한 품목)의 경우 in-quota 관세가 높아 시장접근물량의 수입비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TRQ 관리방식의 개선방향으로 1) 쿼터에 대한 관세 철폐, 2) 품목군이 아닌 품목별로 쿼터를 증량(예; 육류가 아닌 돼지고기), 3) 품목내에서는 세분하지 않고 시장접근기회 허용(예; 도체와 부위별로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돼지고기), 4) TRQ의 의한 자유화 정도를 고려하여 고율관세 수준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캐나다는 수입추천물량이나 추천서의 유효기간 제한 등 비시장적인 TRQ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자고 하였다.

3) 케언즈그룹

케언즈그룹도 시장접근에 관한 제안서(G/AG/NG/W/54)를 제출하고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에 대한 시장접근기회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였다. 우선 차기협상에서는 시장접근물량을 상당 수준 증량하고 TRQ 관리방식이 기존에 설정한 시장접근의 규모와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추가적인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시장접근기회의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관행과 조치에 대한 상세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함에 있어 UR협상의 개혁과정이 계속되었을 경우 요구되는 수준의 TRQ 증량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4) 개도국

쿠바 등 11개 개도국들은 제안서(G/AG/NG/W/37)에서 선진국들의 TRQ관리는 단순, 투명해져야 하며 모든 무역상대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TRQ가 수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 쿼터물량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한 지침 마련
- 최소시장접근 기회의 국내소비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년도 사용
- 품목군이 아닌 품목별 쿼터의 설정
- 선진국의 경우 수입이 시장접근물량 초과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쿼터량의 수입을 의무화
- 개도국의 신규 공급자에게 쿼터물량의 할당에 있어 동등한 기회 제공
- 개도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진국의 TRQ를 확대

3. 국영무역에 대한 주요국 입장

수입관리 방식의 하나로서 국영무역은 지난 수십여년간 GATT가 인정해 온 제도이며, 국영무역에 관한 GATT 제17조는 UR 협상을 통해 추가로 채택된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와 함께 GATT 1994에 편입되어 국영무역기업을 규제하는 일반조항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수출국들은 UR 협상 이후 다수의 수입국들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의 차원에서 원용하고 있는 국영무역제도가 무역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자에 대해 우회적으로 보조하는 등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회원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국영무역의 잠재적인 무역왜곡효과가 있다는 입장하에 좀 더 엄격한 원칙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단일 수입기관 (single desk buyer)은

- 수입가격, 판매가격, 수입품의 등급 및 품질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며 최종수요자와 수입업자의 직거래를 방해하고,
-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관세체계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 고의적으로 저급품을 수입하여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부과금을 부과하여 판매가격을 인상시키고,

- 단일 수입기관이 수입을 독점하는 것은 구매의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단일 수출기관(single desk seller)에 대해서도 수출가격의 설정이 불투명하며,
-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고,
- 독점적 수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 동일 품질의 상품에 대한 가격차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며,
- 가격 풀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호주·뉴질랜드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국영무역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반면에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다. 수출국영무역의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품질관리 및 배달비용의 절감노력에 있어 사기업의 운영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가격차별이나 가격 풀 제도 역시 사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영무역의 존재 자체가 무역장벽이나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국영무역 자체에 관한 논의보다는 국영무역의 실질적인 무역왜곡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식량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국영무역은 필요한 제도이며 GATT 제17조 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업적 고려’ 및 ‘무차별원칙’에 입각하는 한 국영무역제도는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특히 한국은 국영무역은 GATT 제1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제도이므로 국영무역의 존재 필요성을 논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주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장하는 수입국영무역의 문제점들은 TRQ 관리방안을 논의할 때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부표

부표 1 의장 1차초안에 따른 관세율 단계별 품목분포 현황

단계별	품목 구분	한국	태국	멕시코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3단계	품목수	116	15	47	18	31	96	0	78	115
	평균 관세율	441.8	159.8	182.4	133.5	186.6	226.2	-	164.5	337.8
	UR 최소감축률 적용 품목수	110	14	47	16	26	96	0	78	115
2단계	품목수	612	649	810	675	241	61	31	632	365
	평균 관세율	40.5	35.3	37.7	41.7	30.3	34.5	19.2	32.9	28.8
	UR 최소감축률 적용 품목수	357	168	291	151	156	51	30	440	210
1단계	품목수	579	73	93	170	1,448	1,146	763	1,052	824
	평균 관세율	12.2	8.0	8.9	12.1	3.9	3.4	2.9	5.0	2.8
	UR 최소감축률 적용 품목수	108	54	50	154	641	359	166	210	117

주) 3단계: 개도국의 경우 120% 초과, 선진국의 경우 90% 초과.

2단계: 개도국의 경우 20% 초과~120%, 선진국의 경우 15% 초과~90%.

1단계: 개도국의 경우 20%이하, 선진국의 경우 15% 이하.

부표 2 의장 1차초안에 따른 농산물 관세 감축률

단위:%

품목	구분	한국	태국	멕시코	중국	칠레	미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전체 평균	감축전	63.8	35.4	42.8	37.9	8.9	11.1	21.3	4.0	22.1	41.3
	감축후	40.3	23.6	28.1	25.3	6.3	5.5	9.3	2.3	10.6	17.8
	감축률	36.8	33.5	34.4	33.1	29.2	50.0	56.4	42.1	51.9	56.9

부표 3 의장 2차초안에 따른 한국의 선진국 수준 관세 감축률

단위: %

유별	감축전	감축후	감축률	유별	감축전	감축후	감축률
1류	19.7	11.9	39.6	19류	33.7	18.5	45.1
2류	23.0	10.5	54.3	20류	43.6	20.7	52.5
4류	67.9	32.1	52.7	21류	64.7	32.6	49.6
5류	14.9	7.6	49.0	22류	32.9	11.4	65.3
6류	21.9	13.9	36.5	23류	19.1	12.1	36.6
7류	125.4	56.5	54.9	24류	59.1	17.7	70.1
8류	85.4	36.7	57.0	29류	22.5	14.6	35.1
9류	76.9	31.3	59.3	33류	13.2	7.5	43.2
10류	218.0	88.1	59.6	35류	201.2	81.8	59.3
11류	314.8	125.8	60.0	38류	15.5	9.7	37.4
12류	121.2	49.5	59.2	41류	5.2	3.1	40.4
13류	110.6	43.9	60.3	43류	14.5	9.2	36.6
14류	8.4	5.2	38.1	50류	25.7	17.0	33.9
15류	25.5	12.0	52.9	51류	2.0	1.2	40.0
16류	54.6	32.3	40.8	52류	2.0	1.2	40.0
17류	31.0	12.1	61.0	53류	2.0	1.2	40.0
18류	21.5	7.6	64.7	평균	63.8	28.2	55.8

부표 4 한국의 농산물 관세양허 분야 이행계획서(안)

HS 코드	양허세율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		
		2차의장 초안	평균 감축률	최소감 축률	2차의장 초안	평균 감축률	최소 감축률
0101110000	13.1	9.4	9.8	11.1	7.7	7.9	9.8
0101191000	13.1	9.4	9.8	11.1	7.7	7.9	9.8
0101199000	13.1	9.4	9.8	11.1	7.7	7.9	9.8
0101200000	13.1	9.4	9.8	11.1	7.7	7.9	9.8
0102101000	89.1	66.8	57.9	66.8	57.9	44.6	57.9
0102102000	89.1	66.8	57.9	66.8	57.9	44.6	57.9
0102109000	89.1	66.8	57.9	66.8	57.9	44.6	57.9
0102901000	40	32.0	28.0	32.0	26.0	20.0	26.0
0102902000	40	32.0	28.0	32.0	26.0	20.0	26.0
010310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10391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10392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10410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10420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104209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105111000	9	7.7	6.8	7.7	6.8	5.4	6.8
0105119000	9	7.7	6.8	7.7	6.8	5.4	6.8
010519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105192000	9	7.7	6.8	7.7	6.8	5.4	6.8
0105199000	9	7.7	6.8	7.7	6.8	5.4	6.8
0105911000	9	7.7	6.8	7.7	6.8	5.4	6.8
0105919000	9	6.5	6.8	7.7	5.3	5.4	6.8
010599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105992000	9	7.7	6.8	7.7	6.8	5.4	6.8
0105999000	9	7.7	6.8	7.7	6.8	5.4	6.8
010600101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102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103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104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1050	18	12.9	13.5	15.3	5.4	9.0	11.7
010600106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107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108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109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201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209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300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401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402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403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409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501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5090	13.1	9.4	9.8	11.1	7.7	7.9	9.8
0106006090	11	7.9	8.3	9.4	6.4	6.6	8.3
0106009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1100000	40	32.0	28.0	32.0	26.0	20.0	26.0
0201200000	40	32.0	28.0	32.0	26.0	20.0	26.0
0201300000	40	32.0	28.0	32.0	26.0	20.0	26.0
0202100000	40	32.0	28.0	32.0	26.0	20.0	26.0
0202200000	40	32.0	28.0	32.0	26.0	20.0	26.0
0202300000	40	32.0	28.0	32.0	26.0	20.0	26.0
020311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312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319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3210000	25	13.9	17.5	20.0	7.5	12.5	16.3
0203220000	25	13.9	17.5	20.0	7.5	12.5	16.3
0203290000	25	13.9	17.5	20.0	7.5	12.5	16.3
020410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421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422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423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430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441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442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443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4501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4502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0500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20500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20610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621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20622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20629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630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20641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206491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206499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20680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20690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20710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20710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7210000	20	14.4	15.0	17.0	6.0	10.0	13.0
020722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723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7310000	22.5	18.0	15.8	18.0	14.6	11.3	14.6
0207391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20739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7392000	22.5	18.0	15.8	18.0	14.6	11.3	14.6
020739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207411000	20	14.4	15.0	17.0	6.0	10.0	13.0
020741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20742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742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20743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743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207500000	22.5	18.0	15.8	18.0	14.6	11.3	14.6
0208100000	22.5	18.0	15.8	18.0	14.6	11.3	14.6
020820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8901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208909090	18	15.3	13.5	15.3	11.7	9.0	11.7
0209001000	6.6	4.7	5.0	5.6	3.9	4.0	5.0
0209002000	6.6	4.7	5.0	5.6	3.9	4.0	5.0
0210110000	25	13.9	17.5	20.0	7.5	12.5	16.3
0210120000	31.5	17.5	22.1	25.2	9.4	15.8	20.5
0210190000	25	13.9	17.5	20.0	7.5	12.5	16.3
02102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21090101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1090102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1090103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1090109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1090901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1090902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210909090	22.5	12.5	15.8	18.0	6.7	11.3	14.6
0401100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0401200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0401300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0402101010	176	105.6	105.6	123.2	70.4	70.4	96.8
0402101090	176	105.6	105.6	123.2	70.4	70.4	96.8
0402109000	176	105.6	105.6	123.2	70.4	70.4	96.8
0402211000	176	105.6	105.6	123.2	70.4	70.4	96.8
0402219000	176	105.6	105.6	123.2	70.4	70.4	96.8
0402290000	176	105.6	105.6	123.2	70.4	70.4	96.8
0402911000	89	66.8	57.9	66.8	57.9	44.5	57.9

0402919000	89	66.8	57.9	66.8	57.9	44.5	57.9
0402991000	89	66.8	57.9	66.8	57.9	44.5	57.9
0402999000	89	66.8	57.9	66.8	57.9	44.5	57.9
0403101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0403109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0403901000	89	66.8	57.9	66.8	57.9	44.5	57.9
0403902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0403903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0403909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0404101000	49.5	27.4	34.7	39.6	14.8	24.8	32.2
0404109000	49.5	27.4	34.7	39.6	14.8	24.8	32.2
0404900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0405001000	89	66.8	57.9	66.8	57.9	44.5	57.9
0405009000	89	66.8	57.9	66.8	57.9	44.5	57.9
0406101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406102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0406200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406300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406400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406900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40700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40700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4070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40811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40819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40891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408990000	41.6	33.3	29.1	33.3	27.0	20.8	27.0
040899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409000000	243	145.8	145.8	170.1	97.2	97.2	133.7
04100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4100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41000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501000000	6.6	4.7	5.0	5.6	3.9	4.0	5.0
0502100000	6.6	4.7	5.0	5.6	3.9	4.0	5.0
0502901000	6.6	4.7	5.0	5.6	3.9	4.0	5.0
0502902000	6.6	4.7	5.0	5.6	3.9	4.0	5.0
0502909000	6.6	4.7	5.0	5.6	3.9	4.0	5.0
0503001010	6.6	4.7	5.0	5.6	3.9	4.0	5.0
0503001090	6.6	4.7	5.0	5.6	3.9	4.0	5.0
0503002000	6.6	4.7	5.0	5.6	3.9	4.0	5.0
0504001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504002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504003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505100000	6.6	4.7	5.0	5.6	3.9	4.0	5.0
0505901000	6.6	4.7	5.0	5.6	3.9	4.0	5.0
0505909000	6.6	4.7	5.0	5.6	3.9	4.0	5.0
0506100000	6.6	4.7	5.0	5.6	3.9	4.0	5.0
0506901010	6.6	4.7	5.0	5.6	3.9	4.0	5.0
0506901020	9	7.7	6.8	7.7	6.8	5.4	6.8
0506901030	6.6	4.7	5.0	5.6	3.9	4.0	5.0
0506901090	6.6	4.7	5.0	5.6	3.9	4.0	5.0
0506902000	25.6	20.5	17.9	20.5	16.6	12.8	16.6
0506909000	6.6	4.7	5.0	5.6	3.9	4.0	5.0
05071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5071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50710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50790111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50790119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5079012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507902010	19.7	14.1	14.8	16.7	5.9	9.9	12.8
0507902030	19.7	14.1	14.8	16.7	5.9	9.9	12.8
0507902040	19.7	14.1	14.8	16.7	5.9	9.9	12.8
0507902050	19.7	14.1	14.8	16.7	5.9	9.9	12.8
0507902090	19.7	14.1	14.8	16.7	5.9	9.9	12.8
0510001000	13.1	9.4	9.8	11.1	7.7	7.9	9.8
0510002000	13.1	9.4	9.8	11.1	7.7	7.9	9.8
0510003000	13.1	9.4	9.8	11.1	7.7	7.9	9.8
0510004000	13.1	9.4	9.8	11.1	7.7	7.9	9.8
0510005000	13.1	9.4	9.8	11.1	7.7	7.9	9.8
0510009010	13.1	9.4	9.8	11.1	7.7	7.9	9.8
0510009020	13.1	9.4	9.8	11.1	7.7	7.9	9.8
0510009030	13.1	9.4	9.8	11.1	7.7	7.9	9.8
0510009090	13.1	9.4	9.8	11.1	7.7	7.9	9.8
0511991000	13.1	9.4	9.8	11.1	7.7	7.9	9.8
0511993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511993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511994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511999010	18	15.3	13.5	15.3	11.7	9.0	11.7
0511999020	13.1	9.4	9.8	11.1	7.7	7.9	9.8
0511999030	13.1	9.4	9.8	11.1	7.7	7.9	9.8
0511999040	13.1	9.4	9.8	11.1	7.7	7.9	9.8
0511999090	18	12.9	13.5	15.3	5.4	9.0	11.7
060110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10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103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104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105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106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107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108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1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20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20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203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204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205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206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1207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208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20901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120909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2101000	13.1	9.4	9.8	11.1	7.7	7.9	9.8
0602109000	13.1	9.4	9.8	11.1	7.7	7.9	9.8
060220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202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203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204000	13.1	9.4	9.8	11.1	7.7	7.9	9.8
0602205000	13.1	9.4	9.8	11.1	7.7	7.9	9.8
0602206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207010	13.1	9.4	9.8	11.1	7.7	7.9	9.8
0602207020	13.1	9.4	9.8	11.1	7.7	7.9	9.8
0602207030	13.1	9.4	9.8	11.1	7.7	7.9	9.8
0602209000	13.1	9.4	9.8	11.1	7.7	7.9	9.8
0602300000	13.1	9.4	9.8	11.1	7.7	7.9	9.8
06024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291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99101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299102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99103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99104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99105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99106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99109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602992010	13.1	9.4	9.8	11.1	7.7	7.9	9.8
0602992020	13.1	9.4	9.8	11.1	7.7	7.9	9.8
0602992030	13.1	9.4	9.8	11.1	7.7	7.9	9.8

0602992040	13.1	9.4	9.8	11.1	7.7	7.9	9.8
0602992050	13.1	9.4	9.8	11.1	7.7	7.9	9.8
0602992090	13.1	9.4	9.8	11.1	7.7	7.9	9.8
0602999010	13.1	9.4	9.8	11.1	7.7	7.9	9.8
0602999020	13.1	9.4	9.8	11.1	7.7	7.9	9.8
0602999030	18	15.3	13.5	15.3	11.7	9.0	11.7
0602999090	13.1	9.4	9.8	11.1	7.7	7.9	9.8
0603101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603102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603103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603104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603105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603106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603107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603108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603109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603900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0604100000	13.1	9.4	9.8	11.1	7.7	7.9	9.8
0604911010	13.1	9.4	9.8	11.1	7.7	7.9	9.8
0604911090	13.1	9.4	9.8	11.1	7.7	7.9	9.8
0604919000	13.1	9.4	9.8	11.1	7.7	7.9	9.8
0604990000	13.1	9.4	9.8	11.1	7.7	7.9	9.8
0701100000	304	182.4	182.4	212.8	121.6	121.6	167.2
0701900000	304	182.4	182.4	212.8	121.6	121.6	167.2
07020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703101000	135	81.0	81.0	94.5	54.0	54.0	74.3
070310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3200000	360	216.0	216.0	252.0	144.0	144.0	198.0
070390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39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41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42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490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490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49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511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70519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70521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70529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706101000	40.5	32.4	28.4	32.4	26.3	20.3	26.3
070610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6901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70690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69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70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81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82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89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91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92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93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94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9511000	40.5	32.4	28.4	32.4	26.3	20.3	26.3
0709512000	40.5	32.4	28.4	32.4	26.3	20.3	26.3
0709513000	90	67.5	58.5	67.5	58.5	45.0	58.5
0709514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09519000	40.5	32.4	28.4	32.4	26.3	20.3	26.3
070952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9600000	270	162.0	162.0	189.0	108.0	108.0	148.5
07097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09901000	90	67.5	58.5	67.5	58.5	45.0	58.5
07099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01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021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022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029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03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04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1080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0802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710803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0804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0805000	90	67.5	58.5	67.5	58.5	45.0	58.5
07108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09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11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12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13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14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711901000	360	216.0	216.0	252.0	144.0	144.0	198.0
0711902000	40.5	32.4	28.4	32.4	26.3	20.3	26.3
0711903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1904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711905010	90	67.5	58.5	67.5	58.5	45.0	58.5

0711905090	270	162.0	162.0	189.0	108.0	108.0	148.5
071190509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19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21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2200000	135	81.0	81.0	94.5	54.0	54.0	74.3
0712301010	40.5	32.4	28.4	32.4	26.3	20.3	26.3
0712301020	40.5	32.4	28.4	32.4	26.3	20.3	26.3
0712301030	90	67.5	58.5	67.5	58.5	45.0	58.5
071230104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12301090	40.5	32.4	28.4	32.4	26.3	20.3	26.3
071230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2901000	360	216.0	216.0	252.0	144.0	144.0	198.0
0712902010	90	67.5	58.5	67.5	58.5	45.0	58.5
071290202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1290203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1290204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1290205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1290206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1290207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1290208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12902090	370	222.0	222.0	259.0	148.0	148.0	203.5
0712902090	370	222.0	222.0	259.0	148.0	148.0	203.5
071290209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7129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713101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713109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713200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713311000	607.5	364.5	364.5	425.3	243.0	243.0	334.1
0713319000	607.5	364.5	364.5	425.3	243.0	243.0	334.1
0713321000	420.8	252.5	252.5	294.6	168.3	168.3	231.4
0713329000	420.8	252.5	252.5	294.6	168.3	168.3	231.4
0713331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713339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713390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713400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713500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713900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714101000	887.4	532.4	532.4	621.2	355.0	355.0	488.1
0714102010	887.4	532.4	532.4	621.2	355.0	355.0	488.1
0714102020	887.4	532.4	532.4	621.2	355.0	355.0	488.1
0714102090	887.4	532.4	532.4	621.2	355.0	355.0	488.1
0714201000	385	231.0	231.0	269.5	154.0	154.0	211.8

0714202000	385	231.0	231.0	269.5	154.0	154.0	211.8
0714209000	385	231.0	231.0	269.5	154.0	154.0	211.8
071490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0714909000	385	231.0	231.0	269.5	154.0	154.0	211.8
0801100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0801200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0801300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080211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02120000	21	11.6	14.7	16.8	6.3	10.5	13.7
0802210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802220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080231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0232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0802401000	219.4	131.6	131.6	153.6	87.8	87.8	120.7
0802402000	219.4	131.6	131.6	153.6	87.8	87.8	120.7
08025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2901010	566.8	340.1	340.1	396.8	226.7	226.7	311.7
0802901020	566.8	340.1	340.1	396.8	226.7	226.7	311.7
080290201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802902020	27	21.6	18.9	21.6	17.6	13.5	17.6
0802909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03000000	90	67.5	58.5	67.5	58.5	45.0	58.5
08041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4200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08043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044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4501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4502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4503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5100000	50	27.7	35.0	40.0	15.0	25.0	32.5
0805201000	144	86.4	86.4	100.8	57.6	57.6	79.2
0805209000	144	86.4	86.4	100.8	57.6	57.6	79.2
08053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08054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0805900000	144	86.4	86.4	100.8	57.6	57.6	79.2
08061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06200000	21	11.6	14.7	16.8	6.3	10.5	13.7
08071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72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81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08201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8202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91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09200000	24	13.3	16.8	19.2	7.2	12.0	15.6
08093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09401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09402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101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102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103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104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10901000	67.5	50.6	43.9	50.6	43.9	33.8	43.9
0810902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10903000	611.5	366.9	366.9	428.1	244.6	244.6	336.3
0810904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10905000	67.5	50.6	43.9	50.6	43.9	33.8	43.9
0810909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11100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0811200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0811900000	72	17.1	46.8	54.0	21.5	36.0	46.8
08121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12200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08129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08131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1320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08133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13401000	90	67.5	58.5	67.5	58.5	45.0	58.5
0813402000	611.5	366.9	366.9	428.1	244.6	244.6	336.3
0813409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135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0814001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0814002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090111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90112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901210000	29.5	16.3	20.7	23.6	8.8	14.8	19.2
0901220000	29.5	16.3	20.7	23.6	8.8	14.8	19.2
09013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0901400000	29.5	16.3	20.7	23.6	8.8	14.8	19.2
0902100000	513.6	308.2	308.2	359.5	205.4	205.4	282.5
0902200000	513.6	308.2	308.2	359.5	205.4	205.4	282.5
0902300000	60.7	45.5	39.5	45.5	39.5	30.4	39.5
0902400000	60.7	45.5	39.5	45.5	39.5	30.4	39.5
0903000000	26.2	14.5	18.3	21.0	7.8	13.1	17.0
090411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412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4201000	270	162.0	162.0	189.0	108.0	108.0	148.5
0904202000	270	162.0	162.0	189.0	108.0	108.0	148.5
0905000000	13.1	9.4	9.8	11.1	7.7	7.9	9.8
09061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61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62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62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70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81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82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83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91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92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93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94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095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10100000	377.3	226.4	226.4	264.1	150.9	150.9	207.5
09102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103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104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105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1091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091099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001100000	9	6.5	6.8	7.7	5.3	5.4	6.8
1001901000	9	6.5	6.8	7.7	5.3	5.4	6.8
1001909010	1.8	1.3	1.4	1.5	1.1	1.1	1.4
1001909020	1.8	1.3	1.4	1.5	1.1	1.1	1.4
1001909030	1.8	1.3	1.4	1.5	1.1	1.1	1.4
1001909090	1.8	1.3	1.4	1.5	1.1	1.1	1.4
1002000000	108.7	81.5	70.7	81.5	43.5	43.5	59.8
1002000000	9	7.7	6.8	7.7	6.8	5.4	6.8
1003001000	513	307.8	307.8	359.1	205.2	205.2	282.2
1003009010	324	194.4	194.4	226.8	129.6	129.6	178.2
1003009020	299.7	179.8	179.8	209.8	119.9	119.9	164.8
1003009090	299.7	179.8	179.8	209.8	119.9	119.9	164.8
1004000000	554.8	332.9	332.9	388.4	221.9	221.9	305.1
1004000000	9	7.7	6.8	7.7	6.8	5.4	6.8
1005100000	328	196.8	196.8	229.6	131.2	131.2	180.4
1005901000	328	196.8	196.8	229.6	131.2	131.2	180.4
1005902000	630	378.0	378.0	441.0	252.0	252.0	346.5
1005909000	328	196.8	196.8	229.6	131.2	131.2	180.4

1007000000	779.4	467.6	467.6	545.6	311.8	311.8	428.7
1007000000	9	7.7	6.8	7.7	6.8	5.4	6.8
1008100000	256.1	153.7	153.7	179.3	102.4	102.4	140.9
100820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00820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008209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008300000	13.1	9.4	9.8	11.1	7.7	7.9	9.8
1008900000	800.3	480.2	480.2	560.2	320.1	320.1	440.2
1101001000	4.2	3.0	3.2	3.6	2.5	2.5	3.2
1101002000	13.1	9.4	9.8	11.1	7.7	7.9	9.8
110210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10220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102901000	260	156.0	156.0	182.0	104.0	104.0	143.0
1102909000	800.3	480.2	480.2	560.2	320.1	320.1	440.2
1103110000	288.2	172.9	172.9	201.7	115.3	115.3	158.5
1103120000	554.8	332.9	332.9	388.4	221.9	221.9	305.1
1103130000	162.9	97.7	97.7	114.0	65.2	65.2	89.6
1103191000	260	156.0	156.0	182.0	104.0	104.0	143.0
1103199000	800.3	480.2	480.2	560.2	320.1	320.1	440.2
1103210000	288.2	172.9	172.9	201.7	115.3	115.3	158.5
1103292000	260	156.0	156.0	182.0	104.0	104.0	143.0
1103299000	800.3	480.2	480.2	560.2	320.1	320.1	440.2
1104110000	233	139.8	139.8	163.1	93.2	93.2	128.2
1104120000	554.8	332.9	332.9	388.4	221.9	221.9	305.1
1104199000	800.3	480.2	480.2	560.2	320.1	320.1	440.2
1104210000	126	75.6	75.6	88.2	50.4	50.4	69.3
1104220000	554.8	332.9	332.9	388.4	221.9	221.9	305.1
1104230000	167	100.2	100.2	116.9	66.8	66.8	91.9
1104291000	800.3	480.2	480.2	560.2	320.1	320.1	440.2
1104299000	800.3	480.2	480.2	560.2	320.1	320.1	440.2
1104301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104309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105100000	304	182.4	182.4	212.8	121.6	121.6	167.2
1105200000	304	182.4	182.4	212.8	121.6	121.6	167.2
1106100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11062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10620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1063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107100000	269	161.4	161.4	188.3	107.6	107.6	148.0
1107201000	269	161.4	161.4	188.3	107.6	107.6	148.0
1107209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1108110000	50.9	40.7	35.6	40.7	33.1	25.5	33.1

1108120000	226	135.6	135.6	158.2	90.4	90.4	124.3
1108130000	455	273.0	273.0	318.5	182.0	182.0	250.3
1108140000	455	273.0	273.0	318.5	182.0	182.0	250.3
1108191000	241.2	144.7	144.7	168.8	96.5	96.5	132.7
1108199000	800.3	480.2	480.2	560.2	320.1	320.1	440.2
1108200000	800.3	480.2	480.2	560.2	320.1	320.1	440.2
1109000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201000000	487	292.2	292.2	340.9	194.8	194.8	267.9
1202100000	230.5	138.3	138.3	161.4	92.2	92.2	126.8
1202200000	230.5	138.3	138.3	161.4	92.2	92.2	126.8
1203000000	6.6	4.7	5.0	5.6	3.9	4.0	5.0
1204000000	5	3.6	3.8	4.3	2.9	3.0	3.8
1205000000	20	14.4	15.0	17.0	6.0	10.0	13.0
1206000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1207100000	6.6	4.7	5.0	5.6	3.9	4.0	5.0
1207200000	6.6	4.7	5.0	5.6	3.9	4.0	5.0
1207300000	6.6	4.7	5.0	5.6	3.9	4.0	5.0
1207400000	630	378.0	378.0	441.0	252.0	252.0	346.5
1207500000	5	3.6	3.8	4.3	2.9	3.0	3.8
1207600000	6.6	4.7	5.0	5.6	3.9	4.0	5.0
1207910000	6.6	4.7	5.0	5.6	3.9	4.0	5.0
1207920000	6.6	4.7	5.0	5.6	3.9	4.0	5.0
120799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207999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1208100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1208900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1209110000	0	0.0	0.0	0.0	0.0	0.0	0.0
1209190000	0	0.0	0.0	0.0	0.0	0.0	0.0
1209210000	0	0.0	0.0	0.0	0.0	0.0	0.0
1209220000	0	0.0	0.0	0.0	0.0	0.0	0.0
1209230000	0	0.0	0.0	0.0	0.0	0.0	0.0
1209240000	0	0.0	0.0	0.0	0.0	0.0	0.0
1209250000	0	0.0	0.0	0.0	0.0	0.0	0.0
1209260000	0	0.0	0.0	0.0	0.0	0.0	0.0
1209291000	0	0.0	0.0	0.0	0.0	0.0	0.0
1209292000	0	0.0	0.0	0.0	0.0	0.0	0.0
1209299000	0	0.0	0.0	0.0	0.0	0.0	0.0
1209300000	0	0.0	0.0	0.0	0.0	0.0	0.0
1209910000	0	0.0	0.0	0.0	0.0	0.0	0.0
1209991010	0	0.0	0.0	0.0	0.0	0.0	0.0
1209991090	0	0.0	0.0	0.0	0.0	0.0	0.0
1209992000	0	0.0	0.0	0.0	0.0	0.0	0.0

1209993000	0	0.0	0.0	0.0	0.0	0.0	0.0
1209994000	0	0.0	0.0	0.0	0.0	0.0	0.0
1209999000	0	0.0	0.0	0.0	0.0	0.0	0.0
12101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1210201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1210202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1211100000	13.1	9.4	9.8	11.1	7.7	7.9	9.8
1211201100	222.8	133.7	133.7	156.0	89.1	89.1	122.5
1211201210	222.8	133.7	133.7	156.0	89.1	89.1	122.5
1211201220	222.8	133.7	133.7	156.0	89.1	89.1	122.5
1211201240	222.8	133.7	133.7	156.0	89.1	89.1	122.5
121120131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21120132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21120133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211202110	18	15.3	13.5	15.3	11.7	9.0	11.7
1211202120	18	15.3	13.5	15.3	11.7	9.0	11.7
1211202190	18	15.3	13.5	15.3	11.7	9.0	11.7
121120221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21120222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21120229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21120910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21120920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21120990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21190100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200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300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4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211905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21190901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902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903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904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905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906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907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9080	13.1	9.4	9.8	11.1	7.7	7.9	9.8
1211909090	18	15.3	13.5	15.3	11.7	9.0	11.7
1212100000	20	14.4	15.0	17.0	6.0	10.0	13.0
12123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212910000	6.6	4.7	5.0	5.6	3.9	4.0	5.0
1212920000	6.6	4.7	5.0	5.6	3.9	4.0	5.0
121299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21299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212993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21299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2130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214100000	10	7.2	7.5	8.5	5.9	6.0	7.5
1214901000	100.5	75.4	65.3	75.4	40.2	40.2	55.3
1214909000	100.5	75.4	65.3	75.4	40.2	40.2	55.3
1214909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301101000	13.1	9.4	9.8	11.1	7.7	7.9	9.8
1301109000	13.1	9.4	9.8	11.1	7.7	7.9	9.8
1301200000	13.1	9.4	9.8	11.1	7.7	7.9	9.8
1301901000	13.1	9.4	9.8	11.1	7.7	7.9	9.8
1301909000	13.1	9.4	9.8	11.1	7.7	7.9	9.8
130211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30212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302130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130214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302191110	20	14.4	15.0	17.0	6.0	10.0	13.0
1302191120	20	14.4	15.0	17.0	6.0	10.0	13.0
1302191190	20	14.4	15.0	17.0	6.0	10.0	13.0
130219121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30219122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302191290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13021919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302192000	13.1	9.4	9.8	11.1	7.7	7.9	9.8
1302193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302199010	19.7	14.1	14.8	16.7	5.9	9.9	12.8
1302199020	19.7	14.1	14.8	16.7	5.9	9.9	12.8
1302199090	19.7	14.1	14.8	16.7	5.9	9.9	12.8
13022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30232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30239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401101000	9	7.7	6.8	7.7	6.8	5.4	6.8
1401102000	9	7.7	6.8	7.7	6.8	5.4	6.8
1401109000	9	7.7	6.8	7.7	6.8	5.4	6.8
1401201000	13.1	9.4	9.8	11.1	7.7	7.9	9.8
1401209000	13.1	9.4	9.8	11.1	7.7	7.9	9.8
1401901000	13.1	9.4	9.8	11.1	7.7	7.9	9.8
1401909000	13.1	9.4	9.8	11.1	7.7	7.9	9.8
1402100000	6.6	4.7	5.0	5.6	3.9	4.0	5.0
1402910000	6.6	4.7	5.0	5.6	3.9	4.0	5.0
1402990000	6.6	4.7	5.0	5.6	3.9	4.0	5.0

1403100000	6.6	4.7	5.0	5.6	3.9	4.0	5.0
1403900000	6.6	4.7	5.0	5.6	3.9	4.0	5.0
1404101000	6.6	4.7	5.0	5.6	3.9	4.0	5.0
1404109000	6.6	4.7	5.0	5.6	3.9	4.0	5.0
1404200000	6.6	4.7	5.0	5.6	3.9	4.0	5.0
1404901000	9	7.7	6.8	7.7	6.8	5.4	6.8
1404902010	6.6	4.7	5.0	5.6	3.9	4.0	5.0
1404902020	6.6	4.7	5.0	5.6	3.9	4.0	5.0
1404902090	6.6	4.7	5.0	5.6	3.9	4.0	5.0
1404903010	9	6.5	6.8	7.7	5.3	5.4	6.8
1404903020	9	6.5	6.8	7.7	5.3	5.4	6.8
1404903090	6.6	4.7	5.0	5.6	3.9	4.0	5.0
1404909000	6.6	4.7	5.0	5.6	3.9	4.0	5.0
150100101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0100109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01002010	6.6	4.7	5.0	5.6	3.9	4.0	5.0
1501002090	6.6	4.7	5.0	5.6	3.9	4.0	5.0
1502001010	18	15.3	13.5	15.3	11.7	9.0	11.7
1502001090	18	15.3	13.5	15.3	11.7	9.0	11.7
1502009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503001000	6.6	4.7	5.0	5.6	3.9	4.0	5.0
1503002000	6.6	4.7	5.0	5.6	3.9	4.0	5.0
1503003000	6.6	4.7	5.0	5.6	3.9	4.0	5.0
1503004000	6.6	4.7	5.0	5.6	3.9	4.0	5.0
1503009000	6.6	4.7	5.0	5.6	3.9	4.0	5.0
1505100000	6.6	4.7	5.0	5.6	3.9	4.0	5.0
1505901000	6.6	4.7	5.0	5.6	3.9	4.0	5.0
1505909000	6.6	4.7	5.0	5.6	3.9	4.0	5.0
150600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506009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507100000	5.4	3.9	4.1	4.6	3.2	3.2	4.1
1507901000	5.4	3.9	4.1	4.6	3.2	3.2	4.1
1507909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15081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0890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089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091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099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00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11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190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1902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190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2111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512112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1512191010	18	12.9	13.5	15.3	5.4	9.0	11.7
1512191020	22.5	12.5	15.8	18.0	6.7	11.3	14.6
1512199010	36	19.9	25.2	28.8	10.8	18.0	23.4
1512199020	22.5	12.5	15.8	18.0	6.7	11.3	14.6
1512210000	5.4	3.9	4.1	4.6	3.2	3.2	4.1
1512291000	5.4	3.9	4.1	4.6	3.2	3.2	4.1
151229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311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319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3199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3211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321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51329101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329102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3299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4101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1514102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1514901010	36	19.9	25.2	28.8	10.8	18.0	23.4
1514901020	30	16.6	21.0	24.0	9.0	15.0	19.5
1514909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1515110000	10	7.2	7.5	8.5	5.9	6.0	7.5
1515190000	10	7.2	7.5	8.5	5.9	6.0	7.5
151521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1515290000	22.5	12.5	15.8	18.0	6.7	11.3	14.6
1515300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54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515500000	630	378.0	378.0	441.0	252.0	252.0	346.5
1515600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5901000	36	19.9	25.2	28.8	10.8	18.0	23.4
1515909010	22.5	12.5	15.8	18.0	6.7	11.3	14.6
151590902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5909090	22.5	12.5	15.8	18.0	6.7	11.3	14.6
1516101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6109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6201010	36	28.8	25.2	28.8	23.4	18.0	23.4
1516201020	36	28.8	25.2	28.8	23.4	18.0	23.4
1516201030	36	28.8	25.2	28.8	23.4	18.0	23.4
1516201040	36	28.8	25.2	28.8	23.4	18.0	23.4
1516201050	36	28.8	25.2	28.8	23.4	18.0	23.4

151620201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620202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6202030	22.5	18.0	15.8	18.0	14.6	11.3	14.6
151620204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6202050	22.5	18.0	15.8	18.0	14.6	11.3	14.6
1516202090	22.5	18.0	15.8	18.0	14.6	11.3	14.6
15171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5179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5179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51790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518001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8002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8009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19110000	13.1	9.4	9.8	11.1	7.7	7.9	9.8
1519120000	13.1	9.4	9.8	11.1	7.7	7.9	9.8
1519130000	13.1	9.4	9.8	11.1	7.7	7.9	9.8
1519191000	13.1	9.4	9.8	11.1	7.7	7.9	9.8
1519192000	13.1	9.4	9.8	11.1	7.7	7.9	9.8
1519199000	13.1	9.4	9.8	11.1	7.7	7.9	9.8
1519201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519202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519203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519204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519209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1520100000	13.1	9.4	9.8	11.1	7.7	7.9	9.8
1520901000	13.1	9.4	9.8	11.1	7.7	7.9	9.8
1520909000	13.1	9.4	9.8	11.1	7.7	7.9	9.8
1521101000	31.5	25.2	22.1	25.2	20.5	15.8	20.5
1521102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21103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21109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21902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21909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2200101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22001090	16.4	11.8	12.3	13.9	4.9	8.2	10.7
1522009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601001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601009000	31.5	17.5	22.1	25.2	9.4	15.8	20.5
1602100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2201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2209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2311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2319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2391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2399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241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602419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160242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602429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160249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602499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1602501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2509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2901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2909000	72	54.0	46.8	54.0	46.8	36.0	46.8
1603001000	31.5	17.5	22.1	25.2	9.4	15.8	20.5
1603002000	31.5	17.5	22.1	25.2	9.4	15.8	20.5
1701111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701112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701121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701122000	18	12.9	13.5	15.3	5.4	9.0	11.7
1701910000	85.1	63.8	55.3	63.8	55.3	42.6	55.3
1701990000	85.1	63.8	55.3	63.8	55.3	42.6	55.3
1702101000	49.5	27.4	34.7	39.6	14.8	24.8	32.2
1702102000	20	14.4	15.0	17.0	6.0	10.0	13.0
17022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2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3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3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4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4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5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6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6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901000	243	145.8	145.8	170.1	97.2	97.2	133.7
17029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903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290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3101000	9	6.5	6.8	7.7	5.3	5.4	6.8
1703109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703901000	9	6.5	6.8	7.7	5.3	5.4	6.8
1703909000	16.4	11.8	12.3	13.9	4.9	8.2	10.7
17041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49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490201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490202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4902090	19.7	14.1	14.8	16.7	5.9	9.9	12.8
170490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1001000	13.1	9.4	9.8	11.1	7.7	7.9	9.8
18010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20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200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31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32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40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50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61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6201000	26.2	14.5	18.3	21.0	7.8	13.1	17.0
180620901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620909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6311000	26.2	14.5	18.3	21.0	7.8	13.1	17.0
180631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6321000	26.2	14.5	18.3	21.0	7.8	13.1	17.0
180632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806901000	26.2	14.5	18.3	21.0	7.8	13.1	17.0
180690901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80690909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901101010	36	28.8	25.2	28.8	23.4	18.0	23.4
1901101090	54	29.9	37.8	43.2	16.1	27.0	35.1
1901109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1109000	20	14.4	15.0	17.0	6.0	10.0	13.0
1901202000	40.5	22.4	28.4	32.4	12.1	20.3	26.3
1901901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1901902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190190901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1909092	27	15.0	18.9	21.6	8.1	13.5	17.6
190211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2112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2119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219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2192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2199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22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230101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230109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2309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24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3001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1903009000	27	15.0	18.9	21.6	8.1	13.5	17.6
1904101000	5.4	3.9	4.1	4.6	3.2	3.2	4.1
1904102000	5.4	3.9	4.1	4.6	3.2	3.2	4.1
1904103000	5.4	3.9	4.1	4.6	3.2	3.2	4.1
1904109000	5.4	3.9	4.1	4.6	3.2	3.2	4.1
19049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19049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90510000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9052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9053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9053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9054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1905901010	19.7	14.1	14.8	16.7	5.9	9.9	12.8
1905901020	19.7	14.1	14.8	16.7	5.9	9.9	12.8
1905901030	19.7	14.1	14.8	16.7	5.9	9.9	12.8
1905901040	19.7	14.1	14.8	16.7	5.9	9.9	12.8
190590105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90590109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905909010	19.7	14.1	14.8	16.7	5.9	9.9	12.8
1905909020	27	21.6	18.9	21.6	17.6	13.5	17.6
1905909090	27	21.6	18.9	21.6	17.6	13.5	17.6
2001100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20012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1901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001909010	30	16.6	21.0	24.0	9.0	15.0	19.5
2001909020	36	28.8	25.2	28.8	23.4	18.0	23.4
2001909030	30	16.6	21.0	24.0	9.0	15.0	19.5
200190904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1909050	30	16.6	21.0	24.0	9.0	15.0	19.5
2001909060	36	28.8	25.2	28.8	23.4	18.0	23.4
2001909090	36	28.8	25.2	28.8	23.4	18.0	23.4
20021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002901000	31.5	25.2	22.1	25.2	20.5	15.8	20.5
2002909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003101000	47.2	37.8	33.0	37.8	30.7	23.6	30.7
2003102000	47.2	37.8	33.0	37.8	30.7	23.6	30.7
2003103000	47.2	37.8	33.0	37.8	30.7	23.6	30.7
2003109000	47.2	37.8	33.0	37.8	30.7	23.6	30.7
20032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004100000	18	12.9	13.5	15.3	5.4	9.0	11.7

200490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4909000	31.5	25.2	22.1	25.2	20.5	15.8	20.5
20051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51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0052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5200000	31.5	25.2	22.1	25.2	20.5	15.8	20.5
2005300000	22.9	12.7	16.0	18.3	6.8	11.5	14.9
2005400000	31.5	25.2	22.1	25.2	20.5	15.8	20.5
2005511000	22.9	12.7	16.0	18.3	6.8	11.5	14.9
2005512000	22.9	12.7	16.0	18.3	6.8	11.5	14.9
2005519000	22.9	12.7	16.0	18.3	6.8	11.5	14.9
2005591000	31.5	25.2	22.1	25.2	20.5	15.8	20.5
2005592000	31.5	25.2	22.1	25.2	20.5	15.8	20.5
2005599000	31.5	25.2	22.1	25.2	20.5	15.8	20.5
2005600000	31.5	25.2	22.1	25.2	20.5	15.8	20.5
2005700000	22.9	12.7	16.0	18.3	6.8	11.5	14.9
2005800000	15	10.8	11.3	12.8	8.8	9.0	11.3
2005901000	22.9	12.7	16.0	18.3	6.8	11.5	14.9
2005902000	47.2	37.8	33.0	37.8	30.7	23.6	30.7
2005909000	22.9	12.7	16.0	18.3	6.8	11.5	14.9
2006001000	67.5	50.6	43.9	50.6	43.9	33.8	43.9
2006002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6003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6004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2006009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71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7911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7919000	31.5	17.5	22.1	25.2	9.4	15.8	20.5
2007991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7999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111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8119000	63.9	47.9	41.5	47.9	41.5	32.0	41.5
2008191000	90	67.5	58.5	67.5	58.5	45.0	58.5
2008199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2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0083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4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5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60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7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87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0088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008910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92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8921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008922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929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008991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992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993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8999000	45	24.9	31.5	36.0	13.5	22.5	29.3
200911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9119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919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9199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92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009301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302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309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9400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500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6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00970000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00980101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80102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80109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802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00990101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90102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90103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90109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902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009909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10110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1109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1109000	40	32.0	28.0	32.0	26.0	20.0	26.0
21012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1200000	40	32.0	28.0	32.0	26.0	20.0	26.0
2101301000	40.5	32.4	28.4	32.4	26.3	20.3	26.3
2101309000	40.5	32.4	28.4	32.4	26.3	20.3	26.3
21021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21021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2102103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2102104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2102109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2102201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2102202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2102203010	22.9	12.7	16.0	18.3	6.8	11.5	14.9
2102203090	30	16.6	21.0	24.0	9.0	15.0	19.5
2102204010	22.9	12.7	16.0	18.3	6.8	11.5	14.9
2102204090	30	16.6	21.0	24.0	9.0	15.0	19.5
2102209000	13.1	9.4	9.8	11.1	7.7	7.9	9.8
2102300000	19.7	14.1	14.8	16.7	5.9	9.9	12.8
21031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20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202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301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302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90101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90102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90103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90109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90901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90902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90903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90904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390909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4101000	18	12.9	13.5	15.3	5.4	9.0	11.7
2104103000	18	12.9	13.5	15.3	5.4	9.0	11.7
2104109000	18	12.9	13.5	15.3	5.4	9.0	11.7
2104200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500101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5001090	22.9	12.7	16.0	18.3	6.8	11.5	14.9
210500901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5009090	31.5	17.5	22.1	25.2	9.4	15.8	20.5
2106101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106109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106109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6901010	36	28.8	25.2	28.8	23.4	18.0	23.4
210690102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106901090	45	36.0	31.5	36.0	29.3	22.5	29.3
210690200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6903011	22.9	12.7	16.0	18.3	6.8	11.5	14.9
2106903019	22.9	12.7	16.0	18.3	6.8	11.5	14.9
2106903021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2106903029	754.3	452.6	452.6	528.0	301.7	301.7	414.9

210690901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690902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690903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690904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690905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690906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690907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10690909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106909090	54	43.2	37.8	43.2	35.1	27.0	35.1
2201100000	13.1	9.4	9.8	11.1	7.7	7.9	9.8
2201901000	13.1	9.4	9.8	11.1	7.7	7.9	9.8
2201909000	13.1	9.4	9.8	11.1	7.7	7.9	9.8
2202101000	26.2	14.5	18.3	21.0	7.8	13.1	17.0
2202109000	26.2	14.5	18.3	21.0	7.8	13.1	17.0
2202901000	26.2	14.5	18.3	21.0	7.8	13.1	17.0
2202902000	9	7.7	6.8	7.7	6.8	5.4	6.8
2202909000	26.2	14.5	18.3	21.0	7.8	13.1	17.0
22030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41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4211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4212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4219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4291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4292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4299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43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51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59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600101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600102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600109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600201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600202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600203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600209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600901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600909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7101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7109000	270	162.0	162.0	189.0	108.0	108.0	148.5
2207109000	90	67.5	58.5	67.5	58.5	45.0	58.5
2207200000	8	5.7	6.0	6.8	4.7	4.8	6.0
22081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201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209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301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302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303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309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4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500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901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90201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90202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90209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903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904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906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8909000	30	16.6	21.0	24.0	9.0	15.0	19.5
2209001000	8	5.7	6.0	6.8	4.7	4.8	6.0
2209009000	8	5.7	6.0	6.8	4.7	4.8	6.0
2301101000	9	7.7	6.8	7.7	6.8	5.4	6.8
2301102000	6.6	4.7	5.0	5.6	3.9	4.0	5.0
23021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22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23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2400000	5	3.6	3.8	4.3	2.9	3.0	3.8
23025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3100000	0	0.0	0.0	0.0	0.0	0.0	0.0
23032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33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4000000	1.8	1.3	1.4	1.5	1.1	1.1	1.4
23050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61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62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63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6500000	5	3.6	3.8	4.3	2.9	3.0	3.8
2306600000	5	3.6	3.8	4.3	2.9	3.0	3.8
2306901000	63	47.3	41.0	47.3	41.0	31.5	41.0
2306902000	9	7.7	6.8	7.7	6.8	5.4	6.8
2306909000	6.6	4.7	5.0	5.6	3.9	4.0	5.0
2307000000	6.6	4.7	5.0	5.6	3.9	4.0	5.0
2308101000	90	67.5	58.5	67.5	58.5	45.0	58.5
2308102000	13.1	9.4	9.8	11.1	7.7	7.9	9.8
2308900000	46.4	37.1	32.5	37.1	30.2	23.2	30.2

230890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230910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2309901010	4.2	3.0	3.2	3.6	2.5	2.5	3.2
2309901020	4.2	3.0	3.2	3.6	2.5	2.5	3.2
2309901030	18	12.9	13.5	15.3	5.4	9.0	11.7
2309901040	4.2	3.0	3.2	3.6	2.5	2.5	3.2
2309901090	71	53.3	46.2	53.3	46.2	35.5	46.2
2309901090	18	15.3	13.5	15.3	11.7	9.0	11.7
2309902010	50.6	40.5	35.4	40.5	32.9	25.3	32.9
2309902020	50.6	40.5	35.4	40.5	32.9	25.3	32.9
2309902090	50.6	40.5	35.4	40.5	32.9	25.3	32.9
2309902090	18	15.3	13.5	15.3	11.7	9.0	11.7
2309903010	18	15.3	13.5	15.3	11.7	9.0	11.7
2309903020	18	15.3	13.5	15.3	11.7	9.0	11.7
2309903030	18	15.3	13.5	15.3	11.7	9.0	11.7
2309903090	18	15.3	13.5	15.3	11.7	9.0	11.7
2309909000	50.6	40.5	35.4	40.5	32.9	25.3	32.9
2401101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1102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1103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1109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1201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1202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1203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1209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1301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1302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1309000	54	29.9	37.8	43.2	16.1	27.0	35.1
2402101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2102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2103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2201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2209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2900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3101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3109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3911000	32.8	18.2	23.0	26.2	9.8	16.4	21.3
2403919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3991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3992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3993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403999000	65.5	15.5	42.6	49.1	19.6	32.8	42.6

2905440000	22.5	18.0	15.8	18.0	14.6	11.3	14.6
330111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12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13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14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19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1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2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3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4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5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6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91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92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93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94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299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300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901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902000	13	9.3	9.8	11.1	7.6	7.8	9.8
3301903000	16	11.5	12.0	13.6	4.8	8.0	10.4
3501100000	22.5	18.0	15.8	18.0	14.6	11.3	14.6
3502100000	13	9.3	9.8	11.1	7.6	7.8	9.8
3505101000	13	9.3	9.8	11.1	7.6	7.8	9.8
3505102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3505103000	385.7	231.4	231.4	270.0	154.3	154.3	212.1
3505104000	385.7	231.4	231.4	270.0	154.3	154.3	212.1
3505105000	385.7	231.4	231.4	270.0	154.3	154.3	212.1
3505109000	385.7	231.4	231.4	270.0	154.3	154.3	212.1
3505201000	201.2	120.7	120.7	140.8	80.5	80.5	110.7
3505202000	201.2	120.7	120.7	140.8	80.5	80.5	110.7
3505209000	201.2	120.7	120.7	140.8	80.5	80.5	110.7
3809100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3823600000	13	9.3	9.8	11.1	7.6	7.8	9.8
4101100000	5	3.6	3.8	4.3	2.9	3.0	3.8
4101211010	5	3.6	3.8	4.3	2.9	3.0	3.8
4101211020	5	3.6	3.8	4.3	2.9	3.0	3.8
4101211030	5	3.6	3.8	4.3	2.9	3.0	3.8
4101211040	5	3.6	3.8	4.3	2.9	3.0	3.8
4101211090	5	3.6	3.8	4.3	2.9	3.0	3.8
4101212010	5	3.6	3.8	4.3	2.9	3.0	3.8
4101212020	5	3.6	3.8	4.3	2.9	3.0	3.8

4101212030	5	3.6	3.8	4.3	2.9	3.0	3.8
4101212040	5	3.6	3.8	4.3	2.9	3.0	3.8
4101212090	5	3.6	3.8	4.3	2.9	3.0	3.8
4101220000	5	3.6	3.8	4.3	2.9	3.0	3.8
4101220000	5	3.6	3.8	4.3	2.9	3.0	3.8
4101290000	5	3.6	3.8	4.3	2.9	3.0	3.8
4101290000	5	3.6	3.8	4.3	2.9	3.0	3.8
4101301010	5	3.6	3.8	4.3	2.9	3.0	3.8
4101301020	5	3.6	3.8	4.3	2.9	3.0	3.8
4101301030	5	3.6	3.8	4.3	2.9	3.0	3.8
4101301040	5	3.6	3.8	4.3	2.9	3.0	3.8
4101301050	5	3.6	3.8	4.3	2.9	3.0	3.8
4101301090	5	3.6	3.8	4.3	2.9	3.0	3.8
4101302010	5	3.6	3.8	4.3	2.9	3.0	3.8
4101302020	5	3.6	3.8	4.3	2.9	3.0	3.8
4101302030	5	3.6	3.8	4.3	2.9	3.0	3.8
4101302040	5	3.6	3.8	4.3	2.9	3.0	3.8
4101302050	5	3.6	3.8	4.3	2.9	3.0	3.8
4101302090	5	3.6	3.8	4.3	2.9	3.0	3.8
4101400000	5	3.6	3.8	4.3	2.9	3.0	3.8
4102100000	5	3.6	3.8	4.3	2.9	3.0	3.8
4102210000	5	3.6	3.8	4.3	2.9	3.0	3.8
4102290000	5	3.6	3.8	4.3	2.9	3.0	3.8
4103100000	5	3.6	3.8	4.3	2.9	3.0	3.8
4103201000	5	3.6	3.8	4.3	2.9	3.0	3.8
4103202000	5	3.6	3.8	4.3	2.9	3.0	3.8
4103203000	5	3.6	3.8	4.3	2.9	3.0	3.8
4103209000	5	3.6	3.8	4.3	2.9	3.0	3.8
4103901000	9	7.7	6.8	7.7	6.8	5.4	6.8
4103902000	9	7.7	6.8	7.7	6.8	5.4	6.8
4103903000	5	3.6	3.8	4.3	2.9	3.0	3.8
4103909000	5	3.6	3.8	4.3	2.9	3.0	3.8
4301100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4301200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4301300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4301400000	5	3.6	3.8	4.3	2.9	3.0	3.8
4301500000	5	3.6	3.8	4.3	2.9	3.0	3.8
4301600000	36	28.8	25.2	28.8	23.4	18.0	23.4
4301700000	5	3.6	3.8	4.3	2.9	3.0	3.8
4301801000	5	3.6	3.8	4.3	2.9	3.0	3.8
4301802000	5	3.6	3.8	4.3	2.9	3.0	3.8
4301803000	5	3.6	3.8	4.3	2.9	3.0	3.8

4301804000	5	3.6	3.8	4.3	2.9	3.0	3.8
4301809000	5	3.6	3.8	4.3	2.9	3.0	3.8
4301900000	5	3.6	3.8	4.3	2.9	3.0	3.8
5001000000	51	40.8	35.7	40.8	33.2	25.5	33.2
5002001010	45	36.0	31.5	36.0	29.3	22.5	29.3
5002001020	51.7	41.4	36.2	41.4	33.6	25.9	33.6
5002001030	51.7	41.4	36.2	41.4	33.6	25.9	33.6
5002001040	51.7	41.4	36.2	41.4	33.6	25.9	33.6
5002001050	51.7	41.4	36.2	41.4	33.6	25.9	33.6
5002002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5002009000	18	15.3	13.5	15.3	11.7	9.0	11.7
5003101000	9	7.7	6.8	7.7	6.8	5.4	6.8
5003102000	9	7.7	6.8	7.7	6.8	5.4	6.8
5003103000	9	7.7	6.8	7.7	6.8	5.4	6.8
5003104000	9	7.7	6.8	7.7	6.8	5.4	6.8
5003109000	9	7.7	6.8	7.7	6.8	5.4	6.8
5003901000	9	6.5	6.8	7.7	5.3	5.4	6.8
5003902000	9	7.7	6.8	7.7	6.8	5.4	6.8
5003909000	9	7.7	6.8	7.7	6.8	5.4	6.8
5101110000	2	1.4	1.5	1.7	1.2	1.2	1.5
5101190000	2	1.4	1.5	1.7	1.2	1.2	1.5
5101210000	2	1.4	1.5	1.7	1.2	1.2	1.5
5101290000	2	1.4	1.5	1.7	1.2	1.2	1.5
5101300000	2	1.4	1.5	1.7	1.2	1.2	1.5
5102101000	2	1.4	1.5	1.7	1.2	1.2	1.5
5102102000	2	1.4	1.5	1.7	1.2	1.2	1.5
5102103000	2	1.4	1.5	1.7	1.2	1.2	1.5
5102109000	2	1.4	1.5	1.7	1.2	1.2	1.5
5102200000	2	1.4	1.5	1.7	1.2	1.2	1.5
5103100000	2	1.4	1.5	1.7	1.2	1.2	1.5
5103200000	2	1.4	1.5	1.7	1.2	1.2	1.5
5103300000	2	1.4	1.5	1.7	1.2	1.2	1.5
5201001000	2	1.4	1.5	1.7	1.2	1.2	1.5
5201009010	2	1.4	1.5	1.7	1.2	1.2	1.5
5201009020	2	1.4	1.5	1.7	1.2	1.2	1.5
5201009030	2	1.4	1.5	1.7	1.2	1.2	1.5
5201009040	2	1.4	1.5	1.7	1.2	1.2	1.5
5202100000	2	1.4	1.5	1.7	1.2	1.2	1.5
5202910000	2	1.4	1.5	1.7	1.2	1.2	1.5
5202990000	2	1.4	1.5	1.7	1.2	1.2	1.5
5203000000	2	1.4	1.5	1.7	1.2	1.2	1.5
5301100000	2	1.4	1.5	1.7	1.2	1.2	1.5

5301210000	2	1.4	1.5	1.7	1.2	1.2	1.5
5301290000	2	1.4	1.5	1.7	1.2	1.2	1.5
5301301000	2	1.4	1.5	1.7	1.2	1.2	1.5
5301302000	2	1.4	1.5	1.7	1.2	1.2	1.5
5302100000	2	1.4	1.5	1.7	1.2	1.2	1.5
5302901000	2	1.4	1.5	1.7	1.2	1.2	1.5
5302902010	2	1.4	1.5	1.7	1.2	1.2	1.5
5302902020	2	1.4	1.5	1.7	1.2	1.2	1.5

ABSTRACT

WTO/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and the Food Industry: International Comparison for Tariff Reduction and TRQ Administr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Doha Development Agenda(DDA) agriculture negotiations on the food industry. Among the three pillars of agriculture negotiations, market access will become a major factor affecting the food secto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ariff reduction, expansion of tariff rate quota(TRQ) and TRQ administration, and tries to show the Country Schedule of tariff concess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Ten countries have been selected to be analyzed and compared.

Food exporting countries insist that WTO rules on TRQ administration need to be strengthened to improv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expressed concerns on limiting fair trade, competition, and fairness among industries of TRQ administration domestically. Under the consideration of DDA agriculture negotiations and Fair Trade Commission's concerns, TRQ administration needs to be changed toward increased efficiency and fairness. Restrictions on accessing TRQ including import licensing, state trading are required to be minimized for a better market oriented TRQ administration system.

The average tariff reduction rate is 20% point higher in five developed countries analyzed in this study compared to five developing countries following the direction offered in the Chairman's Draft Text. Average tariff reduction rates are 31.6% for the five developing countries and 51.4% for the five developed countries. Korea's tariff reduction rate reaches to 36.1%, the highest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hen Korea retains the developing country status. When Korea makes tariff

reductions following the direction for developed countries, the average tariff reduction rate rises to 55.8%.

Chile's average tariff reduction rate is analyzed to be 27%, the lowes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average tariff reduction rate for China, Mexico and Thailand will be 31 to 32%.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better off from the second Draft Text saving the reduction rate by 2% point compared to the first Draft Text. The tariff reduction rate of 56% for Japan and Canada is expected to be the highest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examined in this study. Australia's tariff cut rate will be 42%, the lowest in developed countries.

Tariff reductions following the second Draft Text affect the tariff structure. Tariff escalation, dispersion and peaks can be mitigated by applying the tariff reduction methods proposed in the Second Draft Text. Tariff reductions give rise to the effects of reducing tariff escalation problem and the effects are stronger for the commodities with higher tariff rates and in developed countries. The average tariff rate for tariff peak commodities is reduced by 40% in developing countries and by 60% in developed countries. Tariff diversion is also mitigated by reducing tariff rates. The difference of the average tariff rate between Korea and Australia is reduced to 38.5% from 59.8% by cutting tariff rates with the rules proposed in the second Draft Text.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will gain from the tariff reduction and expansion of TRQ. The tariff reduction rate for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is two to four percent point lower than the agricultural sector. TRQ imports can be expanded by 6.6 to 10% of domestic consumption. Therefore food processors can purchase cheaper raw materials and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Tariffs in the export market for Korean food such as China and Thailand i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Japan, the U.S.A. and the EU in developed countries will be lowered more than Korea. Thus Korean food industries can improve competitiveness and expand the market share.

Korea needs to prepare the Country Schedule in advance to evaluate the potential outcome of the tariff cut following the Draft Text and to capture various voices from

producers, consumers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For the preparation of the Country Schedule, Korea needs to decide minimum tariff cut items within a group of the commodity classified by tariff rates and this procedure requires a lot of discussion among producer and consumer groups. Concession of TRQ expansion is required to be minimized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e Draft Text while Korea maintains right of importing over quota with low tariffs.

Researcher: Sei-Kyun Choi, Myong-Keun Eor, Joo-Nyung Heo
E-mail Address: skchoi@krei.re.kr

C2003-09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

등 록 제5-10호(1979. 5. 25)

인 쇄 2003. 3. 31.

발 행 2003. 3. 31.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代)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